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상돈



지역법제 연구 15-16-②-8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 상 돈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in China

연구자 : 한상돈(아주대학교 법전원 교수)
Han, Sang-Don

2015. 10. 31.

요 약 문

I. 연구의 필요성

- 중국은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어 건축과 관련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및 조사·처리절차, 안전사고 발생 이후의 대책 등, 중국의 건축법제 및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건설관련업체들이 원활한 건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축법제 및 건축안전 사고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건축법제 및 건축안전 법제의 연구가 필요하다.

II. 주요 내용

- 건축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01년부터 10년간 매년 사고는 1,000여건에 달하였으나 2011년부터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4년의 경우 건축안전사고는 522건, 사망자수는 648명이었다.
- 1997년 11월 <건축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건설안전에 관한 행정법규들이 제정되어 ‘안전제일, 예방위주’라는 건축안전의 기본방침을 세웠다. 2011년 11월 <안전생산법>이 제정되어 안전관리 및 감독이 법제화 되었다.

- 중국의 건축안전 법체계는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국가와 업계 표준, 지방성법규, 지방정부의 각 규장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 건축시공업체는 구체적인 ‘긴급사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시설 설계자 또는 설계업체는 안전시설의 설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조사업체·설계업체·감리업체·시공업체가 국가의 법률과 법규 그리고 강제성 표준의 규정을 위반한 작업요구해서는 안된다. 감리업체는 관련 규정 의거하여 감리작업 수행,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감리책임을 져야 한다.
- 2014년 8월, 건설업체 사업책임자, 조사업체 사업책임자, 설계업체 사업 책임자, 시공업체 사업책임자, 감리업체 총감리사 등에 대한 ‘중신책임제’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품질에 대한 제도를 강화 하였다.
- 건축 관련업체가 중대한 안전사고를 초래하였을 경우, 책임자에게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형에 처한다. 결과가 특별히 엄중할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Ⅲ. 시사점

- 중국은 건축 관련 정부부처 및 건축업계, 시공업체, 조사 및 설계 업체, 감리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였다.

- 중국은 건축안전 종신책임제도를 실시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건축공사의 각 단계별 사업책임자에 대한 품질 종신책임제를 확립함으로써 단계별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제어 : 건축법제, 건축안전, 안전사고, 안전생산법, 종신책임, 형사 책임

Abstract

I . Research Necessity

- With vast land and over population, China has faced great deal of construction related accidents. There are calls for deep considerations of construction laws and building safety legislation of China concerning reporting,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safety measures after construction accidents.
- For construction related companies that already entered Chinese market or otherwise planning to invest in China to safely pursue their construction goals, an overall study of construction laws and safety legislations is needed to help these companies acquire general understandings of construction laws and safety related accidents in China.

II . Main Contents

- The numbers of construction safety accidents from 2001 to 2011 were approximately 1000, but the numbers are decreasing from 2011 every year. In 2014, there were 522 construction safety related accidents and 648 deaths.

- In November 1997, <Construction Law> was enacted. On this legal ground, China has made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garding construction safety. They established “Safety First, Prevention Priority” to create basic policy for construction safety. In November 2011, <Work Safety Law> was enacted to legislate safety management and supervision.
- The legal system of Construction safety in China is formed with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Divisional Regulations, Government and Industry Standards, Local Regulations and the Rules of Local Government.
- The construction company is required to prepare a detailed ‘Preventive measures for emergency accidents’ and the design company or the designer of safety installation assumes the responsibility of their design.
- Investigation Enterprise, Design, Supervision, Operational Companies cannot require processes against the compulsory laws and regulations. Supervision Enterprise needs to supervise construction process on the bases of related regulations and takes responsibility in construction safety supervision.
- From August 2014, chief executives of Construction, Investigation, Design, Operation and Supervision takes lifelong responsibility which reinforced the quality of the construction work in its system.
- If construction related enterprise caused serious safety accident, the person in charge is sentenced up to 5 years of imprisonment with

additional fine. In the situation of severe consequence, sentence would be minimum of 5 years and up to 10 years of imprisonment with additional fine.

III. Implications

- China has made clear of their construction related responsibilities through establishing construction safety regulations, regulating the person in charge of the Government Departments, Related Industry, Operation Enterprise, Design and Supervision Enterprises.
- The effect of lifelong responsibility system of construction safety is clear in China. Establishing this system into every possible level of construction management, enabling to guaranty quality for their lifetime, a compulsive regulation which eliminates the possible safety risks in the construction process.

►► **Key Words : Construction Laws, Construction Safety, Safety Accidents, Work Safety Law, Lifelong Responsibility, Criminal Responsibility**

목 차

| | |
|---------------------------------------|----|
| 요 약 문 | 3 |
| Abstract | 7 |
| | |
| 제 1 장 서 론 | 15 |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5 |
| 1. 연구의 필요성 | 15 |
| 2. 연구의 목적 | 17 |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8 |
| 1. 연구의 범위 | 18 |
| 2. 연구의 방법 | 20 |
| | |
| 제 2 장 중국 건축안전관리 현황 | 23 |
| 제 1 절 건축안전사고 개요 | 23 |
| 1. 2000년대 초반 | 23 |
| 2. 2010년 이후 | 24 |
| 제 2 절 연도별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 25 |
| 1. 2011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 25 |
| 2. 2012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 31 |
| 3. 2013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 32 |
| 4. 2014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 34 |
| 5.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 45 |

| | |
|------------------------------|-----|
| 제 3 절 건축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 54 |
| 1. 건축안전사고의 등급 | 54 |
| 2. 건축안전사고의 보고 | 56 |
| 3. 건축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 | 57 |
| 4. 건축안전사고의 법률책임 | 58 |
| | |
| 제 3 장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 | 61 |
| 제 1 절 건축안전 법제의 연혁 | 61 |
| 1. 건축안전 법체계의 형성 | 61 |
| 2. 건축안전 법제의 발전 | 66 |
| 제 2 절 건축법제의 구조 및 주요 내용 | 72 |
| 1. 건축안전 법체계 | 72 |
| 2. 건축법제의 구조 | 78 |
| 3. 건축법제의 주요내용 | 85 |
| 제 3 절 건축안전 관련사항 분석 | 90 |
| 1. 건축안전 관련 법규 | 90 |
| 2. 건축 주체에 대한 규정 | 91 |
| | |
| 제 4 장 중국의 건축안전 주요 정책 | 107 |
| 제 1 절 단계별 안전관리정책 | 107 |
| 1. 조사 및 설계단계 | 107 |
| 2. 시공단계 | 109 |
| 3. 유지·보수단계 및 철거·재건축 단계 | 111 |

| | |
|----------------------------|-----|
| 제 2 절 건축안전 관련정책 | 113 |
| 1. 건축안전 주요정책 개요 | 113 |
| 2. 시공업체의 건축안전 | 116 |
| 3. 건축시공의 안전관리 | 120 |
| 4. 건축안전 종신책임제도 | 126 |
| 5. 교육훈련제도 | 133 |
| 제 3 절 건축 안전사고의 법률책임 | 137 |
| 1. 민사 손해배상 | 137 |
| 2. 형사책임 | 138 |
| 제 5 장 결 론 | 149 |
| 제 1 절 다른 국가와의 비교법 분석 | 149 |
| 제 2 절 시사점 | 151 |
| 참 고 문 헌 | 155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들어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건축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014년 2월17일 경주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되어 1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시공자가 설계도에서 제시한 것과는 다른, 기준에 미달되는 강재를 사용하였고, 건축주는 운동시설을 집회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등 종합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2014년 5월12일 아산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도사고 역시 시공자가 설계도와는 달리 기초판의 넓이를 줄이고, 파일개수도 누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자는 부실 시공을 지적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이 밝혀졌다. 2014년 5월 26일 8명이 사망하고, 110여명이 부상당한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사고는 수선공사를 위해 방화셔터의 작동을 중지하였고, 용접공사 중 발생한 불꽃이 단열재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5월 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는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였는데, 이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 사용대상 건축물이 아닌데 유독가스가 발생함으로써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였다. 2014년 10월17일 발생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는 16명이 사망하였고, 11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사고원인은 환기구 덮개의 결침턱 및 용접 시공의 부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2014년 한 해에만 대형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하여 건축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¹⁾ 불법행위 적발 체계를 강화하며,²⁾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³⁾ 뿐만 아니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⁴⁾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과거 안전대책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단편적인 제도 강화에 그쳤던 것에서 벗어나 규제 신설은 최소화하면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향후 건축안전 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⁵⁾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선 중국의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많아 약 13억 명에 달하여 매년 크고 작은 건축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2013년에는 건축안전사고가 총528건 발생하였고, 사망자 수는 674명에 달

-
- 1) 국토교통부가 2014년 12월17일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중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는 ①‘1·2 Strike-Out’ 를 시행해서 불법설계 또는 시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하고 ②건축법 위반 처벌대상자를 확대하고 벌금액도 상향하며 ③건축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부실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상승되는 구조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 :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도입의 적극검토 등이 있다.
 - 2) 불법행위 적발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로서는 ①각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②국토부는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부실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 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등이 있다.
 - 3)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①50층 이상 초대형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전에 당해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②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4)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①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난연재료 사용기준, 구조안전 기준 등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고 ② ‘큐알 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시험성적서와 제품에 부착하여 현장에서 핸드폰 앱을 이용하여 건축자재 성능과 정품여부를 확인해 공사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있다.
 - 5) 소방방재신문, 2014년 12월19일자.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29408§ion=sc72\(2015.7.29접속\)](http://fpn119.co.kr/sub_read.html?uid=29408§ion=sc72(2015.7.29접속))

하였다.⁶⁾ 2014년에는 총 522건의 건축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총 648명이 사망하였을 정도로⁷⁾ 건축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각종 정책과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건축안전사고의 발생률을 점차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에서 건축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줄곧 발생하고 있고, 또한 중국의 건축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건축관련 기업의 관심이 높아 중국의 건축안전과 관련된 법제와 정책, 건축안전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등을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연구의 목적

건축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유럽, 북미,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의 법제도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 등이 많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비교적 많으나, 현재까지 건축안전 분야에서 중국의 관련 법 체계 및 제도,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상황과 한·중 양국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중국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법제와 정책 등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어 여러 가지 사건이 매우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건축과 관련된 안전사고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고 및 조사·처리절차, 안전사고 발생 이후의 여러 후속조치 등도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축안전 법제가 형성되고 발전되고 있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법체계를

6)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관공실(中華人民共和國住房和城鄉建設部安全生產管理委員會辦公室), <2013년 12월 건축시공 안전사고현황 통보 (2013년 12월 房屋市政工程生產安全事故情況的通報)>, 2014년 1월 13일.

7)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관공실(中華人民共和國住房和城鄉建設部安全生產管理委員會辦公室), <2014년 12월 건축시공 안전사고현황 통보(2014년 12월 房屋市政工程生產安全事故情況的通報)>, 2015년 1월 12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법규범은 중국적 특색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전에 관한 법규범과 정책 역시 나름대로 중국적 특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는 우리나라의 건축안전 법제 혹은 정책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밖에 중국의 건축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많은 한국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보다 중국에서 안전한 주택 혹은 기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중국 건축법제 및 건축안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건축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책임은 물론이요, 징역형과 같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건축법제 중 ‘건축안전’ 사고에 대한 처리과정 역시 살펴 봐야 한다. 중국 건축안전에 관한 법규범과 정책, 안전사고 처리절차, 안전사고 억제대책 등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건축안전 법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보고서는 중국 건축의 안전관리 현황, 건축안전 법제, 건축안전 주요법제 등을 연구의 범위로 하고자 하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제2장은 중국의 건축 안전관리 현황으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건축안전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그리고 ‘비교적 큰 사고’의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를 분석하고,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법규와 안전사고의 등급들도 소개한다. 실제 건축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축안전사고의 보고, 조사, 법률책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과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건축물 안전 법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건축안전 법률체계의 발전과정과 건축안전 법제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華人民共和國建築法)>(이하 <건축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華人民共和國安全生產法)>(이하 <안전생산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어서 건축행정법률, 그 법률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킨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建設工程安全生產管理條例)>와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產安全事故報告和調查處理條例)> 등의 건축행정법규, <공사실시의 강제성표준 감독규정(實施工程強制性標準監督規定)>과 건설부의 <공사품질 안전감독 관리사(管理司) 2015년 업무중점(工程質量安全監管司2015年工作要點)> 등을 포함한 건축부문규장(建築部門規章), <내이멍구(內蒙古) 자치구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內蒙古自治區建設工程質量管理條例)>와 같은 지방 건축법규(地方建築法規), <베이징(北京)시 건설공사 시공현장 관리판법(北京市建設工程施工現場管理辦法)>과 같은 지방 건축규장(地方建築規章), <건설공사 시공품질 검수통일표준(建築工程施工質量驗收統一標準)>과 같은 국가표준(國家標準), 도시건설업표준·건축자재표준·건축공업표준 등을 포함한 업계표준, 그리고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방표준등으로 구성된 중국의 법체계를 살펴본다. 또한, 중국의 건축안전관리 법체계를 분석하고, <건축법>과 <안전생산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밖에 제3장에서는 건축안전 관련법규 중 정부부처, 업계, 기업 및 기타조직 그리고 개인 등 각 건설사업의 참여주체에 대한 규정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건축물 안전 주요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사 및 설계 단계, 시공단계, 유지 및 보수단계와 철거단계 및 재건축 등 각 단계별 안전관리 정책을 알아보고, 건축안전과 관련된 제도들을 소개·분석한다.

이외에 건축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제도와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을 포함한 건축안전사고의 법적 책임 등도 살펴본다.

마지막 제5장은 결론으로서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가 다른 나라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도록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학술적 기여도는 첫째, 중국 건축안전에 관한 법규범, 정책,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를 국내 최초로 연구한 논문으로 중국의 관련 법규범과 정책 등을 살펴볼 수 있고, 둘째 중국 건축안전사고에 대한 법률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 및 형량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관련 법령 개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기여도는 첫째, 중국적 특색이 있는 건축안전 법제 중 핵심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의 건축안전 법제에 참고할 수 있고, 둘째 중국에 설립한 한국의 건설회사 혹은 건축관련 기업들이 중국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영활동 지침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학술적 기여도 및 정책적 기여도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본 연구는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자료, 관련 법령, 관련 판례를 조사·분석하는 등의 문헌연구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건축안전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중국 건축안전 방면에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떠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검토해보는 한편, 중국의 건축안전 관련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지방성 법규, 표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정리하여 우리나라의 건축법제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의 중점연구과제로서 8개 국가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 연구를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각 국가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책임자들과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졌다.

< 공동연구진 >

| 연번 | 보고서명 | 연구책임(소속) |
|----|--------------------------|---------------------------|
| 1 | 일본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2 | 프랑스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 3 | 독일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4 | 미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영진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 5 | 영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용훈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 6 | 호주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원중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 7 | 캐나다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박영철 (용인송담대학 법률실무학과 교수) |
| 8 |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상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 2 장 중국 건축안전관리 현황

제 1 절 건축안전사고 개요

1. 2000년대 초반

중국의 ‘주택과 도농 건설부(住房城鄉建設部)’(이하 ‘건설부’) 등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 전역의 건축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사망자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846건으로 그 중 987명이 사망하였고, 2001년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총 1,004건인데 그 중 사망자수는 1,045명에 달하였다. 2002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208건으로 그 중 사망자수는 1,292명이었다. 2003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292건이고, 그 중 사망자수는 1,524명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144건으로 그 중 사망자수는 1,323명이었고, 2005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015건으로 사망자수는 1,193명이었다.

이와 같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00년을 제외하고 모두 1,000여건에 달하였고, 건축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0년을 제외하고 모두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자료를 정리하면 사고 발생 수와 사망자 수는 2004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는 건축안전생산⁸⁾ 추세가 점진적으로 안정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같은 시기에 중대한 사고도 몇 차례 발생하여 전반적인 안전사고의 발생 현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⁹⁾

8) 중국에서 안전생산(安全生产)은 주로 광산, 탄광 등 기업의 안전생산과 건축안전, 식품안전, 그리고 교통운수안전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9) 孙景仙, 建筑安全犯罪: 以犯罪学为视角, 黑龙江省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제1호, 2012년, 37쪽.

2. 2010년 이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627건으로 그 중 사망자수는 772명이었다. 2011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589건이었고, 그 중 사망자수는 738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총48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사망자수는 624명이었다. 2013년에는 안전사고 총528건 중, 사망자수는 674명이었고, 2014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522건이었으며, 그 중 사망자수는 648명이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제1분기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52건이며, 그 중 사망자수는 68명이었다.¹⁰⁾ 이와 같이 중국 건설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건축안전사고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조심스럽다. 중국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안전사고의 발생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빈번한 편이고 ‘비교적 큰 사고’ 이상 급의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고’ 또한 완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¹⁾ 따라서 일반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비교적 큰 중대한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0)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판공실(中華人民共和國住房和城鄉建設部安全生產管理委員會辦公室), <2015년 1분기 건축시공 안전사고현황 통보(2015년 1季度房屋市政工程生產安全事故情況的通報)>, 2015년 4월27일.

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505/t20150504_220774.html(2015.7.30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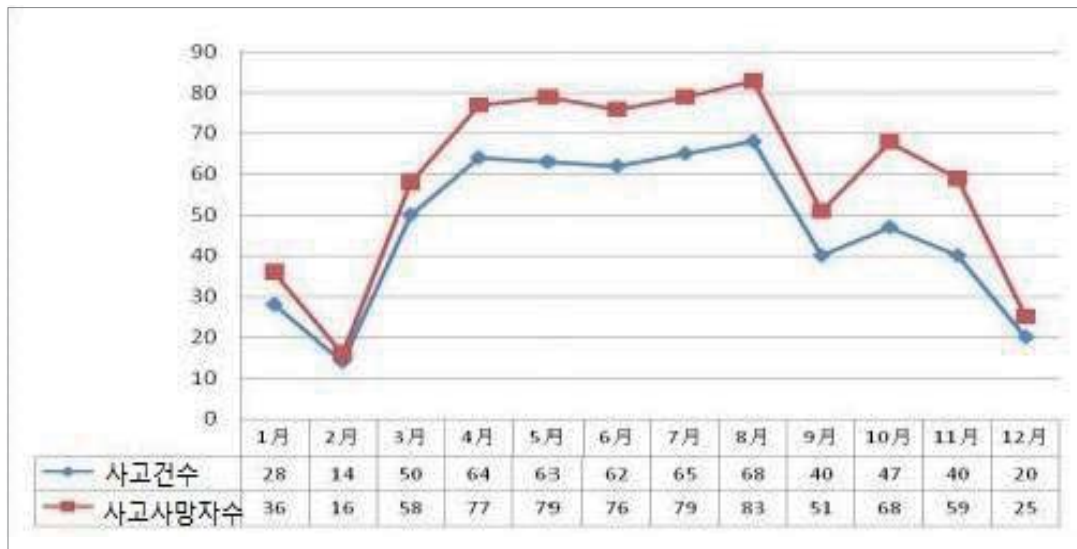
11) 卢永琴, 建筑企业的安全法律责任分析, 建筑安全, 제9호, 2014년, 4쪽.

제 2 절 연도별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1. 2011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2011년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건축시공 안전사고는 총 561건이었으며, 이 중 사망자는 707명이었다.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건축시공 안전사고 중 ‘비교적 큰 사고’는 25건이었으며, 사망자는 109명이었다. 아래의 <표 1>과 <표 2>¹²⁾는 각각 2011년 건축시공 안전사고, 2011년 건축시공 안전사고 중 ‘비교적 큰 사고’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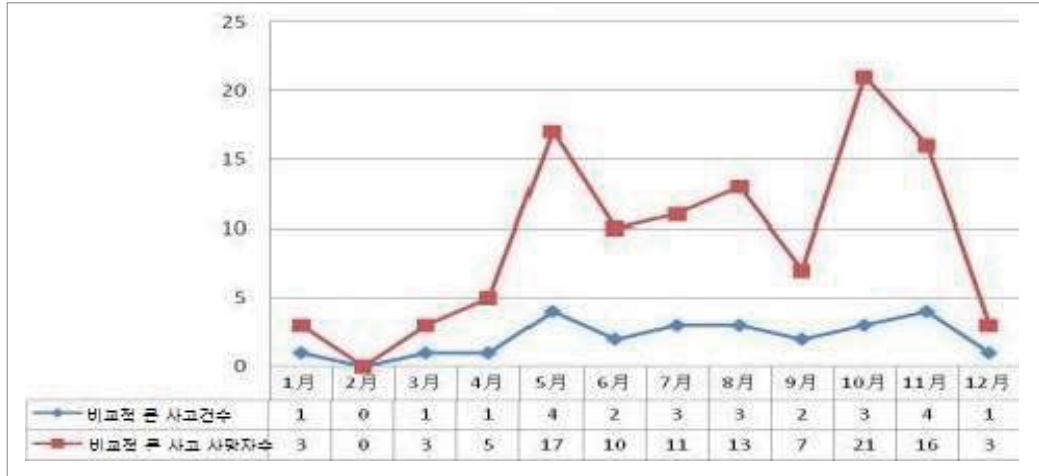
<표 1. 2011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12)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판공실, <2011년 12월 건축시공 안전사고현황 통보>, 2012년 1월5일.

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201/t20120110_208373.html(2015.7.30접속)

<표 2. 2011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중 ‘비교적 큰 사고’>



또한, 2011년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 중에서 건축안전과 관련된 키워드가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러우와이와이(樓歪歪, 삐뚤삐뚤한 건물)’이고, 다른 하나는 ‘차오타타(橋塌塌, 무너지고 부서진 다리)’이었다. 그만큼 2011년에 중국에서는 많은 건물붕괴사고와 교량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1) 건축물 사고

- 1) 2011년 1월말 광둥성(廣東省) 칭위안시(清遠市)의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8층 규모의 콘크리트건물이 기울어진 것을 동네주민이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조사결과 당해 건물 바로 앞에 중학교가 있었으며 수많은 교사와 학생 등 인파가 통행하는 곳으로 많은 이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칭위안시(清遠市) 건설국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건물의 지반공사가 부실하여 건물이 70cm 가량 기울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즉각 철거하라는 조치를 취하였다.¹³⁾

13) 수호망(搜狐网), 2011년 1월28일 보도, “广东清远市现“楼歪歪” 참조.
<http://roll.sohu.com/20110128/n302683813.shtml>(2015.8.3접속)

- 2) 2011년 1월, 저장성(浙江省) 타이저우(台州)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주택단지인 위장란완(余江藍灣) 국제단지의 제17동이 완공되어 분양이 완료되었다. 10개월 후,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이 기울어졌음을 발견하고, 관련부처에 신고하였다. 현장조사결과 건물의 기둥들이 부실하여 건물이 전반적으로 기울어졌고, 지하의 기둥은 20cm 정도가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실공사로 판명이 났다. 그 동(棟)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긴급대피를 하였으며, 제17동은 철거되었다. 제17동의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같은 단지 내의 제21동 역시 심각한 부실이 발견되어 많은 주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¹⁴⁾
- 3) 2011년 12월 우한시(武漢市) 한커우구(漢口區)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주택단지인 ‘쯔룬밍위안(紫潤明園)’ 단지에서 부분적인 지반 함몰과 외벽 절개, 그리고 건물누수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잇따라 발견되었다. 심각한 부실공사로 판명이 난 당해 단지는 정부 관련부처의 안전검사절차를 큰 문제없이 통과하였으며 소방검사, 특수설비검사 등 관련 절차들도 모두 순조롭게 통과되었다. 또한 환경보호와 도시계획 등 관련부처의 검사도 역시 모두 통과되었다. 심지어 우한시(武漢市) 건축공사 은상을 수상하여 다른 시공회사들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었던 단지여서¹⁵⁾ 그 지역 지방정부의 건축안전 관련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또 건축 관련담당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고였다.

14) 참조, 축룡건축시공망(築龍建築施工網), 2011년 11월3일 보도, “19层住宅楼交房10个月就倾斜框架柱被压碎”. <http://news.zhulong.com/read143848.htm>(2015.8.3접속)

15) 왕이망(網易網), 2011년 11월9일 보도, ‘武汉保障房头顶多个光环曝质量问题成楼脆脆’. <http://money.163.com/11/1209/23/7KSD6HJV00253B0H.html>(2015.8.3접속)

(2) 교량 사고

- 1) 2012년 6월 19일, 총 공사비용으로 2900만 위안(元)이 투자된 푸쑤시(撫順市) 웨야도(月牙島)대교가 공산당 창당기념일인 7월1일에 앞서 개통식을 진행하였는데, 개통식 도중에 총 길이 416.4m의 다리 중간이 붕괴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차량통행이 시작되지 않아 사상자는 없었으나 교량건설과 관련된 안전문제들이 회자되었던 사고였다. 또 그보다 10개월 전인 2011년 4월 12일 새벽, 쑤장(新疆)위구르자치구 쿠얼러시(庫爾勒市) 교외의 콩취예허(孔雀河)대교의 기둥이 무너지고, 교량 중간에 길이 10m, 폭 12m로 함몰되어 교통이 전면 통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해 교량은 불과 13년 전에 건축된 교량이었다.¹⁶⁾ 중국대륙의 동쪽과 서쪽에서 발생한 교량 안전사고인데, 전국 전역의 모든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 2) 2011년 7월 11일 새벽, 장쑤성(江蘇省) 염청시(鹽城市) 경내 328번 도로의 통위허(通榆河)대교가 붕괴되어 화물차 두 대가 추락하였으나 사상자는 없었던 사고가 발생하였다. 통위허대교는 14년 전에 건축한 것으로 밝혀졌다.¹⁷⁾
- 3) 2011년 7월 14일, 총1700만 위안(元)을 투자하여 현지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던 우이산시(武夷山市) 공관(公館)대교가 붕괴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관광버스 한 대가 추락하여 사망자

16) 왕이망(網易網), 2011년 4월12일 보도, ‘新疆库尔勒孔雀河大桥部分垮塌桥龄13年’. <http://news.163.com/photoview/00AN0001/14026.html>(2015.8.3접속)

17) 중국강소망(中國江蘇網), 2011년 7월20일 보도, ‘328省道跨通榆河大桥垮塌滨海段通榆河昨恢复通航’. <http://jsnews.jschina.com.cn/system/2011/07/20/011262121.shtml> (2015.8.3접속)

1명, 부상자 22명이 발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공관(公館)대교는 12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다.¹⁸⁾ 이와 같이 교량 사고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교량 건설 모든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4) 2011년 7월 15일, 항저우시(杭州市) 첸장싼교(錢江三橋) 일부가 붕괴되어, 중형트럭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운전기사는 탈출하여 중상을 입었다. 당해 교량은 중국 교량건설 역사상 많은 기록을 수립했던 교량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인 사고였다. 이 교량은 14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다.¹⁹⁾ 불과 건축한지 10여년 만에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면, 중국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다.
- 5) 2011년 11월 인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총 3억 위안(元)을 투자하여 ‘아시아 제일의 인터체인지’라고 자부했던 정저우시(鄭州市) 류장(劉江)인터체인지가 곳곳이 갈라지는 부분이 발견되었고, 조사결과 부실공사임이 판명되었다. 당해 인터체인지는 겨우 6년 전에 완공된 것으로 밝혀져 더욱 큰 충격이 되었다.²⁰⁾

이와 같이 건축물 안전사고는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신력과 사회 안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더 나아가 한 국가의 국제적 위상에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18) 복건신랑망(福建新浪網), 2011년 7월18일 보도, ‘武夷山大橋垮塌的拷問：超載不絕’体检‘缺位’. <http://fj.sina.com.cn/news/s/2011-07-18/0834104688.html>(2015.8.3접속)

19) 중신망(中新網), 2011년 7월15일 보도, ‘杭州钱塘江三桥桥面塌落货车卡在桥面塌落处’. <http://www.chinanews.com/sh/2011/07-15/3184097.shtml>(2015.8.3접속)

20) 인민망(人民網), 2011년 11월25일 보도, ‘通车仅6年竟大动手术, 郑州刘江立交桥被指豆腐渣’. <http://society.people.com.cn/GB/136657/16382642.html>(2015.8.3접속)

또한 위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시공업체나 감리(監理) 업체 측은 사고발생의 원인을 모두 차량통행량 과다 또는 적재화물 초과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교량 붕괴사건의 모든 교량이 14년이 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교량건축 전문가인 마오이성(茅以升)선생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건설된 7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첸탕장(錢塘江) 대교(大橋)와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교량들이다.²¹⁾ 앞서 언급하였던 항저우시(杭州市)의 천장싼교(錢江三橋) 시공 총책임자와 부책임자 모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었던 점을 보면 부패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²²⁾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이 현재 전쟁하듯이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하는 저변에는 이와 같이 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부패문제가 있는 것이다. 업계가 부패하고, 관료들이 부패하는 한 건축안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중국 공산당 기율감찰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기율감찰기관이 수리한 건설공사 영역에서의 기율위반문제 신고건은 총 3만여건이고, 공산당의 기율위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1,273명으로 조사되었다.²³⁾ 부패는 국가재정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막중한 피해와 손실을 입히고 공공안전도 위협하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 대부분은, 뿌리 깊게 내려진 부정부패 문화를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²⁴⁾ 건축시공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 상

21) 첸탕장(錢塘江) 대교(大橋)는 지금도 아래층은 철로가 있어서 기차가 다니고 있고, 윗층 도로는 자동차들이 수업이 다녀도 지금까지 교량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张荆, 公共安全问题突显的原因与对策研究, 河南警察学院学报, 제21권 제5호, 2012년 10월, 60쪽.

22) 이와 같이 중국의 건축 안전사고의 이면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일본의 경우 건축물 안전사고나 건축현장에서의 비리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나채준, 일본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종심의자료, 95쪽.

23) 참조, 법제망(法制網),

http://legaldaily.com.cn/index/content/2011-12/31/content_3257330_2.html(2015.7.30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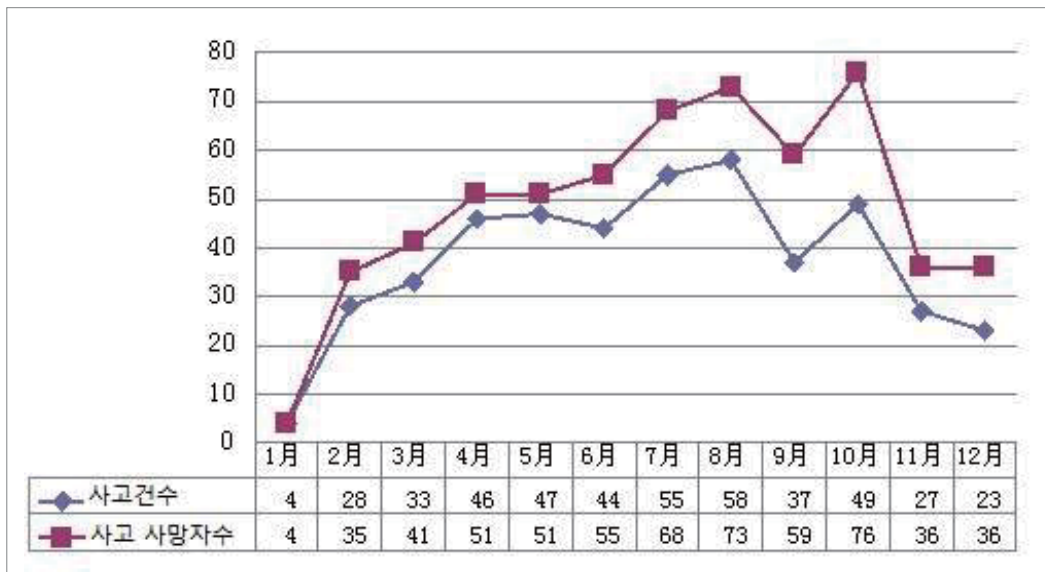
24) 참조, 张荆, 公共安全问题突显的原因与对策研究, 河南警察学院学报, 2012년 10월호, 60쪽 이하.

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건축시공 책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하는 한편, 건축시공 책임자들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2012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2012년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건축시공 안전사고는 총 451건이었으며, 이 중 사망자는 585명이었다. 이밖에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건축시공 안전사고 중 ‘비교적 큰 사고’는 29건이었으며, 사망자는 128명이었는데, 매달 발생한 건수는 아래의 <표 3>, <표 4>와 같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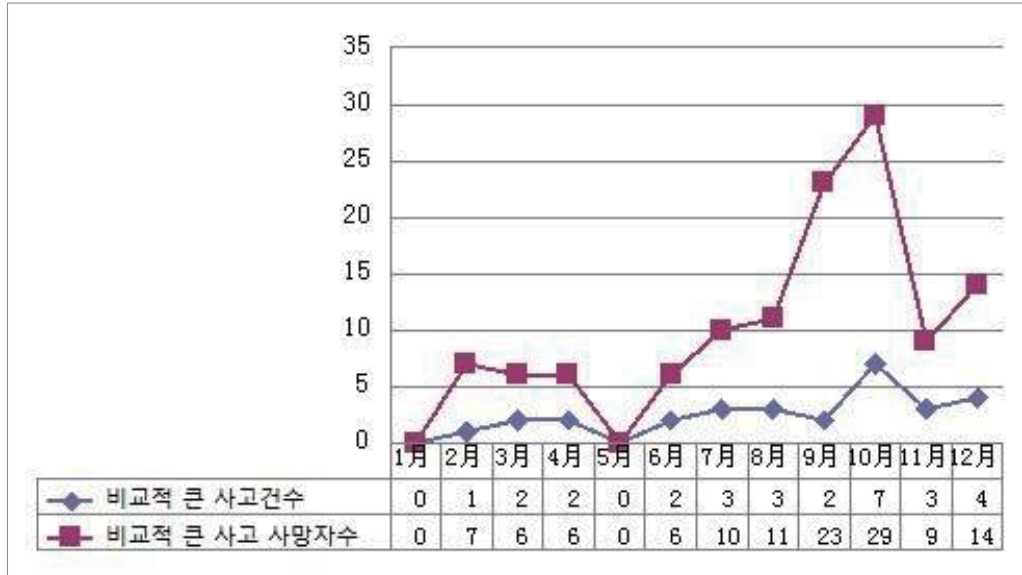
<표 3. 2012년 건축시공 안전사고>



25)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관공실(中華人民共和國住房和城鄉建設部安全生產管理委員會辦公室), <2012년 12월 건축시공 안전사고현황 통보(2012年12月房屋市政工程生產安全事故情況的通報)>, 2013년 1월6일.

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zl/201301/t20130111_212534.html(2015.7.30접속)

<표 4. 2012년 건축시공 안전사고 중 ‘비교적 큰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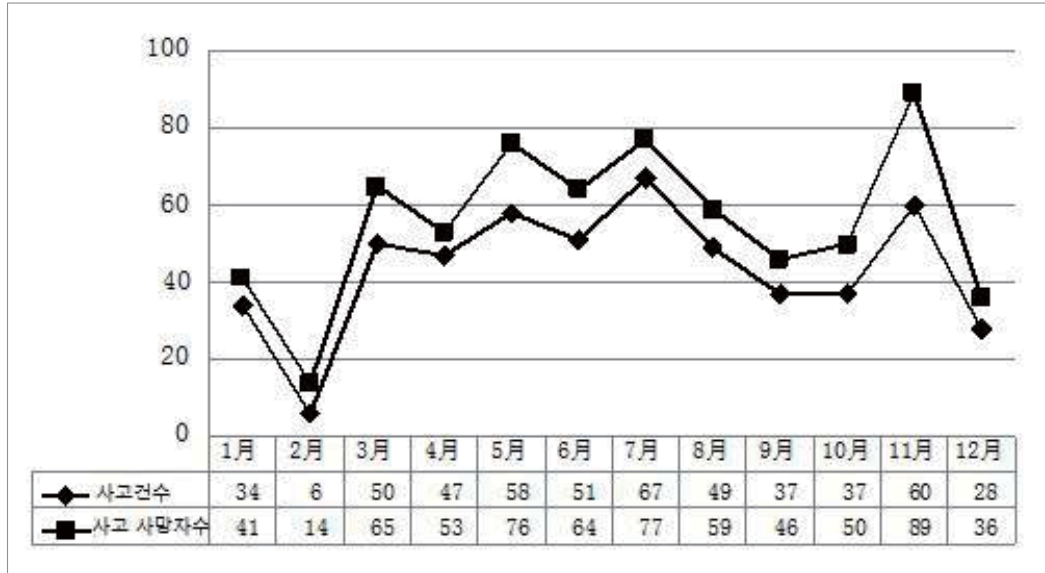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건축시공 안전사고는 일반사고이든 ‘비교적 큰 사고’이든 동절기는 보다 적게 발생하고, 건축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3. 2013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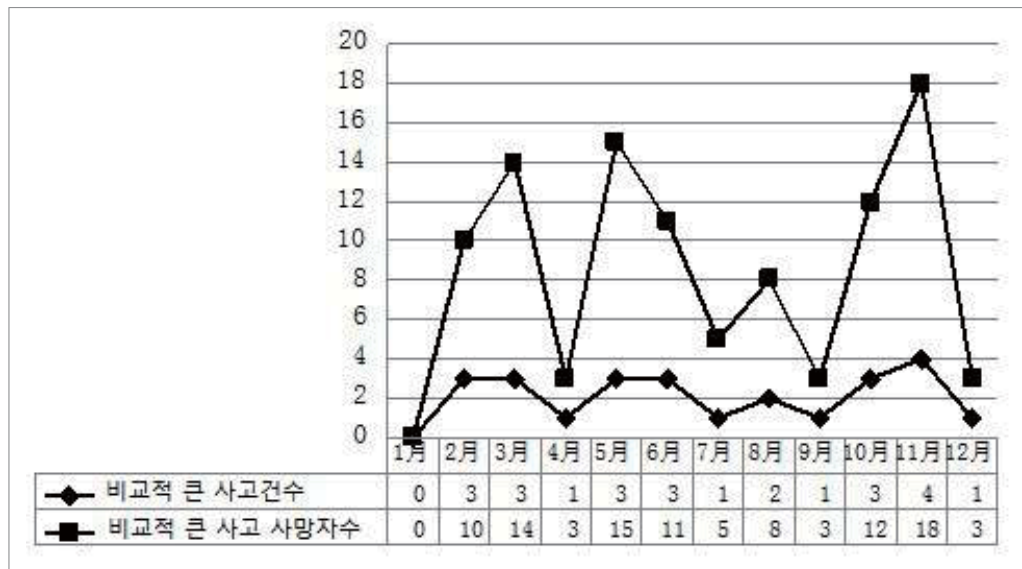
2013년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건축시공 안전사고는 총 524건이었으며, 이 중 사망자는 670명이었다.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건축시공 안전사고 중 ‘비교적 큰 사고’는 25건이었으며, 사망자는 102명이었다. 아래의 <표 5>, <표 6>과 같이 발생하였다.²⁶⁾

26)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관공실(中華人民共和國住房和城鄉建設部安全生產管理委員會辦公室), <2013년 12월 건축시공 안전사고현황 통보 (2013년 12월 房屋市政工程生產安全事故情況的通報>, 2014년 1월 13일, 참조.
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01/t20140117_216900.html(2015.7.30접속)

<표 5. 2013년 건축시공 안전사고>



<표 6. 2013년 건축시공 안전사고 중 ‘비교적 큰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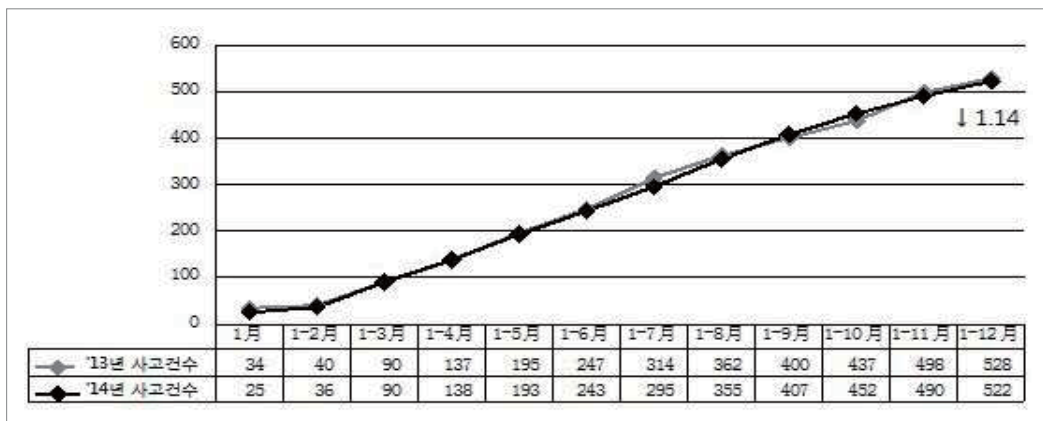


위의 <표 5>의 2013년 건축시공 안전사고에서 2월에 발생한 사고건수가 현저하게 낮는데, 이는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 음력설을 보내기 위하여 공사를 장시간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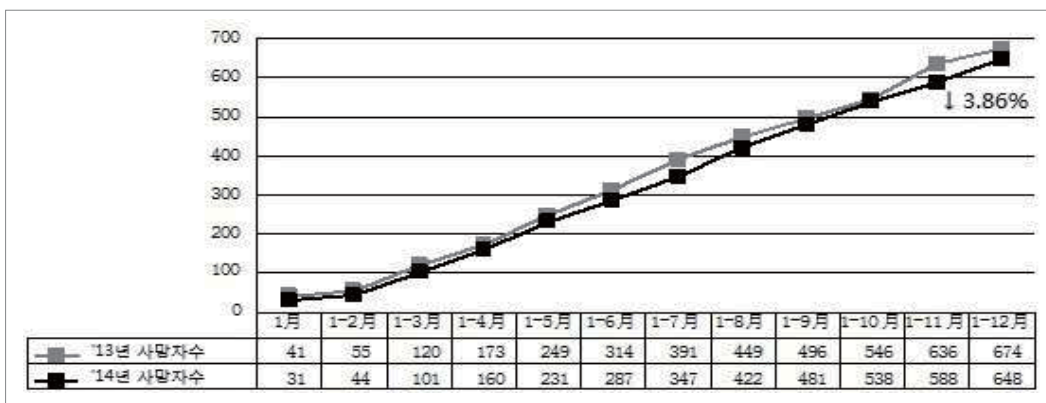
4. 2014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2014년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건축시공 안전사고는 총 522건이었으며, 이 중 사망자는 648명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6건의 사고수가 감소한 것이고, 사망자는 26명 감소하여 각각 1.14%와 3.86% 감소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7>, <표 8>²⁷⁾과 같다.

<표 7. 2013, 2014년 건축시공 안전사고>



<표 8. 2013, 2014년 건축시공 안전사고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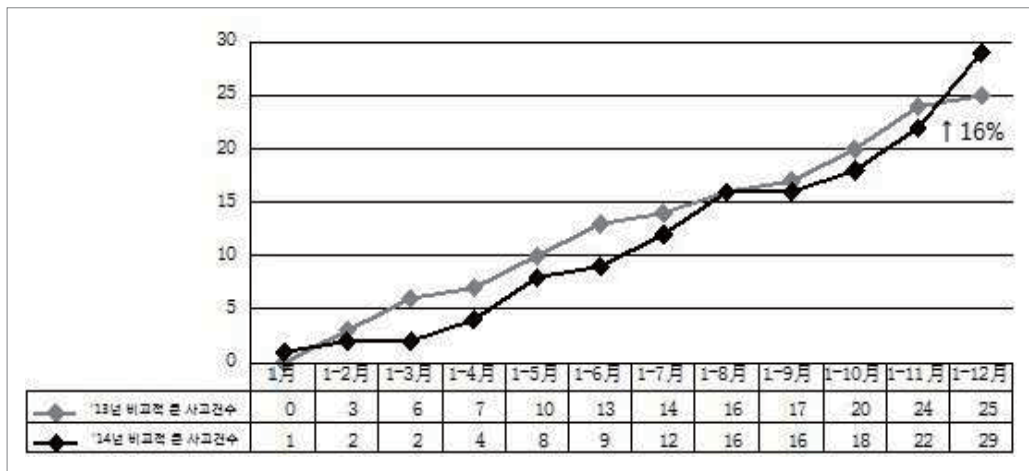


27)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관공실(中華人民共和國住房和城鄉建設部安全生產管理委員會辦公室), <2014년 12월 건축시공 안전사고현황 통보(2014년 12월房屋市政工程生產安全事故情況的通報)>, 2015년 1월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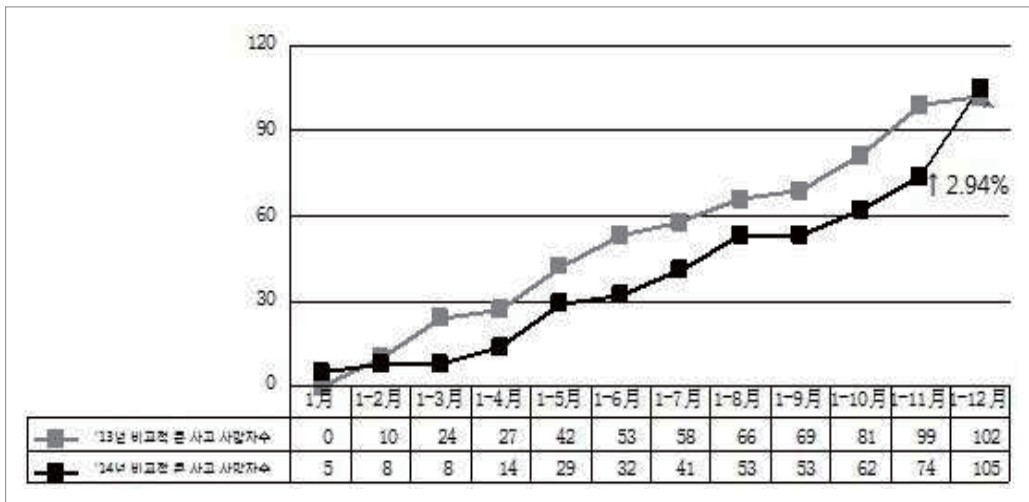
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501/t20150116_220142.html(2015.7.30접속)

이밖에 2014년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건축시공 안전사고 중 ‘비교적 큰 사고’는 29건이었으며, 사망자는 105명이었다. 아래의 <표 9>와 <표 10>²⁸⁾과 같이 전년 동기대비 16.00%와 2.94% 각각 증가하였다.

<표 9. 2013, 2014년 ‘비교적 큰 사고’ 건수>



<표 10. 2013, 2014년 ‘비교적 큰 사고’ 사망자수>



28)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관공실(中華人民共和國住房和城鄉建設部安全生產管理委員會辦公室), <2014년 12월 건축시공 안전사고현황 통보(2014년 12월房屋市政工程生產安全事故情況的通報)>, 2015년 1월12일.
www.mohurd.gov.cn/zcfg/jsbjw_0/jsbjwgczl/201501/t20150116_220142.html(2015.7.30접속)

2014년 하반기에 중국의 장시(江西), 광둥(廣東), 닝샤(寧夏), 허난(河南), 베이징(北京) 등 지역에서 5건의 붕괴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있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속적인 5건의 붕괴사고에 대하여 중국 건설부는 <베이징(北京) ‘12.29’ 등 5건 붕괴사고의 통보(關於對北京 ‘12·29’ 等五起坍塌事故的通報)>(建質[2014]192호)를 하달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의 건축안전 관련부처에 당부하기도 하였다. 5건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⁹⁾

- 1) 2014년 10월 20일, 장시성(江西省) 지안시(吉安市) 신간현(新幹縣) 허시(河西)안내센터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플레이트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였다. 시공현장에서 발견된 법률법규 위반 사항을 보면 첫째 건설업체가 규정에 따라 입찰절차를 밟지 않았고, 둘째 시공업체는 자격제한의 범위를 초과한 시공을 하여 공사를 수주 받았으며, 셋째 시공업체가 콘크리트 플레이트 받침대 시공방안을 작성한 후에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을 받지 아니하였고, 넷째 시공업체가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공사품질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감리업체는 제때에 감리를 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 2014년 11월10일, 광둥성(廣東省) 푸산시(佛山市) 신이즈이(新怡智逸) 빌딩 공사현장에서 건물기반 공사 중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였다. 현장에서 일어난 위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공업체는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였고, 둘째 시공업체가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을 주었으며, 셋째

29)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베이징(北京) ‘12.29’ 등 5건 붕괴사고의 통보(關於對北京 ‘12·29’ 等五起坍塌事故的通報)>(建質[2014]192호), 2014년 12월 31일.
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12/t20141231_219963.html(2015.7.30접속)

근로자 고용규범을 준수하지 않았고, 넷째 기초공사 과정에서 먼저 공사를 시작한 후 설계를 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으며, 다섯째 제3자 감독기관의 감독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총감독업체의 감독업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3) 2014년 11월20일 Ningxia(寧夏)회족자치구 우쑹시(吳忠市) 염츠현(鹽池縣) 난방공급회사의 난방공급센터 공사 중, 콘크리트 플레이트 받침대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였다. 위반행위로는 첫째 건설업체가 시공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였고, 둘째 콘크리트 플레이트 시공방안은 작성한 후 심사 비준을 받지 않았으며, 셋째 안전기술규범을 준수하지 않은채 콘크리트를 사용하였으며,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4) 2014년 12월 19일 허난성(河南省) 신양시(信陽市)시 광산현(光山縣) 행복화원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플레이트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였다. 위반사항으로는 첫째 건설업체가 불법발주를 하였고, 둘째 시공업체는 자격증서를 도용하였으며, 셋째 근로자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넷째 타워형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사용 규정을 위반하였고, 다섯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철근을 사용하였으며, 여섯째 감리업체가 감리를 하지 않아 현장의 많은 위반행위들이 제때에 보고되지 않았다.
- 5) 2014년 12월29일 베이징시(北京市) 하이디엔구(海澱區) 칭화(清華) 대학교 부속중학교 체육관 공사현장에서 기초철근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속적으로 발생한 5건의 붕괴사고를 분석해 볼 때, 우선 건축시공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안전사고는 아마도 중국 전역에 건축공사 품질 안전관리에 경고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붕괴사고 이후, 중국 중앙 정부 건설부는 ‘비교적 큰 사고’ 이상 급의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방침을 발표하였다.³⁰⁾

첫째 사망자가 5명 이상인 사고에 대하여서는 건설부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사고상황을 보고하기 한다.

둘째 ‘비교적 큰 사고’ 이상 급의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1년 이내에 새로운 공사를 발주받지 못하도록 한다.

셋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친 지역은 현지 지방정부 주관부처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중지 및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없는지, 위반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중국 건설부는 대형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건축안전에 관한 업무를 보다 강화하였는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려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아래의 <표 11>, <표 12>³¹⁾는 2014년 중국 각 지역 주요 성(省)급 지방정부의 건축시공 안전사고건수와 사망자수 그리고 ‘비교적 큰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를 정리한 것이다.

30)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베이징(北京) ‘12.29’ 등 5건 붕괴사고의 통보(關於對北京 ‘12·29’等五起坍塌事故的通報)>(建質[2014]192호), 2014년 12월31일. 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12/t20141231_219963.html(2015.7.30접속)

31)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관공실(中華人民共和國住房和城鄉建設部安全生產管理委員會辦公室), <2014년 12월 건축시공 안전사고현황 통보(2014年12月房屋市政工程生產安全事故情況的通報)>, 2015년 1월12일. 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501/t20150116_220142.html(2015.7.30접속)

<표 11. 2013, 2014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

| 지역 | 전체현황 | | | | | | | |
|---------------|---------|-------|---------|--------|---------|---------|-------|--------|
| | 사고건수(건) | | | | 사망자수(명) | | | |
| | 2014년 | 2013년 | 전년 동기대비 | 2014년 | 2013년 | 전년 동기대비 | 2014년 | 2013년 |
| 합계 | 522 | 528 | -6 | -1.14% | 648 | 674 | -26 | -3.86% |
| 베이징 (北京) | 18 | 16 | 2 | 12.5% | 32 | 16 | 16 | 100.0% |
| 톈진 (天津) | 10 | 14 | -4 | -28.6% | 11 | 15 | -4 | -26.7% |
| 허베이 (河北) | 6 | 9 | -3 | -33.3% | 6 | 12 | -6 | -50.0% |
| 산씨 (山西) | 3 | 7 | -4 | -57.1% | 5 | 14 | -9 | -64.3% |
| 네이멍구 (內蒙古) | 10 | 9 | 1 | 11.1% | 13 | 10 | 3 | 30.0% |
| 랴오닝 (遼寧) | 15 | 14 | 1 | 7.1% | 20 | 14 | 6 | 42.9% |
| 지린 (吉林) | 9 | 24 | -15 | -62.5% | 9 | 27 | -18 | -66.7% |
| 헤이룽장 (黑龍江) | 22 | 27 | -5 | -18.5% | 32 | 34 | -2 | -5.9% |
| 상하이 (上海) | 24 | 22 | 2 | 9.1% | 26 | 26 | 0 | 0 |
| 장쑤 (江蘇) | 73 | 40 | 33 | 82.5% | 84 | 59 | 25 | 42.4% |

제 2 장 중국 건축안전관리 현황

| 지역 | 전체현황 | | | | | | | |
|-------------|---------|-------|---------|--------|---------|---------|-------|--------|
| | 사고건수(건) | | | | 사망자수(명) | | | |
| | 2014년 | 2013년 | 전년 동기대비 | 2014년 | 2013년 | 전년 동기대비 | 2014년 | 2013년 |
| 저장 (浙江) | 39 | 44 | -5 | -11.4% | 41 | 52 | -11 | -21.2% |
| 안후이 (安徽) | 27 | 27 | 0 | 0 | 30 | 38 | -8 | -21.1% |
| 푸젠 (福建) | 17 | 10 | 7 | 70.0% | 21 | 17 | 4 | 23.5% |
| 장시 (江西) | 8 | 18 | -10 | -55.6% | 14 | 25 | -11 | -44.0% |
| 산둥 (山東) | 19 | 12 | 7 | 58.3% | 21 | 17 | 4 | 23.5% |
| 허난 (河南) | 10 | 16 | -6 | -37.5% | 18 | 23 | -5 | -21.7% |
| 후베이 (湖北) | 22 | 21 | 1 | 4.8% | 28 | 34 | -6 | -17.6% |
| 후난 (湖南) | 14 | 15 | -1 | -6.7% | 18 | 21 | -3 | -14.3% |
| 광둥 (廣東) | 17 | 20 | -3 | -15.0% | 20 | 21 | -1 | -4.8% |
| 광시 (廣西) | 28 | 29 | -1 | -3.4% | 36 | 30 | 6 | 20.0% |
| 하이난 (海南) | 6 | 5 | 1 | 20.0% | 6 | 6 | 0 | 0 |
| 충칭 (重慶) | 33 | 28 | 5 | 17.9% | 35 | 28 | 7 | 25.0% |

제 2 절 연도별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 지역 | 전체현황 | | | | | | | |
|----------------|---------|-------|---------|---------|---------|-------|---------|---------|
| | 사고건수(건) | | | | 사망자수(명) | | | |
| | 2014년 | 2013년 | 전년 동기대비 | 동기대비 | 2014년 | 2013년 | 전년 동기대비 | 동기대비 |
| 쓰촨 (四川) | 13 | 8 | 5 | 62.5% | 15 | 14 | 1 | 7.1% |
| 귀저우 (貴州) | 13 | 13 | 0 | 0 | 19 | 16 | 3 | 18.8% |
| 윈난 (雲南) | 25 | 22 | 3 | 13.6% | 28 | 29 | -1 | -3.4% |
| 시짱 (西藏) | 3 | 2 | 1 | 50.0% | 4 | 2 | 2 | 100.0% |
| 산씨 (陝西) | 4 | 3 | 1 | 33.3% | 6 | 7 | -1 | -14.3% |
| 간수 (甘肅) | 9 | 19 | -10 | -52.6% | 11 | 23 | -12 | -52.2% |
| 칭하이 (青海) | 9 | 11 | -2 | -18.2% | 11 | 16 | -5 | -31.3% |
| 닝샤 (寧夏) | 4 | 4 | 0 | 0 | 9 | 5 | 4 | 80.0% |
| 신장 (新疆) | 12 | 17 | -5 | -29.4% | 19 | 21 | -2 | -9.5% |
| 신장부대 (新疆兵團) | 0 | 2 | -2 | -100.0% | 0 | 2 | -2 | -100.0% |

<표 12. 2013, 2014년 중국건축시공 ‘비교적 큰 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

| 지역 | ‘비교적 큰 사고’ 현황 | | | | | | | |
|---------------|---------------|-------|---------|---------|---------|-------|---------|-------------|
| | 사고건수(건) | | | | 사망자수(명) | | | |
| | 2014년 | 2013년 | 전년 동기대비 | | 2014년 | 2013년 | 전년 동기대비 | |
| 합계 | 29 | 25 | 4 | 16.00% | 105 | 102 | 3 | 2.94% |
| 베이징 (北京) | 2 | 0 | 2 | / | 15 | 0 | 15 | / |
| 텐진 (天津) | 0 | 0 | 0 | / | 0 | 0 | 0 | / |
| 허베이 (河北) | 0 | 0 | 0 | / | 0 | 0 | 0 | / |
| 산씨 (山西) | 1 | 1 | 0 | 0 | 3 | 5 | -2 | -40.0% |
| 네이멍구 (內蒙古) | 0 | 0 | 0 | / | 0 | 0 | 0 | / |
| 랴오닝 (遼寧) | 2 | 0 | 2 | / | 6 | 0 | 6 | / |
| 지린 (吉林) | 0 | 1 | -1 | -100.0% | 0 | 3 | -3 | -100.0 % |
| 헤이룽장 (黑龍江) | 3 | 2 | 1 | 50.0% | 9 | 7 | 2 | 28.6% |
| 상하이 (上海) | 0 | 1 | -1 | -100.0% | 0 | 5 | -5 | -100.0 % |
| 장쑤 (江蘇) | 3 | 3 | 0 | 0 | 10 | 11 | -1 | -9.1% |

제 2 절 연도별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 지역 | ‘비교적 큰 사고’ 현황 | | | | | | | |
|-------------|---------------|-------|---------|---------|---------|-------|---------|-------------|
| | 사고건수(건) | | | | 사망자수(명) | | | |
| | 2014년 | 2013년 | 전년 동기대비 | | 2014년 | 2013년 | 전년 동기대비 | |
| 저장 (浙江) | 0 | 0 | 0 | / | 0 | 0 | 0 | / |
| 안후이 (安徽) | 1 | 1 | 0 | 0 | 3 | 8 | -5 | -62.5% |
| 푸젠 (福建) | 0 | 3 | -3 | -100.0% | 0 | 10 | -10 | -100.0 % |
| 장시 (江西) | 1 | 2 | -1 | -50.0% | 6 | 7 | -1 | -14.3% |
| 산둥 (山東) | 1 | 0 | 1 | / | 3 | 0 | 3 | / |
| 허난 (河南) | 2 | 1 | 1 | 100.0% | 8 | 3 | 5 | 166.7% |
| 후베이 (湖北) | 2 | 2 | 0 | 0 | 6 | 12 | -6 | -50.0% |
| 후난 (湖南) | 1 | 1 | 0 | 0 | 3 | 3 | 0 | 0 |
| 광둥 (廣東) | 1 | 0 | 1 | / | 3 | 0 | 3 | / |
| 광시 (廣西) | 2 | 0 | 2 | / | 8 | 0 | 8 | / |
| 하이난 (海南) | 0 | 0 | 0 | / | 0 | 0 | 0 | / |
| 충칭 (重慶) | 0 | 0 | 0 | / | 0 | 0 | 0 | / |

제 2 장 중국 건축안전관리 현황

| 지역 | ‘비교적 큰 사고’ 현황 | | | | | | | |
|----------------|---------------|-------|---------|---------|---------|-------|---------|-------------|
| | 사고건수(건) | | | | 사망자수(명) | | | |
| | 2014년 | 2013년 | 전년 동기대비 | | 2014년 | 2013년 | 전년 동기대비 | |
| 쓰촨 (四川) | 1 | 2 | -1 | -50.0% | 3 | 8 | -5 | -62.5% |
| 귀저우 (貴州) | 1 | 0 | 1 | / | 3 | 0 | 3 | / |
| 윈난 (雲南) | 0 | 2 | -2 | -100.0% | 0 | 6 | -6 | -100.0 % |
| 시짱 (西藏) | 0 | 0 | 0 | / | 0 | 0 | 0 | / |
| 산씨 (陝西) | 0 | 1 | -1 | -100.0% | 0 | 5 | -5 | -100.0 % |
| 간수 (甘肅) | 0 | 0 | 0 | / | 0 | 0 | 0 | / |
| 칭하이 (青海) | 1 | 1 | 0 | 0 | 3 | 5 | -2 | -40.0% |
| 닝샤 (寧夏) | 2 | 0 | 2 | / | 6 | 0 | 6 | / |
| 신장 (新疆) | 2 | 1 | 1 | 100.0% | 7 | 4 | 3 | 75.0% |
| 신장부대 (新疆兵團) | 0 | 0 | 0 | / | 0 | 0 | 0 | / |

2013년의 건축시공 안전사고 건수는 전체적으로 볼 때 6건 줄어들었다. 특히 간수(甘肅), 장시(江西)는 전년대비 각각 10건이 줄어들었고, 지린(吉林)은 15건이나 줄어들었다. 그런데 장쑤(江蘇)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사고가 40건(82.5%)이나 늘어나 주목된다. 사망자수 또한 장

쑤(江蘇)지역이 84명(2014년)으로 제일 많지만 산씨(山西), 지린(吉林), 닝샤(寧夏) 등은 사망자수가 각각 5명, 9명, 9명으로 양호한 편이다. 이들 지역의 사고건수는 2014년에는 3건, 9건, 4건으로 안전상태 역시 좋은 편이다. 인구가 비교적 적은 지역인 하이난(海南)과 시짱(西藏)은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2014년)가 각각 6명과 4명이며, 사고건수 역시 좋아져서 해마다 6건을 넘지 않았다.

‘비교적 큰 사고’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14년은 전년도 보다 4건이나 늘어나 29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2013년에 비해 3명이 더 늘어나 105명이었다. 각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헤이룽장(黑龍江)의 사고건수가 2013년에 2건, 2014년에 3건으로 제일 많았고, 사망자 수 또한 2013년 7명, 2014년 9명으로 2년 동안 제일 많은 편이었다. 베이징(北京)은 2013년에는 사고도 없었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4년에는 2건의 ‘비교적 큰 사고’가 일어나 15명이나 사망하였다. 네이멍구(內蒙古)와 시짱(西藏)은 인구도 적고 경제도 낙후하여 건설공사가 드물어서인지 2년 동안 ‘비교적 큰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사망자도 전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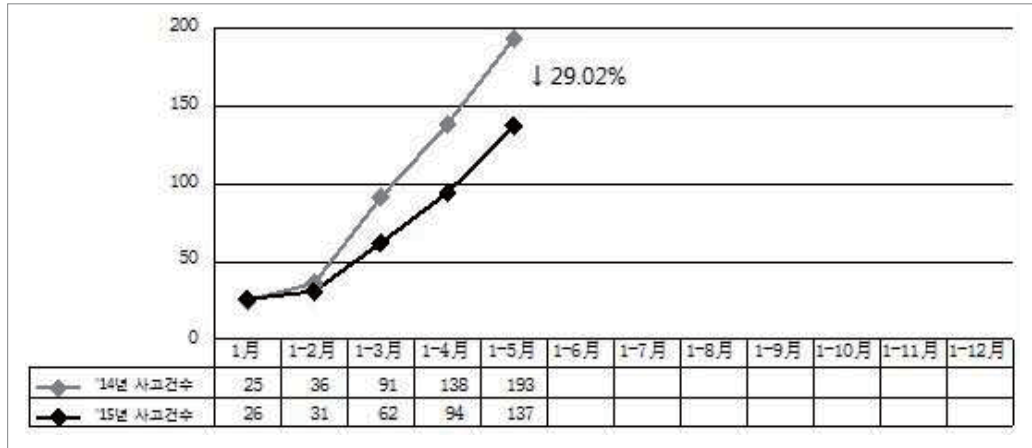
5.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건축시공 안전사고는 총 137건이었으며, 이 중 사망자는 177명이었다. 아래의 <표 13>, <표 14>³²⁾와 같이 각각 29.02%와 23.38%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56건의 사고가 감소한 것이고, 사망자는 54명 감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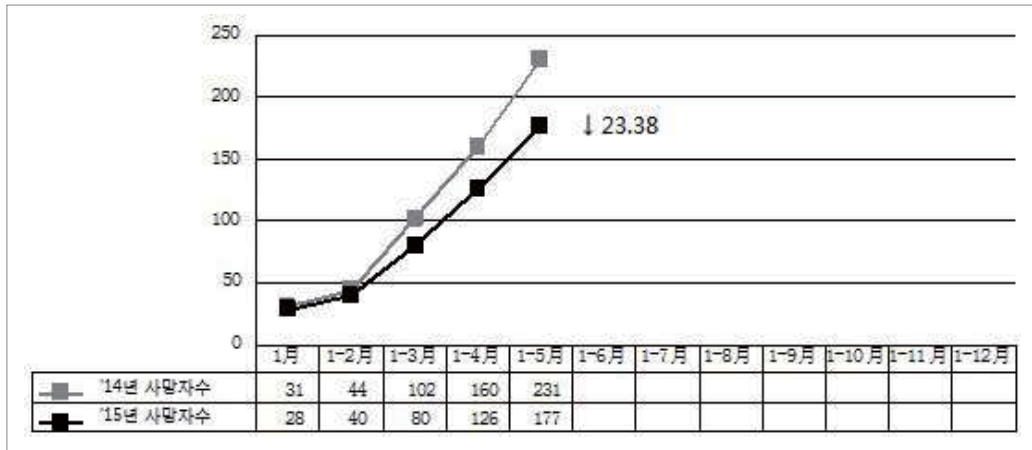
32)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관공실(中華人民共和國住房和城鄉建設部安全生產管理委員會辦公室), <2015년 5월 건축시공 안전사고현황 통보(2015年5月房屋市政工程生產安全事故情況的通報)>, 2015년 6월8일.

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506/t20150615_221386.html(2015.7.30접속)

<표 13. 2014, 2015년 1-5월 건축시공 안전사고>



<표 14. 2014, 2015년 1-5월 건축시공 안전사고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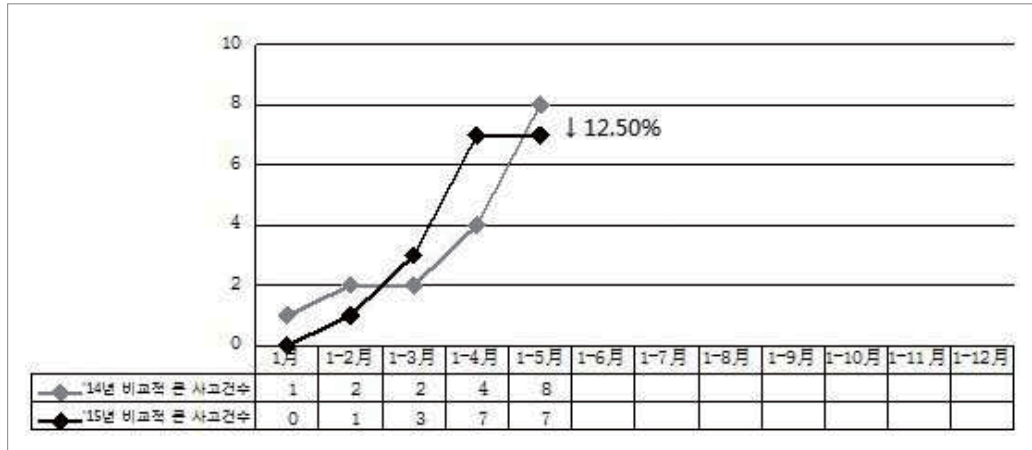


그리고, 아래의 <표 15>, <표 16>³³⁾과 같이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건축시공 안전사고 중 ‘비교적 큰 사고’는 7건 이었고, 사망자는 29명이었으며, 사고발생은 전년 동기대비 12.50% 감소 하였다. 그러나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와 변함이 없이 각각 29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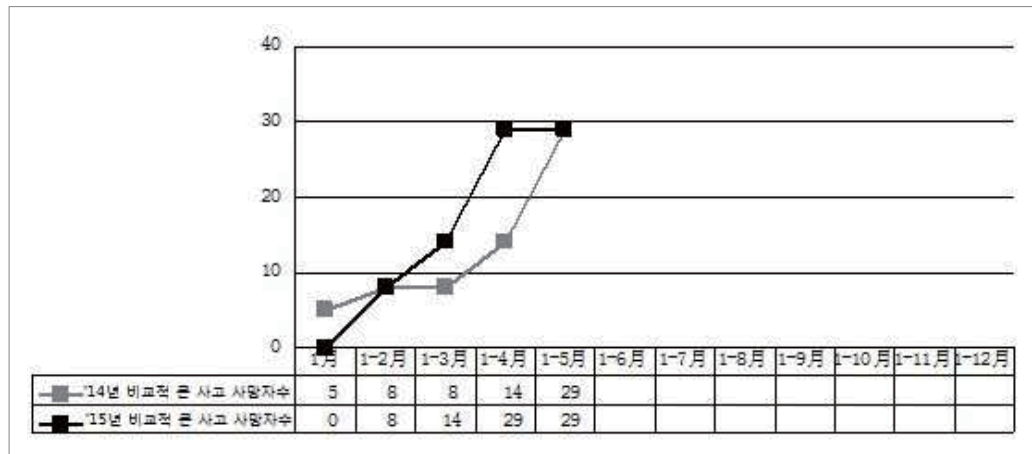
33)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관공실(中華人民共和國住房和城鄉建設部安全生產管理委員會辦公室), <2015년 5월 건축시공 안전사고현황 통보(2015년5월房屋市政工程生產安全事故情況的通報)>, 2015년 6월8일.

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506/t20150615_221386.html(2015.7.30접속)

<표 15. 2014, 2015년 1-5월 ‘비교적 큰 사고’ 건수>



<표 16. 2014-2015년 1-5월 ‘비교적 큰 사고’ 사망자수>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각 지역의 건축시공 안전사고건수와 사망자수 그리고 ‘비교적 큰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7>, <표 18>와 같다.³⁴⁾

34)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관공실(中華人民共和國住房和城鄉建設部安全生產管理委員會辦公室), <2015년 5월 건축시공 안전사고현황 통보(2015년5월房屋市政工程生產安全事故情況的通報)>, 2015년 6월8일.
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zcl/201506/t20150615_221386.html(2015.7.30접속)

<표 17. 2014, 2015년 1-5월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

| 지역 | 전체현황 | | | | | | | |
|---------------|---------|-------|---------|---------|---------|-------|---------|---------|
| | 사고건수(건) | | | | 사망자수(명) | | | |
| | 2015년 | 2014년 | 전년 동기대비 | | 2015년 | 2014년 | 전년 동기대비 | |
| 합계 | 137 | 193 | -56 | -29.02% | 177 | 231 | -54 | -23.38% |
| 베이징 (北京) | 7 | 7 | 0 | 0 | 8 | 11 | -3 | -27.3% |
| 톈진 (天津) | 4 | 5 | -1 | -20.0% | 4 | 5 | -1 | -20.0% |
| 허베이 (河北) | 4 | 2 | 2 | 100.0% | 9 | 2 | 7 | 350.0% |
| 산씨 (山西) | 0 | 0 | 0 | / | 0 | 0 | 0 | / |
| 네이멍구 (內蒙古) | 3 | 4 | -1 | -25.0% | 4 | 5 | -1 | -20.0% |
| 랴오닝 (遼寧) | 2 | 4 | -2 | -50.0% | 2 | 7 | -5 | -71.4% |
| 지린 (吉林) | 1 | 4 | -3 | -75.0% | 1 | 4 | -3 | -75.0% |
| 헤이룽장 (黑龍江) | 0 | 5 | -5 | -100.0% | 0 | 7 | -7 | -100.0% |
| 상하이 (上海) | 5 | 12 | -7 | -58.3% | 5 | 12 | -7 | -58.3% |
| 장쑤 (江蘇) | 22 | 18 | 4 | 22.2% | 24 | 21 | 3 | 14.3% |

제 2 절 연도별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 지역 | 전체현황 | | | | | | | |
|-------------|---------|-------|---------|--------|---------|---------|-------|--------|
| | 사고건수(건) | | | | 사망자수(명) | | | |
| | 2015년 | 2014년 | 전년 동기대비 | 2015년 | 2014년 | 전년 동기대비 | 2015년 | 2014년 |
| 저장 (浙江) | 14 | 15 | -1 | -6.7% | 15 | 15 | 0 | 0 |
| 안후이 (安徽) | 6 | 8 | -2 | -25.0% | 7 | 8 | -1 | -12.5% |
| 푸젠 (福建) | 6 | 10 | -4 | -40.0% | 8 | 13 | -5 | -38.5% |
| 장시 (江西) | 5 | 2 | 3 | 150.0% | 5 | 2 | 3 | 150.0% |
| 산둥 (山東) | 2 | 8 | -6 | -75.0% | 6 | 8 | -2 | -25.0% |
| 허난 (河南) | 2 | 5 | -3 | -60.0% | 3 | 8 | -5 | -62.5% |
| 후베이 (湖北) | 5 | 13 | -8 | -61.5% | 7 | 16 | -9 | -56.3% |
| 후난 (湖南) | 2 | 4 | -2 | -50.0% | 3 | 5 | -2 | -40.0% |
| 광둥 (廣東) | 7 | 7 | 0 | 0 | 7 | 8 | -1 | -12.5% |
| 광시 (廣西) | 11 | 9 | 2 | 22.2% | 14 | 13 | 1 | 7.7% |
| 하이난 (海南) | 4 | 2 | 2 | 100.0% | 6 | 2 | 4 | 200.0% |
| 충칭 (重慶) | 6 | 21 | -15 | -71.4% | 6 | 21 | -15 | -71.4% |

제 2 장 중국 건축안전관리 현황

| 지역 | 전체현황 | | | | | | | |
|----------------|---------|-------|----|---------|---------|-------|----|---------|
| | 사고건수(건) | | | | 사망자수(명) | | | |
| | 2015년 | 2014년 | 전년 | 동기대비 | 2015년 | 2014년 | 전년 | 동기대비 |
| 쓰촨 (四川) | 0 | 1 | -1 | -100.0% | 0 | 1 | -1 | -100.0% |
| 귀저우 (貴州) | 4 | 4 | 0 | 0 | 4 | 5 | -1 | -20.0% |
| 윈난 (雲南) | 4 | 8 | -4 | -50.0% | 11 | 9 | 2 | 22.2% |
| 시짱 (西藏) | 0 | 0 | 0 | / | 0 | 0 | 0 | / |
| 산씨 (陝西) | 2 | 2 | 0 | 0 | 6 | 3 | 3 | 100.0% |
| 간수 (甘肅) | 3 | 4 | -1 | -25.0% | 3 | 5 | -2 | -40.0% |
| 칭하이 (青海) | 1 | 4 | -3 | -75.0% | 3 | 4 | -1 | -25.0% |
| 닝샤 (寧夏) | 2 | 2 | 0 | 0 | 3 | 4 | -1 | -25.0% |
| 신장 (新疆) | 3 | 3 | 0 | 0 | 3 | 7 | -4 | -57.1% |
| 신장부대 (新疆兵團) | 0 | 0 | 0 | / | 0 | 0 | 0 | / |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건축시공 안전사고는 2015년에 137건으로 전년도 동기 193건보다 56건이 줄어들었다. 전 지역 중에서 충칭(重慶)은 2014년에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여 21건이었었는데 2015년에는 6건으로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장쑤(江蘇)지역은 2014년에 총

칭(重慶)보다 3건 적은 18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2015년에는 22건으로 증가하였다.

사망자 수는 2014년에 231명인데 2015년에는 177명으로 감소하였다. 각 지역별로 보면 충칭(重慶)이 2014년에 21명의 사망자를 내었지만 2015년에는 6명으로 대폭 줄었다. 장쑤(江蘇)지역의 경우 2014년에 21명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24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표 18. 2014, 2015년 1-5월 중국건축시공
'비교적 큰 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

| 지역 | '비교적 큰 사고' 현황 | | | | | | | |
|---------------|---------------|-------|---------|---------|---------|-------|---------|---------|
| | 사고건수(건) | | | | 사망자수(명) | | | |
| | 2015년 | 2014년 | 전년 동기대비 | 전년 동기대비 | 2015년 | 2014년 | 전년 동기대비 | 전년 동기대비 |
| 합계 | 7 | 8 | -1 | -12.50% | 29 | 29 | 0 | 0 |
| 베이징 (北京) | 0 | 1 | -1 | -100.0% | 0 | 5 | -5 | -100.0% |
| 톈진 (天津) | 0 | 0 | 0 | / | 0 | 0 | 0 | / |
| 허베이 (河北) | 1 | 0 | 1 | / | 5 | 0 | 5 | / |
| 산씨 (山西) | 0 | 0 | 0 | / | 0 | 0 | 0 | / |
| 네이멍구 (內蒙古) | 0 | 0 | 0 | / | 0 | 0 | 0 | / |
| 랴오닝 (遼寧) | 0 | 1 | -1 | -100.0% | 0 | 3 | -3 | -100.0% |
| 지린 (吉林) | 0 | 0 | 0 | / | 0 | 0 | 0 | / |

제 2 장 중국 건축안전관리 현황

| 지역 | ‘비교적 큰 사고’ 현황 | | | | | | | |
|---------------|---------------|-------|----|---------|---------|-------|----|---------|
| | 사고건수(건) | | | | 사망자수(명) | | | |
| | 2015년 | 2014년 | 전년 | 동기대비 | 2015년 | 2014년 | 전년 | 동기대비 |
| 헤이룽장 (黑龍江) | 0 | 0 | 0 | / | 0 | 0 | 0 | / |
| 상하이 (上海) | 0 | 0 | 0 | / | 0 | 0 | 0 | / |
| 장쑤 (江蘇) | 0 | 1 | -1 | -100.0% | 0 | 3 | -3 | -100.0% |
| 저장 (浙江) | 0 | 0 | 0 | / | 0 | 0 | 0 | / |
| 안후이 (安徽) | 0 | 0 | 0 | / | 0 | 0 | 0 | / |
| 푸젠 (福建) | 0 | 0 | 0 | / | 0 | 0 | 0 | / |
| 장시 (江西) | 0 | 0 | 0 | / | 0 | 0 | 0 | / |
| 산둥 (山東) | 1 | 0 | 1 | / | 4 | 0 | 4 | / |
| 허난 (河南) | 0 | 1 | -1 | -100.0% | 0 | 3 | -3 | -100.0% |
| 후베이 (湖北) | 0 | 1 | -1 | -100.0% | 0 | 3 | -3 | -100.0% |
| 후난 (湖南) | 0 | 0 | 0 | / | 0 | 0 | 0 | / |
| 광둥 (廣東) | 0 | 0 | 0 | / | 0 | 0 | 0 | / |
| 광시 (廣西) | 1 | 1 | 0 | 0 | 3 | 5 | -2 | -40.0% |

제 2 절 연도별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 지역 | ‘비교적 큰 사고’ 현황 | | | | | | | |
|----------------|---------------|-------|----|---------|---------|-------|----|---------|
| | 사고건수(건) | | | | 사망자수(명) | | | |
| | 2015년 | 2014년 | 전년 | 동기대비 | 2015년 | 2014년 | 전년 | 동기대비 |
| 하이난 (海南) | 0 | 0 | 0 | / | 0 | 0 | 0 | / |
| 충칭 (重慶) | 0 | 0 | 0 | / | 0 | 0 | 0 | / |
| 쓰촨 (四川) | 0 | 0 | 0 | / | 0 | 0 | 0 | / |
| 귀저우 (貴州) | 0 | 0 | 0 | / | 0 | 0 | 0 | / |
| 윈난 (雲南) | 1 | 0 | 1 | / | 8 | 0 | 8 | / |
| 시짱 (西藏) | 0 | 0 | 0 | / | 0 | 0 | 0 | / |
| 산씨 (陝西) | 2 | 0 | 2 | / | 6 | 0 | 6 | / |
| 간수 (甘肅) | 0 | 0 | 0 | / | 0 | 0 | 0 | / |
| 칭하이 (青海) | 1 | 0 | 1 | / | 3 | 0 | 3 | / |
| 닝샤 (寧夏) | 0 | 1 | -1 | -100.0% | 0 | 3 | -3 | -100.0% |
| 신장 (新疆) | 0 | 1 | -1 | -100.0% | 0 | 4 | -4 | -100.0% |
| 신장부대 (新疆兵團) | 0 | 0 | 0 | / | 0 | 0 | 0 | / |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건축시공의 ‘비교적 큰 사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소 감소하긴 하였지만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큰 사고건수는 산씨(山西)에서 2건,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광시(廣西), 윈난(雲南), 칭하이(青海)지역에서는 각각 1건씩 발생하였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비교적 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5년에 윈난(雲南)에서 8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제일 인명피해가 큰 지역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산씨(山西) 6명, 허베이(河北) 5명 순으로 사고결과가 나타났다. ‘비교적 큰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사망자 역시 전혀 없었다.

제 3 절 건축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1. 건축안전사고의 등급

2007년 6월1일부터 시행된 국무원의 <생산안전 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產安全事故報告和調查處理條例)>³⁵⁾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에 대한 보고, 조사, 처리 및 법률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안전사고에서의 사상자와 경제적 손실에 따라 사고의 등급을 나누고, 등급의 따른 조치에 대한 규정도 있다.

<생산안전 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 건축안전사고를 아래의 <표 19> 처럼 ①특별히 중대한 사고(特別重大事故), ②중대한 사고(重大事故), ③비교적 큰 사고(較重大事故), ④일반사고(一般事故) 등 네 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³⁶⁾ 여기서 ‘특별히 중대한 사고’는

35) 본 <조례>는 2007년 3월28일 국무원 제172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국무원령 제493호로 공포되었다.

36) 중국은 <생산안전 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產安全事故報告和調查處理條例)> 시행되기 전에는 안전사고를 사고의 크기에 따라 1급-4급의 중대사고로 구분했었다. 즉 ‘1급 중대사고(一級重大事故)’는 30명 이상 사망 또는 300만 위안(元)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있는 사고이고, ‘2급 중대사고(二級重大事故)’는 10명~29명 이하 사망 또는 100만~300만 위안(元)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있는 사고를 가리킨다.

30명 이상 사망 또는 100명 이상 중상 또는 1억 위안(元)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있는 사고이다. ‘중대한 사고’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사망 또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중상 또는 5000만 위안(元) 이상 1억 위안(元)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있는 사고이다.³⁷⁾ ‘비교적 큰사고’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망 혹은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중상 또는 1000만 위안(元) 이상 5000만 위안(元)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있는 사고이며, ‘일반사고’는 3명 이하의 사망 또는 10명 이하의 중상 또는 100만 위안(元) 이상 1000만 위안(元)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있는 사고를 가리킨다.

<표 19. 건축안전사고 유형>

| 사고 유형 | 인명 손실 | 경제적 손실 |
|----------------------|--------------------------------|------------------------------------|
| 특별히중대한사고 (特別重大事故) | 30명 이상 사망 100명 이상 중상 | 1억 위안(元)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손실 |
| 중대한 사고 (重大事故) | 10~30명 이하의 사망 50~100명이하의 중상 | 5000만~1억 위안(元)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손실 |
| 비교적 큰 사고 (較重大事故) | 3~10명 이하의 사망 10명~50명이하의 중상 | 1000만~5000만 위안(元)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손실 |
| 일반사고 (一般事故) | 3명 이하의 사망 10명 이하의 중상 | 100만~1000만 위안(元)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손실 |

‘3급 중대사고(三級重大事故)’는 3명~9명 미만 사망 또는 20명 이상 중상 또는 30만~100만 위안(元) 미만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있는 사고이며, ‘4급 중대사고(四級重大事故)’는 2명 이상 사망 또는 3명~10명 이하 중상 또는 10만~30만 위안(元) 미만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사고 분류는 2007년 9월18일 건설부령으로 폐지되었다.

37) 여기서 ‘이상’은 당해 수를 포함하나 ‘이하’는 당해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참조, <생산안전 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產安全事故報告和調查處理條例)> 제3조.

이상과 같은 건축관련 안전사고유형의 등급에 대하여 국무원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처는 필요한 경우 국무원의 관련부처와 회동(會同)하여 사고등급 구분에 관한 보충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2. 건축안전사고의 보고

먼저, 건축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사고보고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시공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축시공회사는 긴급조치를 취하여 사상과 사고피해를 줄이고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제때에 관련기관에 보고해야 한다.”³⁸⁾ 또한 시공기업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사고발생 1시간 이내에 현급(縣級) 이상의 건설주관부처에 보고를 해야 하고 동시에 관련 구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생산안전 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제2장의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에 대한 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현장의 관계자는 즉각 당해 단위(單位)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단위의 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사고발생지 현급(縣級) 이상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처와 안전생산 관리감독 직책이 있는 관련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황이 위급할 경우, 사고현장의 관계자는 직접 사고발생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처와 안전생산 관리감독 직책이 있는 관련부처에 보고해야 한다.”³⁹⁾ 이와같이 사고 발생 후 최소 1시간 이내에 사고현장의 관계자 또는 현장책임자가 직접 정부부처에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처와 안전생산 관리감독 직책이 있는 관련부처는 보고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상부에 사고상황을 보고하

38)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華人民共和國建築法)> 제51조.

39) <생산안전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產安全事故報告和調查處理條例)> 제9조.

여야 하며 공안기관, 노동보장행정부처, 공회와 인민검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⁴⁰⁾ 사고상황을 보고할 경우, 사고등급별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주관부처가 다르다. 즉, 특별히 중대한 사고와 중대한 사고는 순차적으로 국무원 안전생산관리감독 부처와 안전생산관리감독 직책이 있는 관련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교적 큰 사고’는 차례대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관리감독 부처와 안전생산 관리감독 직책이 있는 관련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사고에 대해서는 당해지역 시급(市級)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관리감독부처와 안전생산관리감독 직책이 있는 관련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⁴¹⁾ 본 <조례> 제11조에서는 상급기관에 사고 상황에 대하여 보고할 경우 2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建設工程質量管理條例)> 제52조에 의하면, 건설공사 중 품질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관련 단위(單位)는 24시간 이내에 당해지역 건설행정주관부처와 기타 관련 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한 품질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지역 건설행정주관부처와 기타 관련부처는 사고유형과 등급에 따라 당해지역 인민정부와 상급건설행정주관부처 및 기타 관련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⁴²⁾ 그리고 특별히 중대한 품질사고에 대한 조사절차는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건축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

<생산안전 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제3장은 사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었는데, 사고조사 조직의 결성 및 사고조사 관할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 60일 이내에 사고조사

40) <생산안전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產安全事故報告和調查處理條例)> 제10조.

41) <생산안전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產安全事故報告和調查處理條例)> 제10조.

42)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建設工程質量管理條例)> 제52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⁴³⁾ 사고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인민정부의 기준을 통하여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60일 연장 할 수 있다.

<생산안전 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제4장은 사고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고보고서를 받은 인민정부는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사고발생단위와 관계자들에 대하여 행정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⁴⁴⁾ 공사품질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처리절차는 먼저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방호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후에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사고의 주요원인을 밝혀야 한다. 또한, 처리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가 필요한 경우, 시공회사는 처리방안을 확정하여야 한다.⁴⁵⁾ 그 후에 사고처리 절차가 진행되며, 사고처리결과가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사고처리 결과에 대한 결론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관련부처에 처리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안전사고의 법률책임

<생산안전 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제5장은 ‘법률책임’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책임자들이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가령, 사고발생 단위의 책임자가 첫째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둘째, 사고에 대한 보고를 지연시켰거나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켰을 경우. 셋째, 사고조사 처리기간 내에 직무를 이탈하였을 경우에는 1년 연수입의 40-8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⁴⁶⁾

43) <생산안전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產安全事故報告和調查處理條例)> 제29조.

44) <생산안전 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產安全事故報告和調查處理條例)> 제32조.

45) <생산안전 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產安全事故報告和調查處理條例)> 제32조.

46) <생산안전 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產安全事故報告和調查處理條例)> 제35조.

또한 양벌주의를 취하여 단위 및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즉 ①허위보고 혹은 사고를 은닉하였을 경우. ②사고현장 고의 훼손하거나 인위적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③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 또는 관련 증거자료를 인멸하였을 경우. ④조사를 거부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을 경우. ⑤사고조사 단계에서 위증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하였을 경우. ⑥사고발생 후, 도주하였을 경우 등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단위에 대하여 100만 위안(元) 이상 500만 위안(元)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며, 책임자에 대하여 1년 연수입의 60-10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한다.⁴⁷⁾

단위(單位)에 대한 책임은 사고 유형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일반사고의 경우 10만 위안(元) 이상 20만 위안(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교적 큰 사고’일 경우는 20만 위안(元) 이상 50만 위안(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사고의 경우 50만 위안(元) 이상 200만 위안(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별히 중대한 사고의 경우에는 200만 위안(元) 이상 500만 위안(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⁴⁸⁾

이상과 같이 <생산안전 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고의 사상자와 경제적 손실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고, 사고에 대한 보고, 조사, 처리 및 법률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후 일련의 절차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7) <생산안전 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產安全事故報告和調查處理條例)> 제36조.

48) <생산안전 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產安全事故報告和調查處理條例)> 제37조.

제 3 장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

제 1 절 건축안전 법제의 연혁

중국의 건축안전 법률제도는 법률·법규와 제도가 결합된 형식으로 공적인 기관인 정부의 입법이 중심이 되고, 사적인 기관인 기업들이 제정한 기술표준이 강제적 표준이 되어 구속력을 갖는 제도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와 경제 등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률의 규제 대상이 변화되기 마련인데, 중국의 건축안전 법체계 역시 경제, 문화, 사회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규범내용이 변화하면서 형성되었다.⁴⁹⁾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중국의 건축안전 법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건축안전법제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華人民共和國建築法)>과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華人民共和國安全生產法)>의 제정 배경과 건축안전 법제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건축안전 법체계의 형성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건축안전은 국가의 중점적인 관심사항의 하나로써 국가 차원에서 중시되어왔다. 1953년 제1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중국은 경제건설 속도에 박차를 가하여 크고 작은 공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다. 건국초기부터 제1차 5개년 계획기간까지는 건축안전과 관련된 사망사고 건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1957년 1만 명 중의 사망률은 1.67%였으며, 매10만 제곱미터의 건축면적당 사망률은 0.43명이었다.⁵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49) 참조, 鞠傳靜, 中國建築安全管理法律體系研究, 重慶大學(碩士學位論文), 2010년 5월, 23쪽.

50) 鞠傳靜, 中國建築安全管理法律體系研究, 重慶大學(碩士學位論文), 2010년 5월, 16쪽 참조.

이전에는 건축안전 법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건국 이후부터 정부는 건축안전에 관한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무원은 1956년에 <공장안전위생규정(工廠安全衛生規程)>, <건축설치공사 안전기술규정(建築安裝工程安全技術規程)>, <근로자 및 직원 사상사고 보고규정(工人職員傷亡事故報告規程)> 등 ‘3대 규정(規程)’을 마련하였다. 이어서 <안전기술교육을 진일보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關於進一步加強安全技術教育的決定)>, <안전기술 안전생산조치 계획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된 통지(關於編制安全技術安全生產措施計劃的通知)>, <공업기업설계 잠행 위생표준(工業企業設計暫行衛生標準)> 등 일련의 법규와 규장(規章)을 반포하였다. 이 시기의 법규와 규장은 모두 건국초기 건축안전 실무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⁵¹⁾ 건축안전에 관한 법제를 초보적으로 형성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제2차 5개년 계획기간인 1958년부터 ‘대약진운동’⁵²⁾이 시작되었는데 각 분야별로 생산의 속도에 치중한 나머지 안전에 관한 조치와 인식은 악화되었다. 시공현장에서는 높은 생산성 기준과 빠른 생산속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조되었지만, 건축안전에 관한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인구 1만 명당 사망률은 5.12명에 달하기도 하였다.⁵³⁾ 1963년부터 3년간은 경제구조를 조정하던 시기였는데, 각 산업분야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들도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국무원은 <기업생산 중 안전작업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규정(關於加強企業生產中安全工作的幾項規定)>을 반포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아울러 안전기술조치, 안전교육 강화, 정기 안전

51) 鞠傳靜, 中國建築安全管理法律體系研究, 重慶大學(碩士學位論文), 2010년 5월, 18쪽 참조.

52)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은 1958년에서 1960년까지 중국 전역에서 전개된 군중운동으로서 공업과 농업 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을 추구하였다.

53) 鞠傳靜, 中國建築安全管理法律體系研究, 重慶大學(碩士學位論文), 2010년 5월, 17쪽 참조.

점검의 실시, 사고 사상자에 대한 조사와 처리방법 등에 관한 것도 규정하였다.⁵⁴⁾

이와 같이 건축안전에 관한 규범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사전 예방의 결과로 1965년에는 사망률이 인구 1만 명당 1.65명으로 감소하였다.⁵⁵⁾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⁵⁶⁾으로 국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안전에도 재앙적 수준의 붕괴가 일어났다. 이 동란(動亂)으로 건축안전에 관한 규장 및 제도들이 무너졌고,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정체되고 후퇴하였으며, 악성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인구 1만 명당 사망률이 무려 7.53명으로 증가하였다.⁵⁷⁾

건국초기부터 1979년 개혁개방까지 중국은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였다. 당시에는 건축업계에서도 정치적 색채가 매우 짙었기 때문에 건축안전 법제화의 발전 속도도 몹시 더뎠다. 이 시기 건축안전 법제의 형성은 대부분 정부가 추진하는 형태였다. 건축관련법은 입법계획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마련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법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는 법에 의해 해결하질 못했고, 대체로 정치적인 수단을 통하여 건축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었을 뿐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형태의 건축안전 법제는 그나마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54) 鞠傳靜, 中國建築安全管理法律體系研究, 重慶大學(碩士學位論文), 2010년 5월, 17쪽 참조.

55) 鞠傳靜, 中國建築安全管理法律體系研究, 重慶大學(碩士學位論文), 2010년 5월, 18쪽 참조.

56)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 중국의 최고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해 주도된 사회주의 운동이다. 계급투쟁이 강조되었는데, 실상은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권력투쟁이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을 퇴보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지게 하였다.

57) 참고, 尚春明·方東平, 中國建築職業安全健康理論與實踐,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7년, 28쪽 이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업계 내의 행위주체들은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법제도를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어서 창의적인 법체제의 확립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건국 후 3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중국 지도자들은 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는데, 건축안전 법제건설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1979년에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위원회, 노동총국(勞動總局)은 기존의 <기업생산 중 안전작업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규정(關於加強企業生產中安全工作的幾項規定)>과 같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규를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통지를 관련기관에 배포하기도 하였다.⁵⁸⁾ 이로써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건축을 관장하는 부처인 ‘도농건설 환경보호부(城鄉建設環境保護部)’는 건축 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건축업의 발전을 위하여 1984년부터 <건축법> 제정 작업을 착수하였다. 1997년 11월1일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는데, 이 법은 1998년 3월1일부터 시행되었다.⁵⁹⁾ <건축법>은 국민경제에서 중국 건축업이 주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틀이 되었다. 동시에 건축활동 과정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기초가 되기도 하였으며,⁶⁰⁾ 건축활동의 법제화를 추동하고 보완하는 동력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건축법> 제5장에 규정된 건축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관리 방침, 안전작업 직책과 역할분담, 안전교육 훈련, 그리고 안전사고 보고 등은 중국 건축안전 법제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58) 鞠傳靜, 中國建築安全管理法律體系研究, 重慶大學(碩士學位論文), 2010년 5월, 17쪽.

59) 鞠傳靜, 中國建築安全管理法律體系研究, 重慶大學(碩士學位論文), 2010년 5월, 17쪽.

60) 참조, 鞠傳靜, 中國建築安全管理法律體系研究, 重慶大學(碩士學位論文), 2010년 5월, 17쪽.

<건축법>이 신호탄이 되어 그 후 건축안전 관련법 혹은 관련법규가 마련되었는데, 2004년 1월13일부터 시행된 <안전생산 허가증 조례(安全生產許可證條例)>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건설공사 안전을 규범한 행정법규이다. 기업의 안전에 관련된 규범들을 명확하게 명시하였는데, <안전생산 허가증 조례>를 통하여 국가는 법적 수단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전제일, 예방위주(安全第一, 預防為主)’라는 건축안전의 기본방침을 확립할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⁶¹⁾ 2004년 2월1일부터 시행된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建設工程安全生產管理條例)>는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관리방식을 제시하였는 바, 건설업체·감리업체·조사 및 설계업체·시공업체 등 건설 활동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안전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건설시공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련된 기본제도를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구조와 조사처리 제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건설부는 2004년 7월5일 <건축시공기업 안전생산 허가증관리 규정(建築施工企業安全生產許可證管理規定)>을 반포하고 그 날부터 시행하였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중국 건설분야에서는 ‘안전허가증제도’를 구체화 시킬 수 있었다. 이밖에 <건축시공기업 주요책임자, 사업책임자, 정규직 안전생산관리자 안전생산심사 집행규정(建築施工企業主要負責人、項目負責人和專職安全生產管理人員安全生產考核暫行規定)>과 <건축시공 중대 품질 안전사고 응급구조 예안(建築工程重大質量安全事故應急救援預案)> 등 규장들이 있는데 모두 중국의 건축안전법제를 구성하고 있는 법규범이다.⁶²⁾ 또한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관련 지방정부 부처가 지방과 업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축안전과 관련해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 및 규장 역시 중국 건축안전 법제를 이루고 있는 법규범들이다.

61) 참조, 鞠傳靜, 中國建築安全管理法律體系研究, 重慶大學(碩士學位論文), 2010년 5월, 18쪽.

62) 참조, 鞠傳靜, 中國建築安全管理法律體系研究, 重慶大學(碩士學位論文), 2010년 5월, 18쪽.

2011년 11월1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華人民共和國安全生產法)>을 공포하였다. <안전생산법>은 중국의 안전에 관한 종합적 기본법으로서 안전관리와 감독이 법제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현시(顯示) 하였다. <안전생산법>은 생산경영단위(單位)의 안전보장조건, 관련업무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안전관리감독 방법, 그리고 사고의 응급구조와 조사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업도 빠르게 발전하였고, 국가는 법제도와 정책으로써 건축업계의 발전을 추동하면서 건축안전의 규범화, 법제화를 형성하고 있다.⁶³⁾ 이와 같이 중국은 <건축법>과 <안전생산법> 등 법률과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등 건축업 안전관리의 전문적 법규⁶⁴⁾ 그리고 각 급 지방정부와 건설부문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 제정한 법규, 규장 그리고 기술표준 등으로 건축안전 법제를 구축해나가고 있다.⁶⁵⁾

2. 건축안전 법제의 발전

중국의 건축안전 관련법은 부단히 진화하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축안전 법제는 다음과 같이 초보적인 형성단계, 후퇴 및 침체단계, 조정 및 회복단계, 발전단계, 보완단계 등 다섯 단계를 거쳐 발전해가고 있다.⁶⁶⁾

63) 참조, 鞠傳靜, 中國建築安全管理法律體系研究, 重慶大學(碩士學位論文), 2010년 5월, 18쪽.

64) 중국의 경우 ‘법률’에서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적 사항을 규정하고, 하위법인 ‘법규’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영국 건축법제에서는 ‘법률’에서 상당히 상세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참고, 김용훈, 영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종심의자료, 126쪽.

65) 참조, 鞠傳靜, 中國建築安全管理法律體系研究, 重慶大學(碩士學位論文), 2010년 5월, 18쪽.

66) 참조, 張強, 四論我國建築安全生產法規體系: (一) 我國建築安全生產法規體系的基本情況和發展沿革, 建築安全, 제8호, 2006년, 43쪽이하.

(1) 초보적인 형성단계(1949년-1957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는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직업병에 의한 피해도 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정무원(政務院) 재경위원회, 노동부는 순차적으로 <전국 공영(公營) 및 사영(私營) 공장과 광산근로자 사상보고 관법(全國公私營廠礦職工傷亡報告辦法)>, <공장위생 잠행조례(工廠衛生暫行條例)>, <아스팔트중독방지와 관련된 관법(關於防止瀝青中毒的辦法)>, <공장과 광산기업에서 안전기술 근로자보호조치 계획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된 통지(關於廠礦企業編制安全技術勞動保護措施計劃的通知)>, <직업병 범위와 직업병환자 처리관법(職業病範圍和職業病患者處理辦法)> 등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단행규정을 반포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과 관법을 통하여 건축근로자들의 생산활동과 노동조건을 개선하였다.

1956년 국무원은 <공장안전위생규정(工廠安全衛生規程)>, <건축안전공사 안전기술규정(建築安全工程安全技術規程)>, <근로자 및 직원 사상사고 보고규정(工人職工傷亡事故報告規程)>을 포함한 ‘3대 규정(規程)’을 반포하였다. 위의 규정들 중 특히 <건축안전공사 안전기술규정>은 건축시공 안전기술작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건축업 역시 이 시점부터 전통적인 수공업 노동에서 반 기계화와 기계화 노동의 단계로 넘어갔다. ‘3대 규정’은 중국 건축안전 법체계의 구축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轉機)가 되었다. 초보적인 형성 단계에서 반포된 일련의 규범들은 중국 건축안전 법체계의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2) 후퇴 및 침체단계(1958-1978)

1958년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이 시작된 이후, 노동자 보호와 안전 관련 법규들이 폐지되었고, 건설 활동 중 수시로 공사기한을 앞당기는 등 정상적인 생산질서가 무너졌으며, 각 분야의 안전 역시 후퇴되었다. 대약진운동이 종료된 이후, 1961년에서 1966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16개의 설계 및 시공기준과 규범이 제정되고 반포되었다.⁶⁷⁾ 1963년 국무원은 <기업생산 중 안전생산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關於加強企業生產中安全生產工作中的幾項規定)>을 반포하여 안전생산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가지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안전관리의 주요내용과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하였다. 이밖에 국가 유관기관에서는 <무더위 방지(防暑) 및 강온(降溫)조치 잠행관법(防暑避暑降溫措施暫行辦法)>, <기중기계 안전관리 규정(起重機械安全管理規程)>, <국영기업 근로자 개인 보호용품 지급 표준(國營企業職工個人防護用品發放標準)> 등과 같이 안전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들을 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범들을 통하여 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들이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어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 법제가 다시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건축안전 상황은 악화되었다. 1971년 시공 현장에서의 사망자 수는 2,999명이었으며, 중상자 수는 9,680명에 달하였다.⁶⁸⁾ 후퇴 및 침체단계에서는 중국의 모든 법제가 총체적으로 붕괴되었는데, 건축안전에 관한 법제(法制)도 예외는 아니어서 적지않은 정책과 제도가 폐지되었다. 한마디로 건축안전 법제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침체단계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다.

67) 张强, 四论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 (一) 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的基本情况和发展沿革, 建筑安全, 제8호, 2006년 45쪽 참조.

68) 张强, 四论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 (一) 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的基本情况和发展沿革建筑安全, 제8호, 2006년, 45쪽.

(3) 조정 및 회복단계(1979-1992)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의 막이 내리자, 건축안전에 관한 입법 작업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노동보호작업을 진지하게 잘 하는 것에 관련된 통지(關於认真做好劳动保护工作的通知)>를 하달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강조하였다.

그 당시의 국가건축공사총국(国家建筑工程总局)은 1980년 <건축설치 근로자 안전기술 조작규정(建筑安装工人安全技术操作规程)>을 반포하였고, 1981년에는 고층추락, 물체낙하, 감전 등 다발사고에 대하여 고공낙하 등 사고를 방지하는 10가지 안전기술조치를 반포하였다. 그 후 건설부가 개편된 후, <집체소유제 건축기업 안전생산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잠행규정(關於加强集体所有制建筑企业安全生产的暂行规定)>, <국영건축기업 안전생산조례(国营建筑企业安全生产条例)> 등 건축안전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과 조례가 반포되었다. 1990년대에 건설부는 <공사건설 중대사고보고와 조사절차 규정(工程建设重大事故报告和调查程序规定)>, <건축안전생산 관리감독 규정(建筑安全生产监督管理规定)>, <건설공사 시공현장 관리규정(建设工程施工现场管理规定)> 등 부문규장(部门规章) 및 수많은 기술표준규범을 마련하였다. 조정 및 회복단계에서는 건축안전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가 튼실하게 발전하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4) 발전단계(1993-2002)

중국공산당 제14차 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한다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는 다시 한 번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공사건설 강제성표준 실시 관리감독 규정(建设工程强制性标准监督管理规定)>, <건축업 기업자질 관리규정(建筑业企业资质管理规定)>, <건축공사 시공허가 관리관법(建

筑工程施工许可管理办法) > 등 건축안전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각종 규장(規章)이 연이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7년 11월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이 정식으로 반포됨으로써⁶⁹⁾ 건축 활동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건축법> 제5장은 건축안전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건축안전을 규범 짓는 가장 중요한 법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는 중국이 국제노동기구의 <건축업 안전위생조약[建筑业安全卫生公约](제167호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비준되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는 국제화 추세에 맞춰 발걸음을 함께 하게 되었다. 그 이듬해인 2002년 6월29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이 반포되어 중국의 안전에 관한 의식이 고취되고, 건축안전에 관한 시스템이 한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건축안전 사고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건축안전 기술표준에 관한 규범도 가속도가 붙어 <건축시공 안전검사표준(建筑施工安全检查标准)>등 중요한 표준들이 마련되었다. 지방정부의 건축안전 입법 역시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윈난(云南), 내이멍구(内蒙古), 산시(山西), 안휘(安徽), 허베이(河北), 산둥(山东), 후베이(湖北) 등 지역에서는 건축안전과 관련된 지방성 법규(地方性法規) 혹은 정부 규장들이 제정되었다.

69) 이 <건축법>은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제정되어 1998년 3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1년 4월22일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的决定)>에 의하여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徐蕾·斯晓慰, 对《建筑法》关于建筑工程质量管理办法的评析, 西安建筑科学大学学报, 2015년 4월, 16쪽 참조.

(5) 보완단계(2003-현재)

2003년 11월24일에는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가 반포되고 시행되었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규범화한 행정법규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감독에 관한 기본체도를 확립하는데, 법적 근거가 되었다. 또한 건설시공 분야에서 <건축법>과 <안전생산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련 법조문들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건축안전관리가 법제화, 규범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 건축안전 법제가 새롭게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조례>를 통하여 건축업에 종사하는 각 주체의 안전행위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였고, 정부의 건축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은 법에 의거하도록 하여 행정능력을 강화시키기도 하였다. 동시에 건축관련업 종사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1월7일에는 <안전생산 허가증조례(安全生产许可证条例)>가 반포되어 건축시공기업의 안전에 관한 행정허가제도가 확립되었다. 또한 중국 건설부는 <건축시공기업 안전생산 허가증관리규정(建筑施工企业安全生产许可证管理规定)>을 마련하였다. 이어서 국무원은 <안전생산작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关于进一步加强安全生产工作的决定)>을 반포하여 안전작업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⁷⁰⁾ 건축안전기술표준의 규범과 관련하여 <시공기업 안전생산 평가표준(施工企业安全生产评价标准)>, <건축철거공사 안전기술규범(建筑拆除工程安全技术规范)>, <건축시공현장 환경과 위생표준(建筑施工现场环境与卫生标准)>, <건축시공 임시전기사용 안전기술규범(建筑施工临时用电安全技术规范)> 등이 줄이어 반포되었다.

70)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안전생산작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관한 규정(关于进一步加强安全生产工作的决定)>, 2004년 1월9일,
http://www.gov.cn/xxgk/pub/govpublic/mrlm/200803/t20080328_32676.html

이상과 같은 건축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법규범들을 통하여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가 보다 더욱 정비되고 완비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건축법제의 구조 및 주요 내용

1. 건축안전 법체계

어느 나라이건 시대에 따라 그 시대상황에 맞는 법규범이 제정되고 시행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안전에 관한 수많은 법규범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건축안전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건축안전 법체계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된 건축안전과 관련된 법률, 국무원에서 제정한 건축안전과 관련된 행정법규, 국무원의 관련부처에서 제정한 건축안전과 관련된 규장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중국의 지방 성(省)급 인민대표대회도 입법권이 있으므로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건축안전과 관련된 ‘지방성 법규’,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제정한 건축안전과 관련된 지방정부 규장 역시 건축안전 법체계를 형성한다.⁷¹⁾ 이 밖에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의 관련부처에서 법으로 정한 건축안전의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비준한 건축안전과 관련된 국제조약도 건축안전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⁷²⁾

71) 중국의 건축안전에 관한 법체계는 이와 같은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외에도 관련 업계의 협회 등이 업체의 건축안전 활동을 규율하고 건축종사자의 신체적 안전 및 재산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법규, 규칙, 표준 등 일련의 법규범으로 이루어진다.

72) 참조, 张强, 四论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 : (一) 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的基本情况和发展沿革, 建筑安全, 제8호, 2006년, 42쪽. 이밖에 건축안전 법체계에는 많은 안전기술표준과 규범이 있어 광범위하게 건축생산활동 참여자의 행위를 인도(引導)하고 있다.

건축안전 법체계를 이루는 건축안전 관련 법률은 헌법을 입법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국가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된 법률인 <건축법>과 <안전생산법>은 헌법을 모법(母法)으로 해서 제정된 것이다. 또, <건축법>과 <안전생산법>을 모법(母法)으로 해서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와 <안전생산 허가증조례> 등 행정법규가 제정된 것이고, <건축안전생산 관리감독규정>, <건축시공기업 안전생산 허가증 관리규정> 등 부문규장은 행정법규를 모법으로 해서 제정된 것이다.⁷³⁾

건축안전 관련해서 법체계를 구성하는 각 단계별 입법 범위를 살펴 보면 <건축법>, <안전생산법> 같은 ‘법률’에서는 주로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사상, 목표, 기본적인 사항이나 요건 등을 규정한다. 국무원에서 제정하는 ‘행정법규’와 지방의 입법기관인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는 ‘지방성 법규’는 건축안전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법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구현해야 하므로 그 활용성이 높아야 한다. 중앙의 각 부처나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규장’은 법률 및 법규의 규정을 저촉하지 않는 전제 하에 제정되는데, 입법절차상 비교적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정리하자면, 중국의 건축안전 법체계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의 관련 법조문,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국가와 업계표준, 지방성법규, 지방정부 각 규장 및 기술표준 및 국제조약을 포함하고 있다.⁷⁴⁾ 여기서 기술표준과 관련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방법 및 안전사항에 대해서는 그 표준을 정하여야만 하며, ‘강제적 표준’으로써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⁷⁵⁾ 또한, 생산경영단위(单位)는 법적으로 제정된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혹은 업종표준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⁷⁶⁾

73) 참조, 张强, 四论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 (一) 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的基本情况和发展沿革, 建筑安全, 제8호, 2006년, 42쪽.

74) 张强, 四论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 (一) 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的基本情况和发展沿革, 建筑安全, 제8호, 2006년, 44쪽 참조.

75)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제2조.

이상과 같은 법규정은 안전의 기술표준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인데, 건축안전 법체계에는 이처럼 안전 기술표준과 그 규범도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시공에서 시공관리자는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 뿐만 아니라 관련 표준(標準)도 준수해야 하고, 동시에 법률, 법규, 표준의 각각의 지위와 상호관련을 이해하여야 한다. 중국의 건축안전 법체계를 아래와 같이 법단계 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건축법률(建築法律)

일반적으로 건축법률은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건축관리 활동을 폭넓게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事業單位)의 조직, 직능, 권리, 의무 등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에 관한 기본절차를 규정한 건축안전 법체계에서 최상위 규범으로서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건축법>, <안전생산법>⁷⁷⁾은 국가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주석령’으로 공포된다. 예컨대, <건축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91호’로 공포되었고, <안전생산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70호’로 공포되었다.

(2) 건축행정법규(建築行政法規)

건축행정법규는 건축안전 관련 법률인 <건축법>과 <안전생산법>의 조항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 한 것으로써 국무원은 관련 법률 중의 위임조항⁷⁸⁾에 의하여 제정된다. 이것은 건축안전 법체계에서 두 번째

76)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10조.

77) <건축법>에서는 제5장에서 건축안전 생산관리(제36조~제51조)를 두고, 건축안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생산법>에서는 안전보장제도, 건설업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안전의 관리감독, 안전사고의 응급구조와 조사처리, 법률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단계에 해당하며, 국무원령의 형식으로 공포된다. 예를 들면, 2003년 11월12일 국무원 제28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04년 2월1일부터 시행된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는 ‘국무원령 제393호’로 공포되었다. 이 <조례>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제1조) 그리고 2007년 6월1일부터 시행된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는 ‘국무원령 제493호’로 공포되었다. 이밖에 <안전생산 허가조례(安全生产许可条例)>도 건축행정법규에 해당되는데, 이처럼 ‘조례(条例)’라는 명칭이 붙으면 중국에서는 대부분 ‘행정법규’를 뜻한다.

(3) 건축부문규장(建築部門規章)

건축부문규장은 국무원의 각 부와 위원회가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건축행정규장을 마련하며, 그 중 종합적인 규장은 주로 건설부가 반포한다. 부문규장은 전국의 관련 행정관리부문에 구속력을 가지지만, 그 효력은 행정법규의 하위에 위치하며, 부와 위원회의 규장 형식으로 반포된다. 예를 들자면, 2000년 8월21일의 건설부령 제81호인 <공사실시의 강제성표준 감독규정(实施工程强制性标准监督规定)> 등이 있다.

(4) 지방성 건축법규(地方性建築法規)

지방성 건축법규는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당해 행정구역의 상황에 근거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된 행정법규이다. 단 지방성법규는 관할

78)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81조는 “본 법 중 시공허가, 건축시공회사 자격심사, 건축공사의 발주·도급·하청금지 및 건축공사 감리·건축공사 안전과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은 기타 전문건축공사의 건축활동에도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의 위임조항으로 볼 수 있다.

행정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와 법적 지위는 동일하지만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지방성 행정법규는 효력을 상실한다.

(5) 지방성 건축규장(地方性建築規章)

지방성 건축규장은 지방인민정부가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장이다. 관할 행정구역에서만 유효하고 그 법적 효력은 지방성법규의 하위에 있다. 또한 규장은 인민법원의 재판에는 필연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인민법원이 법적 판단을 할 경우, 규장을 참고할 수 있다.⁷⁹⁾ 지방성 건축규장의 예(例)를 들자면, 2001년 4월5일 베이징시 인민정부령 제72호로 시행된 <베이징시(北京) 건설공사 시공현장 관리관법(北京市建设工程施工现场管理办法)> 등과 같은 것이다.

(6) 국가표준(國家標準)

국가표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국무원의 표준화 행정주관부문이 제정하고 반포한다. 국가표준은 강제성 표준과 권장성 표준으로 나누어지는데, 강제성 표준의 기호는 ‘GB’이고, 권장성 표준은 ‘GB/T’이다.⁸⁰⁾ 국가표준의 표시는 국가표준의 기호, 국가표준반포 순서번호와 국가표준반포의 년도 번호로 구성된다. 국가공사 건설표준기호는 GB5XXXX-XX 또는 GB/T5 XXXX-XX이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 시공품질 검수통일표준(建筑工程施工质量验收统一标准)>의 경우, GB50300-2001로 표시한다.

79) 중국 <행정소송법(行政诉讼法)> 제53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할 경우 규장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0) <국가표준관리관법(国家标准管理办法)> 제4조.

(7) 업계표준[行業標準]

업계표준은 해당 업계범위에서 통일이 필요하고 국가표준의 기술적 요구가 없는 경우에 국무원의 관련 행정주관부문에서 제정하고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문에 등록한다. 업계표준은 국가표준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므로 상응하는 국가표준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된다.⁸¹⁾ 그 표준은 강제성 표준과 권장성 표준으로 나누어진다.⁸²⁾ 그리고 업계표준으로는 도시건설업표준(CJ), 건축자재표준(JC), 건축공업표준(JG)로 나누어진다. 현행 건설공사업계표준 기호는 부분업계표준 기호의 뒤에 세 번째 J를 첨가한다. 그러므로 업계표준의 표시는 표준기호, 표준순서 번호, 년도 번호로 구성되어 있어 업계표준순서 번호가 3000번 이전은 공사의 표준이고, 3001번 이후는 상품의 표준이다.⁸³⁾ 예를 들면 <보통콘크리트배합비설계규정(JGJ55-2000)>과 <냉강압연철근(JG3046-1998)> 등이다.

(8) 지방표준(地方標準)

지방표준은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이 없는 경우에 성·자치구·직할시 범위에서 통일된 상품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요구에 따라 성·자치구·직할시의 표준화 행정주관부문이 제정하고, 국무원 표준화행정주관부문에 등록한다. 지방표준은 관련 법률·법규와 국가업계 강제성표준에 위반될 수 없으며 상응하는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의 실시 후에는 지방표준은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지방표준 중 법률·법규에서 강제집행의 표준을 규정할 경우에만 강제성 지방표준이 있을 수 있다.⁸⁴⁾ 시멘트나

81) 张强, 四论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 (一) 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的基本情况和发展沿革, 建筑安全, 제8호, 2006년, 44쪽 참조.

82) <업계표준관리관법[行业标准管理办法]> 제3조.

83) 참조, <업계표준관리관법[行业标准管理办法]> 제3조.

84) 张强, 四论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 (一) 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的基本情况

레미콘 등의 경우 남쪽과 북쪽의 날씨와 기온의 차이 등으로 각 지방마다 표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방표준을 제정하고 등록하는 것이다.

2. 건축법제의 구조

중국의 건축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중앙정부의 부문규장 및 지방성법규, 지방정부의 규장 그리고 안전표준 규범은 아래 <표 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표 20. 중국 건축법제의 구조 및 관련법 목록>⁸⁵⁾

| 특성 | 명칭 및 반포시기 |
|----|--|
| 법률 | <환경보호법(環境保護法)> (1989년 12월 26일) |
| | <노동법(勞動法)> (1994년 7월 5일) |
| |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固體廢物污染環境防治法)> (1995년 10월 30일) |
| | <환경소음오염방지법(環境噪聲污染防治法)>(1996년 10월 29일) |
| | <건축법(建築法)> (1997년 11월 1일) |
| | <소방법(消防法)> (1998년 4월 29일) |
| 법률 | <직업병방지법(職業病防治法)> (2001년 10월 27일) |
| | <공회법(工會法)>(개정) (2001년 10월 27일) |
| | <안전법(安全生產法)> (2002년 6월 29일) |
| | <환경영향 평가법(環境影響評價法)> (2002년 10월 28일) |
| |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 (2007년 6월 29일) |

况和发展沿革, 建筑安全, 제8호, 2006년, 44쪽 참조.

85) 鞠傳靜, 中國建築安全管理法律體系研究, 重慶大學(碩士學位論文), 2010년 5월, 19쪽 이하.

| 특성 | | 명칭 및 반포시기 |
|----------|---------|--|
| 행정 법규 | | <폐질환 방지 조례(塵肺病防治條例)> (1987년 12월 3일) |
| | |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규정(女職工勞動保護規定)> (1998년 7월 21일) |
| | | <건설사업 환경보호 관리조례(建設項目環境保護管理條例)> (1998년 11월29일) |
| | | <특수설비안전 감찰 조례(特種設備安全監察條例)> (2003년 3월 11일 반포, 2009년 1월24일 개정) |
| | | <산업재해 보험 조례(工傷保險條例)> (2003년 4월27일) |
| | | <건축공사 안전 관리조례(建築工程安全生產管理條例)> (2003년 11월24일) |
| | | <안전 허가증 조례(安全生產許可證條例)> (2004년 1월 13일) |
| | | <노동보장 감찰 조례(勞動保障監察條例)> (2004년 10월 26일) |
| | | <안전 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2007년 3월 28일) |
| 부문 규장 | 건설 부 | <건설공사 실시 강제성표준 감독 규정 (實施工程建設強制性標準監督規定)> (2000년 8월 25일) |
| | | <건축공사 시공허가 관리방법 (建築工程建設強制性標準監督規定)> (2001년 7월 4일) |
| | | <건축시공기업 안전 허가증 관리규정 (建築施工企業安全生產許可證管理規定)> (2004년 7월 5일) |
| | | <도시 건축폐기물 관리규정(城市建築垃圾管理規定)> (2005년 3월 1일) |
| 부문 규장 | 건설 부 | <건축업 기업자질 관리규정(建築業企業資質管理規定)> (2006년 12월 30일) |
| | | <건축기중기계 안전감독 관리규정(建築起重機械安全監督管理規定)> (2008년 1월 8일) |

제 3 장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

| 특성 | | 명칭 및 반포시기 |
|----------|--------------------------------|--|
| 부문 규장 | 인력 자원 과 사회 보장 부 | <건설사업(공사) 노동안전 위생감찰규정(建设项目 (工程) 劳动安全卫生监察规定)>(1996년10월 17일) |
| | | <건설사업(공사) 노동안전 위생 예비평가 관리방법(建设项目 (工程) 劳动安全卫生预评价管理办法)> (1998년 2월 5일) |
| | | <건설사업(공사) 노동안전 위생 예비평가 단위자격 인증과 관리규칙(建设项目 (工程) 劳动安全卫生预评价单位资格认可与管理规则)> (1998년 2월5일) |
| | | <산업재해 인증방법(工伤认定办法)> (2003년 9월23일) |
| | |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부양 친족범위 규정(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2003년 9월23일) |
| | | <불법 근로자 채용단위 사상자 1회성 배상 방법(非法用工单位伤亡人员一次性赔偿办法)> (2003년 9월 23일) 등 |
| | 국가 안전 관리 감독 총국 | <노동보호용품 관리감독 규정(劳动防护用品监督管理规定)> (2005년 7월 22일) |
| | | <생산경영단위 안전훈련 규정(生产经营单位安全培训规定)> (2006년 1월 17일) |
| | |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벌금처벌 잠행규정 (<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罚款处罚暂行规定)> (2007년 7월 12일) 등 |
| | 위생 부 | <직업병 피해항목 신청보고 관리방법(职业病危害项目申报管理办法)> (2002년 3월 15일) |
| | | <직업병 진단과 판정 관리방법(职业病诊断与鉴定管理办法)> (2002년 3월 15일) |

| 특성 | | 명칭 및 반포시기 |
|------------------------------|--|---|
| 부문 규장 | 위생 부 | <직업건강 감독보호 관리방법(职业病健康监护管理办法)> (2002년 3월 15일) |
| | | <직업병 피해사고 조사처리 방법(职业病危害事故调查处理办法)> (2002년 3월 15일) |
| | | <건설사업 직업병 피해 분류 관리방법(建设项目职业病危害分类管理办法)> (2006년 6월 15일) |
| | 환경 보호 부 | <건설사업 환경보호 관리절차(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程序)> (1990년 6월) |
| | | <건설사업 준공 환경보호 검수 관리방법(建设项目竣工环境保护验收管理办法)> (2001년 12월 11일) |
| | |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문건 등급별 심사 비준 규정(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分级审批规定)> (2002년 7월 19일) |
| | |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문건 자질 관리방법(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资质管理办法)> (2005년 7월 21일) 등 |
| 지방성 법규 및 규장 | <상하이시(上海市)건설공사 시공안전 감찰 관리방법(上海市建设工程施工安全监督管理办法)> (1996년 8월 16일) | |
| | <내이명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건설시공 안전관리 조례(内蒙古自治区建筑施工安全管理条例)> (1997년 5월 31일) | |
| | <윈난성(云南省)건축시공현장 관리규정(云南省建筑施工现场管理规定)> (1999년 6월 17일) | |
| | <산시성(山西省)건축공사 품질과 건축안전생산 관리조례(山西省建筑工程质量和建筑安全生产管理条例)> (1999년 11월 30일) | |
| | <안휘성(安徽省)건축안전생산 관리방법(安徽省建筑安全生产管理办法)> (2000년 9월20일) | |
| | <베이징시(北京市)건설공사 시공현장 관리방법(北京市建设工程施工现场管理办法)> (2001년 4월5일) | |

제 3 장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

| 특성 | 명칭 및 반포시기 | |
|----------------------|--|---|
| 지방성 법규 및 규장 | <텐진시(天津市)건설공사 시공안전 관리규정(天津市建设工程施工安全管理规定)> (2001년 11월30일) | |
| | <허베이성(河北省) 건설공사 안전생산감독 관리규정(河北省建设工程安全生产监督管理规定)> (2002년 1월5일) | |
| | <산둥성(山东省)건축안전생산 관리규정(山东省建筑安全生产管理规定)> (2002년 1월7일) | |
| | <후베이성(湖北省)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방법(湖北省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办法)> (2002년 4월8일) | |
| | <헤이룽장성(黑龙江省)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방법(黑龙江省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办法)> (2005년 3월 28일) 등 | |
| 안전 표준 규범 | 종합 | <건축설치공사 안전기술 규장(建筑安装工程安全技术规程)> |
| | | <건축설치 근로자 안전기술 조작 규장(建筑安装工人安全技术操作规程)> |
| | | <특수작업 근로자 안전기술 심사 관리규칙(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考核管理规则)> GB5306-85 |
| | | <액압(液压)이동식 형판 시공안전 기술규정(液压滑动模板施工安全技术规程)> JGJ65-89 |
| | | <폭발 파괴 안전규정(爆破安全规程)> GB6722-2003 |
| | | <건축기반지지 기술규정(建筑基坑支护技术规程)> JGJ120-99 |
| | | <건축시공 안전검사 표준(建筑施工安全检查标准)> JGJ59-99 |
| | | <시공기업 안전생산 평가표준(施工企业安全生产评价标准)> JGJ/T77-2003 |
| | | <건축시공현장 환경과 위생 표준(建筑施工现场环境与卫生标准)> JGJ146-2004 |
| | | <건축철거공사 안전기술 규범(建筑拆除工程安全技术规范)> JGJ147-2004 등 |

| 특성 | 명칭 및 반포시기 |
|---------------------|---|
| 전력 사용 시공 | <안전전압(安全电压)> GB3805-83 |
| | <잔여전류 동작보호기에 대한 일반적 요구(剩餘电流动作保护器的一般要求)> GB6829-1995 |
| | <시공현장 임시 전기사용 안전기술 규범(施工现场临时用电安全技术规范)> JGJ46-2005 |
| | <누전보호기 설치와 운영(漏电保护器安装和运行)> GB1395-92 |
| | <이동식 전동도구의 관리·사용·검사와 유지보수 안전기술 규정(手持式电动工具的管理、使用、检查和维修安全技术规程)> GB3787-93 등 |
| 안전 표준 규범 | <고지작업등급(高处作业分级)> GB/T3608-93 |
| | <건축시공 고층작업 안전기술 규범(建筑施工高处作业安全技术规范)> JGJ80-91 |
| | <고지작업 사다리차 안전규칙(高处作业吊篮安全规则)> JGJ5027-1992 |
| | <고지작업 사다리차(高处作业吊兰)> JG/T 5032-1993 등 |
| 비계 (scaffolding) | <건축시공 문식(門式) 철근비계 안전기술 규범(建筑施工门式钢管脚手架安全技术规范)> JGJ128-2000 |
| | <건축시공 걸이식(扣件式) 철근비계 안전기술 규범(建筑施工扣件式钢管脚手架安全技术规范)> JGJ130-2001 등 |
| 수직 운송 기계 | <건축기계 기술시험 규정(建筑机械技术试验规程)> JGJ34-86 |
| | <건축기계사용 안전기술 규정(建筑机械使用安全技术规程)> JGJ33-2001 |
| | <타워형 기중기 안전규정(塔式起重机安全规程)> GB5144-2006 |
| | <기중기계 안전규정(起重机械安全规程)> GB6067-85 |
| | <기중기계 지휘신호(起重吊运指挥信号)> GB5082-85 |
| | <기중기계 중량초과 보호장비 안전기술 규범(起重机械超载保护装置安全技术规范)> GB12602-90 |

| 특성 | | 명칭 및 반포시기 |
|----------------|----------------|---|
| 안전 표준 규범 | 수직 운송 기계 | <타워형 기중기 조작사용 규정(塔式起重机操作使用规程)> JG/T100-99 |
| | | <건축 권양기(卷扬机) 안전규정(建筑卷扬机安全规程)> GB13329-91 |
| | | <골조기둥 및 정형(井架)기둥 거중기 안전기술 규범 (龙门架及井架物料提升机安全技术规范)> JGJ88-92 |
| | | <시공 승강기(施工升降机)> GB/T10052-96 |
| | | <시공 승강기 안전규칙(施工升降机安全规则)> GB10055-2007 등 |
| | 안전 보호 | <안전모(安全帽)> GB2811-2007 |
| | | <안전모 시험방법(安全帽试验方法)> GB2812-2006 |
| | | <안전벨트(安全带)> GB6095-85 |
| | | <안전벨트 검수방법(安全带检验方法)> GB6096-85 |
| | | <안전망(安全网)> GB5725-97 |
| | | <안전망 역학성능 시험방법(安全网力学性能试验方法)> GB5726-85 등 |

위의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건축법제의 구조는 법률, 법규, 규장 및 표준 등으로 이루어졌다.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와 각 성급 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는 ‘지방성법규’가 있다. 지방성법규 역시 행정법규와 법의 성질을 같이 하고, 행정법규와 동급이지만 법적 효력은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가 상위에 있다.

국가 입법기관 혹은 국무원에서 법률 혹은 법규를 제정하면 지방정부는 각 지방에 실정에 맞는 법규 혹은 규장을 제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법규 및 규장들이 쏟아지게 되어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은 매우 복잡해지는 느낌을 갖기 쉽다. 따라서 그 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우선 그 법의 입법기관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3. 건축법제의 주요내용

(1)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건축안전에 대해서 <건축법>⁸⁶⁾에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활동은 반드시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가의 건축공사 안전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⁸⁷⁾ 또한 건축공사설계는 반드시 국가규정에 따라 제정된 건축안전규정과 기술규범에 부합하도록 하여 공사의 안전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⁸⁸⁾ 건축시공업체는 시공계획 제정 시 건축공사의 특징에 의거하여 이에 상응하는 안전기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공사의 경우 안전시공계획에 대한 전문항목을 제정하고 안전기술조치를 취하여야한다.⁸⁹⁾

건축안전 사고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할 만한 것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건설단위(建設單位)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비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⁹⁰⁾ ①계획에서 비준한 범위 이외의 토지를 임시로 점용할 경우 ②도로, 파이프, 전력, 우편전자통신 등 공공시설에 대한 파괴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③수도공급, 전기공급, 도로교통 등을 일시 중단시켜야 할 경우 ④폭파작업을 진행하여야할 경우 ⑤법률과 법규에서 심사비준 절차를 요구하는 기타 경우 등이 있다.

86)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은 1997년 11월1일 개최된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회의에서 통과되어 주석령 제46호로 선포되었고, 1998년 3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모두 8장 8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2011년 4월 22일 부분개정되어 같은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87)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3조.

88)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37조.

89)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38조.

90)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42조.

건축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단위(建設單位)와 시공업체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따라서 “건설단위는 건축시공업체에 시공현장의 지하 파이프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건축시공업체는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⁹¹⁾ 건물 주요구조와 하중구조의 변동과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회사는 착공 전에 설계업체 또는 상응한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업체에 설계도의 작성을 의뢰하여야 하며, 설계도가 없을 경우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⁹²⁾고 규정함으로써 건설업체가 건축할 때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안전에 있어서 시공업체 역시 취하여야 하는 조치들이 있다. 예컨대, “건축시공업체는 시공현장에서 안전유지, 위험방지, 화재방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건이 될 경우 시공현장에 대하여 붕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현장의 옆 건물, 구조물 및 특수한 작업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회사는 이에 대한 안전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⁹³⁾ 아울러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즉, “건축시공업체는 환경보호와 안전과 관련된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현장의 각종 먼지, 폐기물, 폐수, 고체폐기물, 소음, 진동 등이 환경에 대한 오염과 피해를 통제함과 동시에 처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⁹⁴⁾

또한 건축시공업체는 반드시 법에 따라 건축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 책임제도를 실시하며 효과적인 조치로 사상(死傷) 및 기타 안전생산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안전에 관한 것은 당해 건축시공업체의 법정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⁹⁵⁾ 아무튼 시공현장의 안전은 건설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시공 총도급의 경

91)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40조.

92)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49조.

93)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39조.

94)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41조.

95)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44조.

우에는 총도급업체가 책임을 지되 하도급업체는 총도급업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⁹⁶⁾

건축안전 사고는 결국 건축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건축법> 제46조에 의하면, 건축시공업체는 노동안전생산 교육훈련제도를 수립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만약 안전생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작업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건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건축안전 의식을 고양(高揚)함으로써⁹⁷⁾ 건축안전 사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겠다.

건축안전에 있어서 국가 행정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서 건축안전에 대한 관리는 건설행정 주무기관이 담당하며, 이들 기관은 법 규정에 따라 노동행정주무기관의 건축안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⁹⁸⁾ 시공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축시공업체는 긴급 조치를 취하여 사상(死傷)과 사고피해를 줄이고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제때에 관련 주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⁹⁹⁾ 건축공사 탐사, 설계, 시공의 품질은 반드시 국가 건축공사안전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는데,¹⁰⁰⁾ 건축공사안전표준에 부합여부 또한 관련 주무기관에서 해야 한다.

96)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45조.

97) 건축안전 교육훈련을 할 때, 안전규칙 및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작업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이라든지 안전에 필요한 물품을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교육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47조는 “건축시공업체와 작업인원은 시공과정에서의 안전생산 관련 법률과 법규, 건축업 안전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에 위배되는 지휘와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작업인원은 신체건강에 영향을 주는 작업조건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안전생산에 필요한 방호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 작업인원은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에 피해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지적, 적발, 기소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8)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43조.

99)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51조.

100)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51조.

(2)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구성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생산 경영단위(单位)의 안전보장, 제3장 업무종사자의 안전 권리와 의무, 제4장 안전의 관리감독, 제5장 생산안전사고의 응급구조와 조사처리, 제6장 법률책임, 제7장 부칙 등 총7장 11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⁰¹⁾ 중국 <안전법>은 건축업무에 종사하는 단위(单位), 건축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 규정을 함과 동시에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등 건축안전 및 안전 전반에 걸쳐 규범하고 있다.

건축시공업체에 대하여서는, 안전관리기구 또는 전문직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주관부처의 안전지식과 관리능력에 관한 심사에 합격한 자를 시공업체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고용하여야 한다.¹⁰²⁾ 또한,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규모가 비교적 작은 공사는 긴급구조 조직을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무관하나 긴급구조활동을 실시할 담당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긴급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장비와 물품들을 구비하고, 관리와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것¹⁰³⁾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경영단위의 종업원은 시공현장과 작업현장의 위험요인,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및 긴급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할 권리가 있으며,¹⁰⁴⁾ 안전작업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고, 문제에 대하여 고발하거

101) 본 법은 안전생산 업무를 강화하고, 생산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감소시키며, 인민군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도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제정되었는데(제1조), 2002년 6월29일 개최된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2년 1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2009년 8월 27일 1차 개정되었고, 2014년 8월31일 2차 개정되어 2014년 1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02)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22조.

103)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79조.

104)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50조.

나 비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¹⁰⁵⁾ 그런가 하면, 규정에 위반되는 작업에 대한 지시와 명령을 거절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을 중단할 권리도 있다.¹⁰⁶⁾ 생산경영단위의 종업원은 안전관련 규장과 제도를 준수하고 안전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고위험 또는 안전하지 않은 요소들을 발견하였을 경우, 현장의 안전관리자 또는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¹⁰⁷⁾ 그리고 종업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는데,¹⁰⁸⁾ 이와 같이 종업원들에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평가, 검증, 검사, 검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국가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당해 업체에서 발급한 안전에 대한 평가, 검증, 검사, 검수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¹⁰⁹⁾ <안전생산법>은 안전감독과 관리를 하는 부처에 대하여 각 행정구역 내 안전작업의 실시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과 관리업무를 수행할 것과 법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사비준 또는 검수작업 진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¹¹⁰⁾

이밖에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규정과 절차에 입각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제때에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고 및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들이 있으며,¹¹¹⁾ 사고 발생

105)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51조.

106)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52조.

107)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55조.

108)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53조.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회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형태의 재해에 대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바 이 중에는 건설현장에서의 사용자측 및 근로자측 쌍방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보험상품도 보유하고 있다. 김영진, 미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종심의자료, 23쪽.

109)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60조.

110)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62조에 의하면, 생산경영업체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국가표준 및 업계표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독과 관리도 담당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들과 협조하여 조사작업도 해야 한다.

111) 본 법은 제5장에 ‘생산안전사고의 응급구조와 조사처리(生产安全事故的应急救援

후 사회에 공고해야 하고 아울러 업종주관부처, 투자주관부처, 국토자원주관부처, 증권관리감독기관 및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절 건축안전 관련사항 분석

1. 건축안전 관련 법규

위에서 언급한 <중국 건축안전관리 법체계 및 관련법 목록>과 같이 중국의 건축안전과 관련된 법규에는 <안전생산허가조례(安全生产许可条例)>, <건설공사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건축안전생산감독 관리규정(建筑安全生产监督管理规定)>, <생산안전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건축기중기계 안전감독 관리규정(建筑起重机械安全监督管理规定)>, <건축시공기업 안전생산허가증 관리규정(建筑施工企业安全生产许可证管理规定)>, <건축시공기업 안전생산 허가증 동태감시관리 잠행관법(建筑施工企业安全生产许可证动态监管暂行办法)> 등이 있는데,¹¹²⁾ 모두 건축안전과 관련된 행정법규이다.

상위법(上位法)인 <건축법>은 “건축공사의 안전생산관리는 반드시 안전제일과 예방위주의 방침을 견지하여야 하며, 안전생산 책임제도와 모두가 함께 방지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¹¹³⁾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생산법>은 “안전생산관리는 안전제일과 예방위주라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¹¹⁴⁾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건축안전에 있어서 ‘안전제일, 예방위주’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안전 활

与调查处理)’에 관한 조문(條文) 11개를 두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하고 있다.

112) 참조, 刘蒙林, 论建筑安全监督执法弱电, 建筑安全, 12호, 2014년, 66쪽.

113)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36조.

114)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제3조.

동에 관한 지도원칙이며¹¹⁵⁾ 중국의 건축안전에 있어서의 기본방침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건축안전에 관련된 위와 같은 행정법규들은 이러한 지도원칙과 기본방침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건축안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건축 주체에 대한 규정

건설공사는 특정한 건설사업에서 시공자가 일정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건축자재, 기계설비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일정한 생산활동이며, 각 단계별로 많은 인적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사업의 안전은 각 관련주체의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공 환경, 건축자재, 기계설비 등의 상태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공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과 각종 자재 및 설비의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건축 과정 중에서 인적요인과 물적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는 모두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¹¹⁶⁾ 상황에 적절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시공현장만 보더라도 건설업주, 원도급자, 하도급자, 감리사, 기타 중개상담기관 등 건축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가 상당히 많다. 게다가 관리를 해야 할 부분 역시 많고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건축안전에 대한 관리는 일관된 방침아래 각 주체가 서로 협조하여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건축 활동과 관련된 정부부처 즉 국무원, 각급 인민정부, 안전관리

115) 孙景仙, 建筑安全犯罪: 以犯罪学为视角, 黑龙江省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1호, 2012년, 38쪽.

116) 鞠传静, 中国建筑安全管理法律体系研究, 重庆大学(硕士学位论文), 2010년 5월, 23쪽 참조.

감독부처, 건설행정주관부처 등과 건축업계, 시공업체, 조사 및 설계 업체, 감리업체, 건설협회, 기타조직, 정부공무원,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 근로자 등의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부부처

1) 국무원 및 현급(縣級)이상 지방 인민정부

국무원 및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부처의 안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조하고, ‘안전’과 관련된 법률 및 법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홍보해야하며, 관련부서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¹¹⁷⁾ 정부는 또한 응급구조 거점을 지정하고 응급구조팀을 설치하며, 생산경영 단위와 기타 사회조직에도 응급구조팀을 두도록 장려하고, 그에 따르는 장비와 물자를 지원해야 한다.¹¹⁸⁾ 안전관리감독 관련 부서는 사고보고가 접수되면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아울러 공안기관, 노동보장 행정부문, 노동조합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¹¹⁹⁾ 사고의 크기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상급기관이 다른데, ‘특별히 중대한 사고’인 경우 국무원의 안전관리감독부처에 보고해야 하고, ‘비교적 큰 사고’는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안전관리감독 부서에 하며, ‘일반사고’는 해당지역의 시급(市級) 인민정부 안전관리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히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무원의 <특별히 큰 안전사고 행정책임 추궁에 대한 규정(關於特大安全事故行政責任追究的規定)>을 마련해서¹²⁰⁾ 지방인민정부의 지도자와 정부의

117)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華人民共和國安全生產法)> 제59조.

118)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華人民共和國安全生產法)> 제76조.

119) 참조, <안전생산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產安全事故報告和調查處理條例)> 제10조.

120) 국무원의 <특별히 큰 안전사고 행정책임 추궁에 대한 규정(關於特大安全事故行政責任追究的規定)>은 2001년 4월21일 국무원령 제302호로 반포되고, 그날부터 시행되었다. 본 규정은 특별히 큰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특별히 큰 안전사고의 행정책임을 추궁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모두 24개 조문으로 이루어졌다.

안전관련부서 책임자가 ‘특별히 큰 사고’¹²¹⁾에 대한 예방, 조치 등이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직무유기 등 범죄를 구성할 경우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안전관리감독부처

<안전생산 허가증 조례>에서는 건축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시공 기업이 안전 허가증을 취득한 이후에 건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¹²²⁾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은 ‘안전관리감독부처’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관리감독부처는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에 관한 법률과 안전에 관한 지식을 홍보해서 사회의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한다.¹²³⁾

또한 안전관리감독부처는 <안전생산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가 안전작업을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¹²⁴⁾

3) 건설행정 주관부처

국무원의 건설행정 주관부처는 중국 전역의 건축 활동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와 감독을 한다.¹²⁵⁾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건설업체가 시공허가증을 신청하였을 경우, 심사를 거친 후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121) 여기서 ‘특별히 큰 사고(特大大事故)’는 ①특별히 큰 화재사고(特大大火灾事故) ②특별히 큰 교통안전사고(特大大交通安全事故) ③특별히 큰 건축품질안전사고(特大大建筑质量安全事故) ④민용폭발물품과 화학위험품의 특별히 큰 안전사고(民用爆炸物品和化学危险品特大大安全事故) ⑤탄광과 기타 광산의 특별히 큰 안전사고(煤矿和其他矿山特大大安全事故) ⑥보일러 압력용기, 압력파이프와 특수설비의 특별히 큰 안전사고(锅炉、压力容器、压力管道和特种设备特大大安全事故) 등을 가리킨다. 참조, 국무원의 <특별히 큰 안전사고 행정책임 추궁에 대한 규정(关于特大大安全事故行政责任追究的规定)> 제2조.

122) <안전생산 허가증 조례(安全生产许可证条例)> 제3조.

123) <안전생산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제11조.

124)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조.

125)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6조.

하며,¹²⁶⁾ 건축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노동행정 주관부처의 건축안전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¹²⁷⁾

건설행정 주관부처는 <건축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시공허가증 없이 착공하거나 또는 착공보고서 전에 함부로 착공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착공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공정지를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¹²⁸⁾ 현급(縣級)이상 인민정부의 건설, 위생, 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하는 부처는 각 부처의 직권범위 내에서 각 업체의 안전에 관한 노동계약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¹²⁹⁾

성(省)·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건설행정 주관부처는 건축시공기업의 안전과 관련된 허가증의 발급과 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며,¹³⁰⁾ 허가증과 관련된 문서의 보관과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취득 현황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¹³¹⁾ 건축시공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기관은 매년 동급 안전생산 관리감독부처에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과 관리현황을 통보하고,¹³²⁾ 국무원의 안전생산관리감독 부처 및 성(省)·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건설행정 주관부처는 건축시공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취득현황을 감독하여야 한다.¹³³⁾

건설행정 주관부처는 안전 조건이 법률·법규·규장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비준을 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비

126) 참조, <안전생산 허가증조례(安全生产许可证条例)> 제7조.

127)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43조.

128)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64조.

129) 참조,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 제76조.

130) <안전생산 허가증 조례(安全生产许可证条例)> 제4조.

131) <안전생산 허가증 조례(安全生产许可证条例)> 제10조.

132) <안전생산 허가증 조례(安全生产许可证条例)> 제11조.

133) <안전생산 허가증 조례(安全生产许可证条例)> 제12조.

준을 한 경우는 비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당하게 비준을 해준 담당자는 행정처벌에 처할 수 있다.¹³⁴⁾

건설행정 주관부처는 시공허가를 할 때에 안전시공 조치가 있는지 심사를 해야 한다.¹³⁵⁾ 또한 건설업체에서 신청한 시공 허가증과 철거공사에 대한 자료를 동급 안전감독 부처에 이송하여야 하며,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과 조사 업무를 건설공사 안전감독 기구에 위임하여야 한다.¹³⁶⁾ 그리고 건설공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안전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조사와 신고 및 고발을 접수하여야 한다.¹³⁷⁾

(2) 업계, 기업 및 기타조직

1) 건설업체

건설업체는 건축시공업체에게 시공현장의 지하 도관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고,¹³⁸⁾ 또한 시공업체에게 시공현장과 그 주변 지역의 관련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자료들을 모두 제공하여야 한다.¹³⁹⁾ 조사 및 설계업체, 시공업체 그리고 감리업체에게 대하여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안전 법률과 법규, 국가표준 및 업계표준 등을 위배하는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안되며, 계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임의로 단축시킬 것을 요구해서도 안된다.¹⁴⁰⁾

134) 국무원의 <특별히 큰 안전사고 행정책임 추궁에 대한 규정(關於特大安全事故行政责任追究的规定)> 제11조.

135)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42조.

136)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41조.

137)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46조.

138)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40조.

139) 참고,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6조.

140)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7조.

예산을 편성할 때도 안전한 작업환경과 안전한 시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을 책정하여야 하며,¹⁴¹⁾ 안전시공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 보호도구·기계설비·시공도구·소방설비 등을 구매하게 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을 하도록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¹⁴²⁾ 건설업체는 시공 허가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때, 안전시공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¹⁴³⁾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규정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업체에 발주하여야 하는데,¹⁴⁴⁾ 철거작업 15일 전에 관련 자료¹⁴⁵⁾를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서에 등록[備案]하고 철거해야 한다.

2) 시공업체

중국은 2007년 11월1일부터 <긴급사고 대응법(突发事件应对法)>을 시행하고 있다.¹⁴⁶⁾ 이 법에 의하면, 건축시공업체는 구체적인 ‘긴급사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고, 위험물이 있는 건축물과 구조물 및 그 주변의 위험요소들을 점검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긴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한다.¹⁴⁷⁾

시공업체는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안전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안전조건에는 13가지 사항이 있다.¹⁴⁸⁾

141)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8조.

142)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9조.

143)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0조.

144)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1조.

145) 관련자료는 시공업체 자격등급증명서, 건축철거에 관한 설명서, 철거시공방안, 폐기물 조치방안 등 이다.

146) 이 법은 긴급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긴급사고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사회 피해를 통제하고 줄이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서, 2007년 8월30일에 개최된 제11기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모두 7장 7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129) <긴급사고 대응법(突发事件应对法)> 제23조.

148) <안전생산 허가증 조례> 제6조는 기업이 안전 허가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안전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안전 책임제도를 수립하고, 안전규장제도와 조작규정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안전에 대한 투자는 안전의 요구

안전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사고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예방 및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관리감독 부처와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련부서 그리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감독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¹⁴⁹⁾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는 시공업체의 안전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건축시장의 진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가 신축, 확충, 재건축 그리고 철거 등의 건축 활동에 종사할 경우, 국가(國家)가 규정한 안전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자격 등급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실시하여야 한다.¹⁵⁰⁾

둘째, 안전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해서 시공업체는 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정할 때 안전한 작업환경과 시공현장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며, 안전에 관련된 비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¹⁵¹⁾

셋째, 안전관리의 조직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공업체는 안전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직의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¹⁵²⁾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정규직 안전 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주요 책임자와 안전 관리자는 심사에 통과한 자여야 한다. ⑤특수작업 종사자는 관련주관부처의 심사에 통과한 후, 특수작업조작과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⑥모든 업무 종사자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업무 종사자들을 위하여 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⑧공장, 작업공간 안전시설, 기계설비, 공법 등은 모두 안전법률, 법규, 표준과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⑨직업병 피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갖추어야 하고, 업무 종사자들에게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에 부합하는 방호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하여야 한다. ⑪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⑫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긴급구조인원과 긴급구조 용품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⑬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149) <안전생산 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제33조.

150)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0조.

151)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1조.

152)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3조.

넷째, 시공현장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와 도급자의 안전 책임을 명시하였고,¹⁵³⁾ 아울러 시공방안에 대한 관리와 안전경고문에 대한 책임,¹⁵⁴⁾ 그리고 현장 평면도와 소방안전관리 등 조치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¹⁵⁵⁾

다섯째, 주변 환경과 관련된 안전 조치로서는, 주변 건축물의 지하도관 등에 대해 전문적인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시공현장의 환경오염을 줄여야 한다.¹⁵⁶⁾

여섯째, 근무자들에게 안전 보호 장구와 복장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규정과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하였을 경우의 피해에 대해서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¹⁵⁷⁾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¹⁵⁸⁾

일곱째, 시공현장의 기계에 대한 관리 규정으로 기계설비, 도구 등은 시공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 및 유지보수 작업을 해야 한다. 기중기계와 비계(飛階)¹⁵⁹⁾, 그리고 크레인 등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검수작업을 거쳐야 한다.¹⁶⁰⁾

여덟째, 안전사고 긴급구조에 대한 조치로 시공업체는 시공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긴급구조예방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긴급 구조 활동에 사용되는 도구와 장비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안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¹⁶¹⁾

아홉째, 사고와 조사처리에 대한 규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상자(死傷者) 보고 및 조사처리는 관련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상

153)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4조.

154)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8조 1항.

155)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31조.

156)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8조 2항.

157)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32조 1항.

158)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38조.

159) 비계(飛階)는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을 가리킨다.

160)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35조 1항.

161)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48조.

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¹⁶²⁾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피해가 더욱 커지지 않도록 하고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¹⁶³⁾

3) 조사 및 설계업체

조사 및 설계업체가 건축공사를 설계할 경우 국가에서 제정한 건축 안전규정과 기술규범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사의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¹⁶⁴⁾ 그리고 건설공사의 안전시설 설계자 또는 설계업체는 안전시설의 설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¹⁶⁵⁾

조사업체는 진실되고 정확하며 안전에 관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조사문서를 제공하여야 하고,¹⁶⁶⁾ 설계업체는 법률과 법규, 그리고 건설공사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¹⁶⁷⁾ 그리고 설계 문서에 시공안전과 연관이 있는 중점부분 및 주요 단계를 명확하게 표시를 하여야 한다.¹⁶⁸⁾ 또한,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재료, 새로운 공법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나 특수한 구조를 가진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업체는 설계과정 중에 시공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¹⁶⁹⁾ 그 밖에 설계업체와 등록건축사 등 등록된 설계자들은 본인들의 설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¹⁷⁰⁾

4) 감리업체

감리업체는 설계 중의 안전기술 조치 또는 시공방안이 건설공사 강제적 표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여야 하고,¹⁷¹⁾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

162)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50조.

163)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51조.

164)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56조.

165)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23조.

166)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2조.

167)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3조 1항.

168)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3조 2항.

169)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3조 3항.

170)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3조 4항.

171)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4조 1항.

가 발견될 경우,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정하거나 시공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¹⁷²⁾ 감리업체와 감리사는 법률과 법규 그리고 건설공사 강제적 표준의 규정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건설공사 안전의 감리책임을 져야 한다.¹⁷³⁾ 그러나 감리업체의 안전책임에 대한 규정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¹⁷⁴⁾

5) 노동조합

노동조합 역시 안전작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을 조직해서 안전관리, 안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생산경영업체의 위법행위 및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⁷⁵⁾ 생산경영업체가 규정을 위반하는 지시를 내리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작업을 강행할 경우 또는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진행시키는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수 있으며,¹⁷⁶⁾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¹⁷⁷⁾ 이에 근거하여 <안전생산 사고보고와 조사처리 조례(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제6조는 사고조사 및 처리 작업에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부처에 처리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건축안전협회

중국에서 가리키는 업계의 ‘협회’는 동일한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과 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취

172)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4조 2항.

173)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4조 3항.

174) 鞠传静, 中国建筑安全管理法律体系研究, 重庆大学(硕士学位论文), 2015년5월, 33쪽.

175)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7조.

176)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57조 2항.

177)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57조 3항.

시킴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영리성 사회단체법인을 가리킨다. 업계협회에 대한 관리법규 중 가장 중요한 규정은 국무원이 1998년 반포한 <사단등기 관리조례(社团登记管理条例)>인데, 사회단체의 관할 및 등록에 대한 규정과 등록주관부처 및 업무주관부서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민간조직 관리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통지(关于进一步加强民间组织管理规定的通知)>(中发办1994[34]호)¹⁷⁸⁾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서 반포한 <업계협회 규범관리와 발전작업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통지(关于加强行业协会规范管理和培育发展工作的通知)>(国经贸产业2002[278]호)가 있다. 이러한 <통지>에는 각각 민간조직에 대한 관리를 더욱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관련부처는 적극적으로 업계협회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¹⁷⁹⁾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건축안전협회가 안전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권리 및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법률 혹은 법규 중에 마련하고 있지 않다.

7) 기타조직

기타조직에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중개업체, 검수기관 및 안전문제를 다루는 언론기관 등이 있다. 중개업체가 만일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허위증명을 발급한 경우, 관련부처는 관련자격증 및 관련자들의 자격

178) 이 <통지>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판공청이 공동으로 1999년 11월1일에 마련한 정책성 문건이다.

179) 이러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건축안전에 관해 중국 민간단체의 참여는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영국 건축법제의 경우는 민간참여자의 적극적인 관여를 허용하고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소규모 혹은 중형 기업(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이 상호 간 관련 지식을 공유하려는 관행(ad hoc knowledge capture practices)이 있고, 민간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관련지식의 공유와 활용을 통하여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보장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 김용훈, 영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종심의자료, 132쪽.

을 법에 의해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범죄가 구성될 경우는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¹⁸⁰⁾

검사 및 검수기관은 기중기계와 비계(飛階) 및 크레인 등 설비를 검사 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안전합격’ 증명문서를 발급하되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¹⁸¹⁾ 그리고 “신문, 출판사, 방송, 영화 등과 관련된 업체는 안전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안전과 관련된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여론으로 감독할 권리가 있다.”¹⁸²⁾ 이처럼 안전과 관련된 조직이나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 활동에 할 수 있도록 규범하고 있다.

(3) 개 인

1) 정부 관련부처의 공무원

자격등급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업체에게 관련부처 공무원이 일정한 등급의 자격증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상급기관은 자격증 회수를 명령하고 직접책임을 있는 책임자와 그 업무주관자에게 행정처벌에 처하고, 만약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과해야 한다.¹⁸³⁾ 건축공사 시공허가증을 발급하는 부처 및 담당공무원이 시공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공사에 대해 시공허가증을 발급하거나, 공사 품질 감독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담당하는 부처 및 그 담당자가 불합격인 건축공사에 품질합격허가증을 발급하면 상급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책임자를 행정처벌에 처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¹⁸⁴⁾ 이 때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허가증 발급 부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80) <안전생산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제40조.

181)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9조.

182)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74조.

183)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77조.

184)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79조

안전에 관한 감독과 관리책임이 있는 부처의 담당자가 안전에 대해 규정에 어긋나는 비준 또는 검사를 하였을 경우, 강등 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을 묻는다.¹⁸⁵⁾ 안전 허가증 발급 및 관리 기관의 담당자는 안전허가증의 발급 및 관리와 감독 업무수행 중에 기업의 재물을 취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¹⁸⁶⁾ 지방인민정부의 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가 사고구조팀을 즉각 조직하지 않거나, 혹은 보고지연·누락보고 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 관련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여야 한다.¹⁸⁷⁾ 그밖에 거짓보고를 하거나, 사고조사를 간섭 혹은 방해하거나, 사고조사 중 위증 등을 해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

지방 인민정부의 고위직 지도자와 정부 관련 부처의 정직(正職)책임자, 그리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자 등이 특별히 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거나, 사고처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 정황이 있을 경우 처벌하여야 하며, 행정심사 및 비준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또는 기관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하여야 한다.¹⁸⁸⁾

현급(縣級) 이상의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처 또는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처의 담당자가 안전생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시공업체에게 자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라든지 안전시공 조치가 없는 건설공사에게 시공공사 허가를 해 준 경우 등은 담당책임자를 강등 혹은 직위해제 시켜야 하며 심지어 범죄구성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¹⁸⁹⁾ 만약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든지, 관리감독을 이행하지 않은 기타 행위 역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

185)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87조.

186) <안전생산 허가증 조례(安全生产许可证条例)> 제15조.

187) 참조, <안전생산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제39조.

188) 참조, <특별히 큰 안전사고 행정책임 추궁에 대한 규정(關於特大安全事故行政责任追究的规定)> 제14조.

189)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53조.

2) 기업 안전관리 책임자

기업의 주요책임자는 안전생산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¹⁹⁰⁾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만약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¹⁹¹⁾ 또한, <안전생산법>에 의하면,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현장의 관계자는 즉시 기업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¹⁹²⁾ 이에 근거하여 <안전생산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있는 관계자는 즉시 기업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전책임관리자는 보고받은 후 1시간 이내에 사고발생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¹⁹³⁾ 만약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있는 관계자가 직접 현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¹⁹⁴⁾ 사고발생 기업의 안전책임자는 사고보고를 받은 후, 즉시 긴급대처를 마련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상자(死傷者)의 발생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⁹⁵⁾ 시공업체의 주요 책임자는 당해 업체의 안전 관련 작업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시공업체는 안전책임제도 안전교육훈련제도를 마련해야 한다.¹⁹⁶⁾

사업관리의 책임이 있는 기술근로자는 안전시공 기술에 관한 요구 사항을 시공작업반 및 시공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상세하게

190)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5조.

191)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20조 1항.

192)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80조 1항.

193) <안전생산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제9조1항.

194) <안전생산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제9조2항.

195) <안전생산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제14조.

196) 또한 안전생산에 관련한 규장제도를 마련해서 안전생산에 필요한 자금이 투입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1조 1항.

설명함과 아울러 쌍방 모두 확인 서명을 하여야 한다.¹⁹⁷⁾ 시공업체의 사업책임자는 건설공사 안전시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안전생산 책임제도 및 안전생산규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생산 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시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¹⁹⁸⁾

건축시공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고 작업하라고 명령하거나 지휘하거나해서 중대한 사상(死傷)사고 혹은 기타 심각한 결과가 초래하였을 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¹⁹⁹⁾

3) 근로자

특수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작업 교육을 이수하고, 특수작업자격증을 취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²⁰⁰⁾ 또한 근로자는 안전시공과 관련된 강제성표준과 규장 및 제도 그리고 작동규정들을 준수하여 안전방호 도구 및 기계 설비 등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²⁰¹⁾

이상과 같이 중국의 건축안전관리 법률과 법규에는 건축 활동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관련 규범을 두고 있는데, 건축안전은 이들 모든 주체가 참여하고 협조함으로써 사고없는 안전한 건축활동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197)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7조.

198)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1조 2항.

199)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71조 2항.

200)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5조.

201)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33조. 시공업체가 구매하거나 임대한 안전방호 도구와 기계설비, 시공기구 및 부품 등에는 응당 생산 허가증이나 제조허가증 또는 제품합격증을 갖춰야 하며, 시공현장에 반입되기 전에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중국의 건축안전 주요 정책

제 1 절 단계별 안전관리정책

건축물의 건축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계획단계, 투자단계, 조사 및 설계단계, 입찰단계, 자격심사단계, 시공 단계, 준공 및 검수단계, 사용 및 유지보수 단계, 재건축 또는 철거단계 등이 있다. 건축안전사고의 발생은 위의 어느 한 단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공현장에서의 관리는 물론이요, 각 단계별 상황에 맞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중국의 건축안전 법률과 법규는 건축활동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범하고 있는지, 건축과정에서의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조사 및 설계단계

건축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설계업체도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오늘날에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운영과정과 리모델링 단계에서 철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속에서 사용자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²⁰²⁾ 시공단계, 운영 및 사용단계 그리고 철거 또는 재건축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사실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²⁰³⁾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안전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

202) 참고, 张仕廉·潘承仕, 安全管理对建筑工程项目管理的意义, 建筑经济, 2003년 12월, 43쪽 이하.

203) 참고, 鞠传静, 中国建筑安全管理法律体系研究, 重庆大学(硕士学位论文), 2015년 5월, 41쪽.

해서 조치를 취한다면, 그 후 각 단계에서의 안전대책은 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안전생산법(安全生产法)> 제30조는 건설사업 안전시설의 설계자와 설계업체는 안전시설의 설계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었고,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56조는 설계업체 또는 설계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건축법(建筑法)>은 설계과정 중 설계업체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고,²⁰⁴⁾ 시공과정 중 설계업체의 책임에 대한 규정은 같은 법 제73조에 규정하고 있다.

조사업체가 제공하는 조사문서는 진실되고 정확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고²⁰⁵⁾ 설계업체는 설계상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여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²⁰⁶⁾ 이와 같이 조사단계, 설계단계에서 보다 건축안전에 중점을 둔다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설계업체는 시공안전과 관련해서 설계문서에 시공안전의 중점단계 및 생산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구상과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²⁰⁷⁾ 새로운 구조, 새로운 재료, 새로운 방법 및 특수한 구조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과정 중에 작업자들의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책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²⁰⁸⁾ 건설업체가 공사예산을 편성할 때, 안전한 작업환경과 안전한 시공조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사전에 책정하여야 하며,²⁰⁹⁾ 조사 및 설계업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²¹⁰⁾ 여기서 법적인 책임은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을 가리킨다.

204)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56조.

205)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2조.

206)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3조 1항.

207)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3조 2항.

208)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3조 3항.

209)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8조.

210)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56조.

2. 시공단계

(1) 시공 준비단계

시공 준비단계의 기본적인 임무는 반드시 필요한 시공환경을 조성하고 시공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계약체결 전의 심사, 계약체결, 그리고 계약체결 후의 착공준비 등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심사, 입찰(시공, 건축자재, 기계설비, 감리업체 등), 계약체결, 설계도면 확정, 시공 평면도 심사, 시공 조직도 심사, 착공 전 준비(현장검사, 건축자재검사, 설비검수) 등이 준비단계에 해당된다.²¹¹⁾ 시공 준비단계는 건축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단계에서의 작업이 시공단계에서의 안전을 결정짓기 때문에 중국의 건축안전관리 법규범은 시공 준비단계에서의 건축 활동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편이다.

시공기업이 시공조직설계를 작성할 때 안전기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안전시공조직설계를 작성하여야 하며,²¹²⁾ 건설업체는 시공업체에게 시공현장 및 그 주변 지역의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여야 한다.²¹³⁾ 건설공사를 위하여 기계설비나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안전시공의 요구에 따라 부품이 완전하고 유효한 보험과 안전조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²¹⁴⁾ 임대한 기

211) 참고, 鞠传静, 中国建筑安全管理法律体系研究, 重庆大学(硕士学位论文), 2015년 5월, 42쪽.

212)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38조.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사제도가 197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건축구조의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것에 전문기술자인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이 거의 배제되기도 하였다. 참조, 최문식, 건축물 구조안전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국토일보 2009년 3월16일자.

213) 이 경우,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 그리고 완전성이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체가 시공허가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때는 건설공사의 안전시공과 관련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6조.

214)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5조.

계설비와 시공 도구 등은 생산 및 제조 허가증, 제품 등록필증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시 검수합격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²¹⁵⁾ 건설공사 중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역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시공 준비단계에서 감리업체와 검수기관의 안전조치 활동도 주목을 해야 한다. 감리업체는 시공조직설계 중의 안전기술 조치 또는 전문적인 시공 방안이 건설공사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²¹⁶⁾ 검수기관에서는 검수가 통과된 기중기계와 크레인, 비계(飛階) 등 설비에 대하여 안전합격증명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수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²¹⁷⁾ 건축안전 관련법규범의 시공 준비단계의 규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시공 준비작업에 대한 규정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2) 시공단계

시공단계부터는 안전관리의 실현단계라 볼 수 있다. 설계업체가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고예방조치를 제시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입찰단계에서 건설업주가 안전한 도급업체를 선택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건축생산 활동 중에서 도급업자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처리하여 시공현장에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과정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²¹⁸⁾ 실제적으로 시공 현장에서 건축안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도급업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중국 <건축법> 제45조는 건축시공기업의 법정대표자가 당해 기업의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공현장에서의 안전은 건축시

215)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設工程安全生產管理條例)> 제16조.

216)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設工程安全生產管理條例)> 제14조.

217)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設工程安全生產管理條例)> 제19조.

218) 참고, 鞠传静, 中国建筑安全管理法律体系研究, 重庆大学(硕士学位论文), 2015년 5월, 42쪽.

공 기업이 책임을 지는데, 원도급자가 있을 경우 원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리과정 중에서 감리업체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정황이 심각하다면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건설업체에 보고하여야 한다.²¹⁹⁾ 그리고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 21조에 의하면, 시공업체의 주요 책임자는 시공업체의 안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처럼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의 주요 책임자의 안전에 관한 핵심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겠다.

(3) 준공 및 검수단계

공사의 준공은 건축생산 활동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 과정 중 환경오염도 최소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건강 역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기 이전에 건설업체는 직업병 피해 억제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준공검사를 할 때는 위생행정부처가 실시하는 직업병 방지시설에 대한 검수에 합격한 후 비로소 정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²²⁰⁾ 하고 있다.

3. 유지·보수단계 및 철거·재건축 단계

건축이 완공되어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건축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유지·보수단계라 할 수 있다. 유지·보수단계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주로 건축물의 안전과 내구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관리가 주를 이룬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42조는

219)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1조.

220)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제18조 2항.

“건축물이 합리적인 사용연한을 지난 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규정에 부합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조사 및 설계 업체에 검증을 받아야 하며, 검증결과에 따라 수리 및 보수 등 조치를 취하여 사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이 사용 연한을 다하면,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다. 이를 철거·재건축단계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재건축은 시공 및 건축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축의 재생산 행위이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도시화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 옛 건축물 철거 장면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철거되는 곳에 대부분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선다. 철거 대상 건축물은 대체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요인이 곳곳에 있다. 더욱이 원래의 건설업체로부터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나 시공도면을 전달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어서 시공업체가 철거시공방안을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험요소도 많이 존재한다.²²¹⁾

<건축법>은 주로 건축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철거에 관한 규정은 별로 없다. 다만, “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안전조건을 보장할 능력을 갖춘 건축시공업체가 담당하여야 하며, 건축시공업체의 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²²²⁾고 간단하게 규정할 뿐이다. 철거에 관한 법규로는 <도시주택 철거관리조례(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가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건축물을 철거하는 업체는 ‘건축물 철거허가증’을 취득하여야만 철거활동을 할 수 있는데,²²³⁾ 철거업체가 건축물철거허가증을 받고 난 후 철거에 필요한 관련서류²²⁴⁾를 건축물 소재지의 시(市) 또는 현(縣)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철거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

221) 참조, 尚春明·方东平, 中国建筑职业安全健康理论与实践, 中国建筑工业出版社, 2007년, 28쪽.

222)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50조.

223) <도시 주택 철거 관리조례(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 제7조.

224) 제출해야 할 서류는 ①건설사업 비준 문서 ②건설용지 계획 허가증 ③국가소유 토지사용권 비준서 ④철거계획 및 철거방안 ⑤공사대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의 철거 보상금 예치증명서 등 다섯 가지 이다.

건설업체는 철거공사를 규정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업체에 발주하여야 하며,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위험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폭발공사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전문적인 시공방안을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²²⁵⁾ 이밖에 시공업체는 안전철거 방안을 마련해서 시공업체의 기술책임자, 총감리사의 확인을 거쳐야²²⁶⁾ 철거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 때 작업 현장에는 전문적인 안전관리자가 있어서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활동을 전개할 때, 관련 법률과 법규에 각 단계별 건축안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설계단계와 철거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족한 편이다. 중국의 건축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는 더 정비되고 보완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제 2 절 건축안전 관련정책

1. 건축안전 주요정책 개요

중국 건축안전 법체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내용들로 구축되고 있는 편이다. 건축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안전에 관한 일련의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국이 건축안전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체제, 정부의 건설안전 생산 감독과 관리제도, 건축활동 각 책임주체의 안전책임제도, 건축활동 근로자들의 안전 권리와 의무제도, 건축안전 책임추궁제도 등이 있다.²²⁷⁾

225)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1조.

226)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6조.

227) 张强, 四论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 (一) 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的基本情况和发展沿革, 建筑安全, 제8호, 2006년, 43쪽 참조.

(1) 건설공사 안전 관리체제

안전관리감독 관련 부처는 국무원 및 각급 지방정부에 편제되어 있다. 이들 부처 및 부서는 각 행정구역 내에서 건설공사 안전작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한다.²²⁸⁾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내의 안전 상황에 근거해서 정부내 유관부서에 안전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고, 연도별로 안전에 관한 감독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검사와 감독을 한다.²²⁹⁾ 만약 사고가 잠재되어 있으면 제 때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정부의 건설안전 감독과 관리제도

정부의 건설안전과 관련된 감독 및 관리제도는 건축시공기업의 안전허가증 제도,²³⁰⁾ 건축시공기업 주요책임자와 사업책임자 그리고 전문직 안전 관리자의 안전심사제도,²³¹⁾ 시공허가, 안전시공조치에 대한 심사제도, 안전시공 조치에 대한 등록제도, 특수작업자들의 자격증소지제도,²³²⁾ 위험이 있는 시공방법에 대한 안전제도,²³³⁾ 기계설비 및 건축자재에 대한 도태제도,²³⁴⁾ 생산사고 긴급구조 제도, 건설공사 안전 조사처리 제도 등이 있다.²³⁵⁾

228) 참고,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9조.

229) 참고,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59조.

230) 참조, <안전생산 허가증조례(安全生产许可证条例)> 제4조.

231)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3조.

232)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27조.

233)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6조.

234)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45조.

235)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48조.

(3) 건축 활동 각 책임주체의 안전책임제도

건축 활동에 참여하는 각 책임주체의 안전책임제도는 건설업체가 공사의 예산을 책정할 때 안전한 작업환경과 안전시공조치에 대한 비용을 확정하여야 하고,²³⁶⁾ 조사업체·설계업체·감리업체·시공업체가 국가의 법률과 법규 그리고 강제성 표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할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²³⁷⁾ 감리업체는 법률과 법규 그리고 건설공사 강제성 표준에 의거하여 감리작업을 수행하고,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감리책임을 져야 한다.²³⁸⁾

시공업체는 안전에 대한 조치와 시공안전보장에 투입되는 비용을 남용해서는 안되고,²³⁹⁾ 안전 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²⁴⁰⁾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함²⁴¹⁾과 동시에 위험성이 큰 공사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사와 분석, 그리고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²⁴²⁾

(4) 건축활동 종사자들의 안전 권리와 의무제도

건축활동 종사자는 안전에 관련하여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고,²⁴³⁾ 안전방호 용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²⁴⁴⁾ 위험작업에 대한 거절권과 긴급상황에 대한 작업거절권 등이 있다.²⁴⁵⁾ 안전에 대한 의무를 보면 건축

236)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8조.

237)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7조.

238)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14조.

239)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2조.

240)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3조 1항.

241)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37항.

242)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6조.

243)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48조.

244)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32조 1항.

245)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32조 2항.

활동 종사자는 안전시공에 대한 강제성 표준과 규장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방호용품과 기계설비 등을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고 조작하여야 한다.²⁴⁶⁾

(5) 건축안전책임 추궁제도

건축안전에 관한 위법행위의 책임주체는 건설업체, 조사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 공사감리업체 및 기타 관련 업체들은 모두가 책임주체가 될 수 있다.²⁴⁷⁾ 또한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직접책임자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처 또는 기타 관련 행정주관부처의 관련자, 등록된 업무종사자, 시공업체의 주요 책임자, 사업책임자, 근로자 등도 책임주체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건축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건축안전 활동에 있어서 위법행위가 있으면 마땅히 행정책임, 민사책임, 형사책임 등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건축안전에 관한 행정주체는 건설행정 주관부처 또는 기타 관련부처이다.

2. 시공업체의 건축안전

(1) 사업경리[項目經理]

중국의 경리(經理)는 우리 말로 사장이라는 뜻이 있으나 사업경리[項目經理]는 우리말로 사업책임자, 프로젝트매니저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경리는 건축시공 중 안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중국 건설부는 2014년 8월25일, <건축시공 사업경리 품질안전 책임에 관한 10가지 규정(시행)(建筑施工现场项目经理质量安全责任十项规定(试行))>을 반포하였다. 이 <규정(시행)>을 통하여 건축시공 사업경리의 안전책임

246)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33조.

247)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57조.

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시공 사업경리 품질안전 책임에 관한 10가지 규정(시행)>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⁴⁸⁾

첫째, 건축시공 사업경리(이하 ‘사업경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자격과 안전 심사에 합격하였다는 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명시한 사업책임자는 반드시 자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공사사업의 사업경리를 맡아서는 안된다.

둘째, 사업경리는 시공사업 품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품질안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전문직 품질관리인원과 시공현장 안전을 관리하는 인원 등에 대한 고용의 책임을 지며, 품질안전 책임제도와 품질안전관리규장제도 등을 시행해야 한다.

셋째, 사업경리는 반드시 공사설계도와 기술표준에 의거하여 공사를 하고, 건축자재를 임의로 조금만 사용하는 등의 부실공사 행위를 범해서는 안되며, 시공설계와 품질안전 기술조치 등의 작성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공사에 대한 시공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품질안전 기술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넷째,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건축자재, 부품, 기계설비, 콘크리트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사용이 불가할 경우,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구조안전과 관련해서 샘플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해야 하며, 검사보고서를 위조하거나 변형해서는 안된다. 검증기관에 허위 보고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해서도 안된다.

다섯 째, 사업경리는 반드시 은폐된 부분에 대한 검수작업을 해야 한다. 건축물의 기초공사 및 구조에 대한 공사 등에 대하여 준공 후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후 검사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48) 건설부, <건축시공 사업경리 품질안전 책임에 관한 10가지 규정(시행)(建筑施工项目经理质量安全责任十项规定)(试行), 2014년 8월25일.

여섯 째, 사업경리는 반드시 기중기계의 설치와 철거, 타워크레인의 설치 등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시공을 할 경우, 현장에서 당직을 서야 한다. 기중기계 및 타워크레인 등을 사용하기 전에 검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할 경우 사용하지는 안된다. 기중기계 사용에 대한 일일점검을 하여야 하며, 안전보호장치가 무효한 기중기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일곱 째, 사업경리는 안전 관련 비용을 안전방호와 안전조치에 충분히 사용하여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된다. 현장의 작업자는 안전방호용품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고, 국가에서 도태시키거나 사용을 금지시킨, 시공품질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공법, 설비,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여덟 째, 사업경리는 정기적으로 품질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점검하여야 하며, 위협요소가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 건설부 주관부처와 건설공사 관련 업체가 제시한 안전위험요소 시정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보고서에 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아홉 째, 사업경리는 시공현장의 작업자들에게 시공시작 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작업자들이 취득한 자격증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품질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시공작업에 참여할 수 없다.

열 째, 사업경리는 규정에 따라 품질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긴급구조팀을 즉시 구성하고, 사고현장을 보호함과 동시에 구조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건축시공업체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사업경리의 직무이행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직무유기가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경리로 교체할 수도 있다.

(2) 특수작업원[特種作業人員]

특수작업원이란 건설시공 현장에서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써 주로 전기작업, 금속용접작업, 고층작업, 특수차량운행, 기중기계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를 가리킨다. <특수작업원 안전기술 심사 관리규칙(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考核管理规则)>(GB5308-85)에 특수작업원에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특수작업원이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²⁴⁹⁾

1) 기본요건

만 18세 이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특수작업을 함에 있어 질병이나 생리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과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동시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²⁵⁰⁾

2) 실무경험 및 자격사항

새롭게 고용된 특수작업원은 당해 업무를 연속적으로 1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조작기술을 터득한 후 업체에 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²⁵¹⁾ 또 일종의 자격사항으로는 일정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거친 후, <특수작업증서>를 취득하기 전에는 단독으로 특수작업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²⁵²⁾

3) 시공업체의 책임과 자격증 유효기간

시공업체의 안전부서는 특수작업원들에 대한 훈련과 심사작업 등을 담당하여야 하며, 특수작업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49)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 <특수작업원 안전기술심사관리규칙(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考核管理规则)>, 2010년 5월24일.

250) <특수작업원 안전기술심사관리규칙(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考核管理规则)> 제4조.

251) <특수작업인원 안전기술심사관리규칙(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考核管理规则)> 제9조.

252) <특수작업인원 안전기술심사관리규칙(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考核管理规则)> 제10조.

또한, 연초에 특수작업원들에 대한 교육계획과 심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²⁵³⁾

특수작업원의 자격증 유효기간은 6년이며, 유효기간이 만기가 된 후 재심사에 참가하지 않은 특수작업자의 <특수작업증서>는 폐기되는데, 당해 특수작업원은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²⁵⁴⁾

4) 처벌

특수작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을 한 후 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1개월에서 1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할 경우 관련부처에 신고하여 자격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업체는 관련 부처에 그 특수작업원에게 경제적 처벌 또는 행정처분에 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도 추궁하여야 한다.²⁵⁵⁾

3. 건축시공의 안전관리

(1) 시공업체의 안전관리

중국 국무원은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를 제정하여²⁵⁶⁾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규범을 마련하였다.

본 <조례> 제20조에서 제38조에는 시공업체의 안전책임에 관한 것을 주로 규정하였는데, 시공현장의 안전관리방법 및 세부적인 조치와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53) <특수작업인원 안전기술심사관리규칙(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考核管理规则)>제11조.

254) <특수작업인원 안전기술심사관리규칙(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考核管理规则)>제19조.

255) <특수작업인원 안전기술심사관리규칙(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考核管理规则)> 제40조.

256)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는 국무원이 2003년 11월 24일 제정하여 국무원령 제393호로 반포하였고,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총칙, 건설업체의 안전책임, 조사·설계·감리 및 기타 관련업체의 안전책임, 시공업체의 안전책임, 감독과 관리, 안전사고의 긴급구조와 조사처리, 법률책임, 부칙 등 총8장 71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시공업체의 책임에 관해서 “시공업체의 주요 책임자는 법적으로 당해 업체의 안전 작업을 모두 책임져야 하며, 안전책임제도와 안전 교육훈련제도를 수립하고, 안전규장제도와 조작규정 등 관련규정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또한 안전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투자를 보장하여야 하며, 진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안전검사기록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²⁵⁷⁾ 또한 시공업체는 안전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전문직 안전 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며,²⁵⁸⁾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 직무를 수행해야한다.

이밖에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및 각 구역별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시공업체는 시공현장의 사무공간과 생활구역 그리고 작업공간을 모두 분리함과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무공간과 생활구역은 안전요구에 부합하는 장소로 선정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취사, 음수, 휴식 장소 등은 모두 위생표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준공되기 전의 건축물 내에 근로자들의 단체 숙소를 마련하여서는 안된다”²⁵⁹⁾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계설비 조작인원에 대한 관리규정, 각 구역별 안내표지판의 설치, 시공현장의 오수 및 폐기물 처리방법 등 건설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여러 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²⁶⁰⁾ 건설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2) 건축시공 안전관리 사례

위의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014년 중국에서는 비교적 많은 안전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여러 안전사고 중 2014년 12월 19일 허난성(河

257)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1조.

258) 참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3조.

259)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9조.

260) 참고,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8조.

南省)에서 발생한 공사현장 붕괴사고가 건축안전 관련정책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중국 국무원의 건설 주관부처는 이 사건에 대해 각 하급 지방정부에 <통보>를 하달하여 건축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는데, <통보>²⁶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고개요 및 위반사항

2014년 12월19일 허난성(河南省) 광산현(光山县) 행복화원 단지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플레이트 받침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하였다. 사고 발생 후 조사과정에서 그 공사가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건설업체가 불법으로 발주하고, 시공업체는 자격증서를 도용하였으며, 실질적인 시공 도급업체는 시공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이 밖에도 기술적인 설계방안이 없었으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철근을 사용하였다.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주관부처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12·19’사고는 전형적인 건설시공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고로써 허난성(河南省) 건설청은 해당 기업과 개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 비쳤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건설주관부처의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책임을 추궁하였다.

2) 정부주관부처의 경고내용

사고발생 직후, 국무원 건설부는 건축공사 품질안전관리 작업과 관련된 문서를 하달하여 다음과 같이 각 지역이 건축안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의 방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261) 건설부, <허난성(河南省)광산현(光山县) ‘12·19’ 붕괴사고의 통보(河南省光山县 ‘12·19’ 模板支架坍塌事故的通报)>, 2014년 12월25일.

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zl/201412/t20141226_219898.html(2015.8.5접속)

첫째, 안전은 국민들의 생명 및 재산안전과 관계가 있고 안정적인 발전과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黨)과 정부의 이미지 및 명예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건축안전작업은 법률·법규를 통하여 건설주관부처에 부여한 중요한 직책이다. 건축업의 발전은 절대로 근로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건축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의 피해가 건축업 발전의 대가로 되어서는 안된다. 각 지역은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여 정부 주관부처의 관리감독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기업들의 책임감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건축안전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들을 원칙과 규정대로 이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이익을 진정으로 보장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둘째, ‘공사품질 시정 2년 행동(工程质量治理两年行动)’을 지켜야 한다. 공사품질 시정 2년 행동은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각 지역은 건설시공현장에 대한 감독관 관리 및 조사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 할 경우에는 처벌을 함으로써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심하여 ‘공사품질 시정 2년 행동’이 모든 지역, 모든 사업에 관철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사업 소재지 주관부처는 조사결과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정 후에도 지켜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조치 및 무거운 처벌을 하여야 한다.

셋째, 각 주체의 안전책임을 구현시켜야 한다.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 주체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확실한 책임의무가 있다.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불법으로 발주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업체는 <위험성이 있는 비교적 큰 부분 공사 안전관리 판법(危险性较大分部分项工程安全管理办法)>의 내용을 관철하여 모든 시공단계에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감리업체는 시공현장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써 감찰하고 품질안전에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통보하고 시

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정대표자의 위임장, 공사품질 종신책임승인서 등 제도를 이행함으로써 품질안전 책임을 모든 사업, 모든 팀 그리고 모든 직책과 모든 구성원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위법 및 위규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법 및 위규행위 중 특히 사상사고가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과 개인을 법에 의거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자격을 정지하여야 할 경우는 자격을 정지시키고, 자격등급을 낮추어야 할 경우는 자격등급을 낮추어야 한다. 업무정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는 업무정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철저히 함으로써 모든 사건이 정확하게 처리되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언론매체의 홍보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여론의 힘을 인식하여, 위법 및 위규행위를 한 기업과 개인을 언론매체에 공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공사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여론의 관리감독 기능과 안전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공사품질 시정 2년 행동’ 실시 기간 중, 건설부는 언론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비교적 큰 사고’ 이상 급의 모든 사고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명칭과 책임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언론매체와 협력하여 책임감이 없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독함으로써 공사품질안전을 제고시켜야 한다.

중국의 건설부는 이처럼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조사와 사고처리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각 지역 성급 지방정부의 건설청(建設廳)에 요청할 수 있다. ‘공사품질 시정 2년 행동’ 등과 같은 문건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각 주체들로 하여금 건축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건설부 웹사이트²⁶²⁾에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사고 관련자들 즉 건설

262) 중국 건설부 웹사이트: <http://www.mohurd.gov.cn/index.html>.(2015.7.30접속)

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 등의 책임자와 관리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위법 및 위규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3) 건설시공 안전과 감독

2014년 10월24일 건설부가 반포한 <주택건설과 기초시설 공사 시공안전 관리감독규정(房屋建築和市政基礎設施工程施工安全監督規定)>에 따르면 건설부는 법적으로 건설주관부처의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건설업체, 조사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 감리책임자 등 건축 관련 각 주체에 대한 안전직책을 규정할 수 있다.

시공안전 감독자가 갖추어야할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²⁶³⁾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와 관련된 전공을 한 전문대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거나 초급 이상의 전문기술이 있는 자로써 필요한 직책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2년 이상의 시공안전관리 경험이 있어야 한다. 셋째, 관련 법률과 법규, 그리고 건설표준 등 규범을 익숙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업무훈련 심사에 합격한 이후, 관련 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업 도덕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시공안전 감독과 관리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²⁶⁴⁾ 첫째, 건설공사 책임주체가 안전 직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한다. 둘째, 건설공사 책임주체가 법률, 법규, 규장, 제도 및 건설 강

263) 건설부, <주택건설과 기초시설 공사 시공안전 관리감독규정(房屋建築和市政基礎設施工程施工安全監督規定)> 제6조.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11/t20141115_219532.html

(2015.8.3접속)

264) 건설부, <주택건설과 기초시설 공사 시공안전 관리감독규정(房屋建築和市政基礎設施工程施工安全監督規定)> 제8조.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11/t20141115_219532.html

(2015.8.3접속)

제적 표준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한다. 셋째, 건축시공 안전 표준화 작업의 진행현황을 유지한다. 넷째, 시공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조사를 하고 처리작업에 참여한다. 다섯째, 법적으로 건설사업 책임주체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행정처벌을 가한다. 마지막으로 건축시공사업의 안전과 관련된 고발 및 신고를 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시공안전 감독과 관리자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적(私的) 이익의 도모 등 불법행위를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범죄가 구성될 경우,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것으로는 첫째, 시공안전과 관련하여 위법 및 위규 행위가 발견 되었을 경우. 둘째, 감독과 관리 과정 중, 타인의 뇌물을 수수하였을 경우. 셋째, 시공안전에 대한 고발과 신고 등을 접수하고 처리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등인데²⁶⁵⁾ 모두 행정처분 내지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4. 건축안전 종신책임제도

2014년 8월25일, 중국 건설부는 <건축공사 다섯 책임주체 사업책임자의 품질에 대한 종신책임 추궁 잠행판법(關於印发建筑工程五方责任主体项目负责人质量终身责任追究暂行办法)>²⁶⁶⁾을 발표하여 다섯 책임주체, 즉 건설업체 사업책임자, 조사업체 사업책임자, 설계업체 사업

265) 건설부, <주택건설과 기초시설 공사 시공안전 관리감독규정(房屋建築和市政基础设施工程施工安全監督規定)> 제12조.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11/t20141115_219532.html
(2015.8.3접속)

266) 건설부의 <건축공사 다섯 책임주체 사업의 책임자 품질 종신책임 추궁 잠행판법(關於印发建筑工程五方责任主体项目负责人质量终身责任追究暂行办法的通知)>는 모두 20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책임주체, 관할 담당부서, 책임내용, 처벌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09/t20140904_218907.html
(2015.8.4접속)

책임자, 시공업체 사업책임자, 감리업체 총감리사 등에 대한 품질 종신(終身) 책임제를 마련하여 공사 품질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였다. 건축공사의 각 단계별 사업책임자에 대한 품질 종신책임제를 확립함으로써 단계별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근래 중국에서 건축안전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은 이러한 종신책임제 시행의 효과로 보여진다.

(1) 책임주체

<건축공사 다섯 책임주체 사업책임자의 품질에 대한 종신책임 추궁 집행관법>(이하 <품질종신책임 집행관법>) 제2조는 품질종신책임제도의 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건축공사사업의 건설업체 사업책임자, 조사업체 사업책임자, 설계업체 사업책임자, 시공업체 사업책임자, 감리업체의 총감리사이다. 건축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업체, 조사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의 법정대표자들이 책임분담을 확실하게 정하고, 당해 업체의 사업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담당부서

<품질종신책임 집행관법>은 품질종신책임제도의 담당부서로서 국무원 건설부 주관부처가 전국의 건축공사 사업책임자 품질종신책임제도의 전반적인 업무와 감독 및 관리 직능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⁶⁷⁾ 현급(縣級)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건설 관련부처는 당해 행정구역 내의 건축공사에 대한 종신책임제의 감독과 관리를 담당한다.

267) 건설부, <건축공사 다섯 책임주체 사업책임자의 품질 종신책임 추궁 집행관법(關於印发《建筑工程五方责任主体项目负责人质量终身责任追究暂行办法》的通知)> 제4조.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09/t20140904_218907.html (2015.8.4접속)

(3) 품질중심책임제도의 내용

‘건축공사 다섯 책임주체 사업책임자의 품질중심책임제도’란 신축, 확충, 리모델링 등의 공사에 참여하는 건축사업의 각 단계별 사업책임자가 국가의 법률과 법규 그리고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사용기한 내에 공사품질에 대한 책임을 졌을 때까지 지는 제도이다.

건설업체의 사업책임자는 공사품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불법적인 발주를 실시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조사·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 법률과 법규의 규정 및 건설공사표준을 위반해서는 안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및 품질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²⁶⁸⁾

조사·설계업체의 사업책임자는 조사를 거쳐 설계된 문서가 법률과 법규 그리고 건설공사 강제표준에 부합할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조사 및 설계로 인한 공사품질사고 또는 품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²⁶⁹⁾ 시공업체의 사업책임자는 심사에 통과된 시공도면과 설계문서 그리고 기술표준 등을 근거로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으로 인한 공사품질사고 또는 품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²⁷⁰⁾

268) 건설부, <건축공사 다섯 책임주체 사업책임자의 품질에 대한 중심책임 추궁 집행 관법(建筑工程五方责任主体项目负责人质量终身责任追究暂行办法)> 제5조 1항.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09/t20140904_218907.html
(2015.8.4접속)

269) 건설부, <건축공사 다섯 책임주체 사업책임자의 품질에 대한 중심책임 추궁 집행 관법(建筑工程五方责任主体项目负责人质量终身责任追究暂行办法)> 제5조 2항.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09/t20140904_218907.html
(2015.8.4접속)

270) 건설부, <건축공사 다섯 책임주체 사업책임자의 품질에 대한 중심책임 추궁 집행 관법(建筑工程五方责任主体项目负责人质量终身责任追究暂行办法)> 제5조 3항.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09/t20140904_218907.html
(2015.8.4접속)

감리업체의 총감리사는 법률과 법규 그리고 관련기술표준, 설계문서와 공사 도급계약서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품질에 대한 감리책임을 져야 한다.²⁷¹⁾

품질중심책임제도는 각 사업책임자의 서면승낙서와 준공 후 영구표지를 세움으로써 실현된다. 각 사업책임자는 공사품질 관리감독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품질중심책임승낙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법정대표자의 위임장과 함께 공사품질 관리감독 부처에 서류를 등록하여야 한다.²⁷²⁾ 사업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수속과 품질중심책임승낙서를 변경하여 관련 부처에 재등록 하여야 한다.²⁷³⁾ 건축공사가 준공된 이후 검사작업이 종료되면 건설업체는 건축물의 눈에 띄는 곳에 건설·조사·설계·시공·감리업체의 명칭과 사업책임자의 이름이 들어간 영구표말을 세워야 한다.²⁷⁴⁾

(4) 책임추궁 및 처벌내용

<품질중심책임 잠행관법> 제6조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건설주관부처는 사업책임자에게 중신책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71) 건설부, <건축공사 다섯 책임주체 사업책임자의 품질에 대한 중신책임 추궁 잠행관법(建筑工程五方责任主体项目负责人质量终身责任追究暂行办法)> 제5조 4항.

http://www.mohurd.gov.cn/zcfg/jsbjw_0/jsbjwgczi/201409/t20140904_218907.html

(2015.8.4접속)

272) 건설부, <건축공사 다섯 책임주체 사업책임자의 품질에 대한 중신책임 추궁 잠행관법(建筑工程五方责任主体项目负责人质量终身责任追究暂行办法)> 제7조.

http://www.mohurd.gov.cn/zcfg/jsbjw_0/jsbjwgczi/201409/t20140904_218907.html

(2015.8.4접속)

273) 건설부, <건축공사 다섯 책임주체 사업책임자의 품질에 대한 중신책임 추궁 잠행관법(建筑工程五方责任主体项目负责人质量终身责任追究暂行办法)> 제8조.

http://www.mohurd.gov.cn/zcfg/jsbjw_0/jsbjwgczi/201409/t20140904_218907.html

(2015.8.4접속)

274) 건설부, <건축공사 다섯 책임주체 사업책임자의 품질에 대한 중신책임 추궁 잠행관법(建筑工程五方责任主体项目负责人质量终身责任追究暂行办法)> 제9조.

http://www.mohurd.gov.cn/zcfg/jsbjw_0/jsbjwgczi/201409/t20140904_218907.html

(2015.8.4접속)

즉 ①공사품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고발·신고·시위·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 심각한 공사품질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조사·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사용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④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위법·위규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현급(縣級)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건설 주관부처는 사업책임자에게 종신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건설업체, 조사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의 사업책임자와 총감리사가 <품질종신책임 잠행관법>제6조에서 규정한 어느 한 상황에 해당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첫째 범죄가 구성되면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고, 둘째 단위벌금 액수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셋째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²⁷⁵⁾ 이밖에 건설업체의 사업책임자가 국가 공무원일 경우, 위법·위규행위를 상급 주관부처 및 기율감찰부처에 보고하여 상황에 부합하는 행정처분과 기율처분을 받아야 한다.

조사업체와 설계업체의 사업책임자가 등록건축사이거나 조사설계 등록건축사일 경우 자격정지 1년에 처하며, 중대한 품질사고를 초래하였을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5년 이내에 등록하지 못한다. 정황이 특별히 심각할 경우, 영구적으로 등록하지 못한다.²⁷⁶⁾ 시공업체의 사업책임자가 관련부처에 등록되었을 경우 자격정지 1년에 처하며, 중대한 품질사고를 초래하였을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5년 이내에 등록하지 못한다. 정황이 특별히 심각할 경우, 영구적으로 등록하지 못한다.²⁷⁷⁾

275) 건설부, <건축공사 다섯 책임주체 사업책임자의 품질에 대한 종신책임 추궁 잠행관법(建筑工程五方责任主体项目负责人质量终身责任追究暂行办法)> 제11조.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09/t20140904_218907.html

(2015.8.4접속)

276) 건설부, <건축공사 다섯 책임주체 사업책임자의 품질에 대한 종신책임 추궁 잠행관법(建筑工程五方责任主体项目负责人质量终身责任追究暂行办法)> 제12조.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09/t20140904_218907.html

(2015.8.4접속)

감리업체의 총감리사가 등록되었을 경우 자격정지 1년에 처하며, 중대한 품질사고를 초래하였을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5년 이내에 등록하지 못하며, 정황이 특별히 심각할 경우, 영구적으로 등록하지 못한다.²⁷⁸⁾

(5) 품질중신책임 제도 실시현황

중국 건설부 판공청(办公厅)은 2015년 5월4일 <공사품질중신책임제도 실시현황 월간 보고에 대한 통지(關於請按月报送工程质量终身责任制落实情况的通知)>를 통하여 2015년 4월20일까지 중국 전역의 31개 성·자치구·직할시와 신장(新疆)생산부대의 2015년 3월 공사품질중신책임제도 실시현황을 통보하였다.

1) ‘양서일패(兩書一牌)’제도의 실시현황²⁷⁹⁾

<공사품질 개선 2년 행동>과 <품질중신책임 잠행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마련된 ‘양서일패(兩書一牌)²⁸⁰⁾제도는 건축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건축공사 책임자와 위임체결을 하고, 건축공사 책임자와 감독기관은 ‘품질중신책임승낙서’ 체결을 한 다음, 건축공사가 끝날 때 가장 잘 보이는 지점에 건축참여업체 및 건축책임자

277) 건설부, <건축공사 다섯 책임주체 사업책임자의 품질에 대한 중신책임 추궁 잠행판법(建筑工程五方责任主体项目负责人质量终身责任追究暂行办法)> 제13조.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09/t20140904_218907.html

(2015.8.4접속)

278) 건설부, <건축공사 다섯 책임주체 사업책임자의 품질에 대한 중신책임 추궁 잠행판법(建筑工程五方责任主体项目负责人质量终身责任追究暂行办法)> 제14조.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09/t20140904_218907.html

(2015.8.4접속)

279) 참조, 건설부, <공사품질중신책임제도 실시현황 월간보고에 관한 통지(關於請按月报送工程质量终身责任制落实情况的通知) 2015년 5월7일.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505/t20150506_220791.html

(2015.8.4접속)

280) 여기서 양서(兩書)는 법정대표자의 수권서[法定代表人授权书]와 건축공사 책임자의 공사품질중신책임승낙서[工程质量终身责任承诺书] 등 2개의 문서를 가리키며, 일패(一牌)는 하나의 팻말을 가리킨다.

들의 이름이 새겨진 팻말을 설치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건축품질을 종신토록 보장하도록 하는 장치를 두었다.

2015년 3월 기준, 중국 전역에서 새롭게 품질감독 신청을 한 공사가 총11,064건인데, 이들 중 법정대표자 위임장과 공사품질중심책임승낙서에 서명을 한 공사가 총10,522건으로 실시율이 95.10%에 달하였다. 전월과 비교하였을 때, 1% 정도 낮아졌으나, 후베이(湖北), 안휘(安徽), 텐진(天津) 등 8개 성의 실시율은 100%에 달하였다.

중국 전역에서 이미 착공하였거나 건설 중인 공사가 19,120건인데, 법정대표자의 위임장과 공사 품질중심책임승낙서가 제출되었다. 2015년 3월 중국 전역에서 준공 및 검사작업이 진행된 공사가 총7,221건이며, 이들 중 6,521건이 영구적인 팻말을 세워 그 실시율이 90.30%에 달하였다. 이것은 전월과 비교하였을 때 2% 가량 상승한 것이다. 안휘(安徽), 후베이(湖北), 푸지엔(福建) 등 13개 성과 신장(新疆)생산건설부대의 실시율은 100%에 달하였다. 5,336건의 공사가 품질신용문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실시율이 73.90%에 달하였는데, 이는 전월대비 2%가량 상승한 수치이다. 안휘(安徽),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등 8개 성의 실시율은 100%에 달하였다.

2) 법 집행에 대한 감독 및 시정조치 실시현황

‘공사품질 개선 2년 행동’을 실시한 이래 각 지역에서는 법 집행에 대한 감독 역량을 강화하였는데, 각 시와 현의 1급 공사의 품질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는 시정조치를 하고, 심각한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공사품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3월 각 지역에서 조사를 받은 공사가 총43,246건으로 성급(省級) 건설 주관부처에서 실시한 조사가 1,406건, 시와 현급 건설 주관부처에서 조사를 실시한 공사가 41,849건 이었다. 각 지역에서 발급한 시정

조치 명령은 19,086건인데, 이 중 589개의 관련업체를 처벌하였고, 처벌받은 관련자는 205명이었다. 언론에 공개된 위법 판례가 총 229건이었다.²⁸¹⁾ 행정처벌 현황은 산둥(山東), 귀주(貴州), 후베이(湖北) 등 3개성에서의 처벌이 가장 무거웠고, 언론에 공개된 숫자는 산둥(山東), 쓰촨(四川), 충칭(重慶) 3개 지역이 가장 심하였다.

위와 같이 중국 건설부는 <품질중신책임 잠행판법>을 반포함으로써 건축공사의 각 단계별 사업책임자에 대한 품질 중신책임제를 확립하였고, 각 위험요소들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안전사고의 발생을 최소화 시켰다. 또한, 각 성(省)·자치구·직할시의 건설 주관부처에 <품질중신책임 잠행판법>을 근거로 실시세칙을 제정할 것을 지시하여 각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였다.

5. 교육훈련제도

(1) 교육훈련제도의 법적 근거

건축시공회사는 노동안전 교육훈련제도를 수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하고,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는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²⁸²⁾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제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생산경영단위(单位)는 업무종사자에게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업무종사자들이 안전과 관련된 지식의 습득을 보장하고, 안전규장제도와 안전조작규정을 파악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업무에 대한 기술을 익숙하게 파악하고 사고에 대한 응급처리조치를 이해함과 동시에 안전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익숙하게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281) 건설부, <공사품질중신책임제도 실시현황 월간보고에 관한 통지(住房城乡建设部办公厅關於請按月报送工程质量终身责任制落实情况的通知)> 2015년 5월 7일 참조.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505/t20150506_220791.html

282)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제46조.

교육과 훈련에 합격하지 아니한 업무종사자는 해당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²⁸³⁾고 규정하여 생산경영업체에서도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법률과 법규에 대한 교육, 기업 관련규장제도에 대한 교육, 안전 관리지식, 안전기술 지식교육, 노동기율 교육과 안전사고 사례분석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대체로 3단계 안전교육, 특수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정기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 3단계 안전교육

3단계 안전교육은 세단계에 걸쳐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각종 안전교육의 기본을 이룬다.²⁸⁴⁾ 건축업체의 3단계 안전교육 시에는 훈련계획, 교육내용, 시간 및 심사결과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 첫 번째 단계의 안전교육

기업에 새롭게 고용된 직원, 계약직 직원, 임시직 직원, 인턴 직원 모두에게 근무를 시작 하기 전, 회사의 안전관련 부서에서 첫 번째 단계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으로는 주로 국가의 안전관련 법령·법규, 당해기업의 안전관련제도, 본 업계의 안전기본지식, 노동기율 등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2) 두 번째 단계의 안전교육

위의 교육대상자가 시공사업을 하는 부서에 투입되면, 시공사업 부서에서 제2단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으로는 주로 본 사업의 생산현황, 안전현황, 시공 작업구역의 상황, 전기설비 안전, 안전규장제도, 노동기율 등을 교육한다.

283)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제25조.

284) 기업 생산방면에서의 3단계 안전교육은 ①공장출근교육 ②작업장교육 ③작업반교육으로 진행된다. 기업은 반드시 새로운 근로자에게 안전생산을 위하여 공장출근교육, 작업장교육, 작업반교육을 해야 한다.

3) 세 번째 단계의 안전교육

마지막으로 단계로써 안전교육 대상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서의 책임자나 반장 등이 업무시작 전 안전교육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세 번째 단계의 안전교육이다. 교육은 당해 부서의 안전현황, 안전검사 규정, 환경안전과 안전방호조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유념사항, 개인 방호용품의 정확한 사용방법, 사고발생 이전의 판단과 예방책, 사고발생 이후의 긴급처리 등을 교육한다.

3단계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근로자에게는 등록된 교육이수 카드를 발급하고, 사업 책임부서에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관한다. 3단계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업무에 임할 수 없고, 담당 작업을 변경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새로운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받은 시간과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3) 특수작업원 안전교육

특수작업원은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고, 위험성이 비교적 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기술과 관련된 지식습득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작업원은 일정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거친 후, 소정의 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자격증서가 없으면 특수작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작업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해당업체에서 <특수작업원 관리제도>에 의하여 엄격하게 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²⁸⁵⁾

285) <특수작업인원 안전기술 심사 관리규칙(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考核管理规则)> 제10조.

(4) 정기 안전교육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매주 월요일 시공에 참여하는 각 부서의 근로자들에 게 안전검사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주로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문서 내용의 숙지와 안전의식, 전 주의 안전검사 현황 정리 및 해당 주의 안전 요구사항, 근로자에 대한 장려, 위규행위에 대한 반성, 안전사고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 등으로 이루어 진다. 또한, 중대한 시공사업 이거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근로자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에야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는 절대로 작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휴일 이전에 근로자들이 귀향하여 친지 등을 방문하기에 앞서 근로자들에게 관련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공현장에 칠판이나 화이트 보드 등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홍보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경우 표창하며, 안전 동태 등을 홍보해야 한다. 이밖에 안전에 대한 지식과 관련 규정들을 주기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위와 같이 건축안전 교육과 훈련제도는 3단계 안전교육과 특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축업계의 관련 업체에서는 반드시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서면으로 자료들을 보관함으로써 교육과 훈련제도가 실질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제 3 절 건축 안전사고의 법률책임

1. 민사 손해배상

중국은 도시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건축업도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룩하였고,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축업은 전통적인 기초시설산업인데, 건설 산업의 호황과 더불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재산적 손실과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앞의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매년 건축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1,000여명에 달하며, 직접적인 경제손실도 백억 위안(元)을 넘어서고 있다.²⁸⁶⁾ 일반 국민의 법제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건축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도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최고인민법원에서 반포한 <사법해석>²⁸⁷⁾ 중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보상에 관련된 것이 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건축업 종사자 및 그 가족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수입에 영향을 받을 뿐만아니라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정신적 피해는 적지 않다고 하겠다. 건축공사 안전사고 피해자 가족들의 받는 정신적 피해를 평가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교육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안전사고 피해자 연령과 건강

연령이 많아지면 경험이 풍부하여 지고, 업무에 대한 처리능력도 더욱 나아지기 때문에 건축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만약 피해자의

286) 罗云, 安全经济导论, 经济科学出版社, 1993년 38쪽이하 참조.

287)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민사침권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보상 책임과 관련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關於確定民事侵权精神损害赔偿责任若干问题的解釋)>, 2001년2월26일.

연령이 많다면, 그의 가정에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하면 아동기(0~11세), 소년기(12~17세), 청년기(18~29세), 장년기(30~44세), 중년기(45~59세)와 노년기(56세 이상)로 구분한다.²⁸⁸⁾ 일반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청년기와 장년기 연령대에 있는 자에게 건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가정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 또한 더 크다.

(2) 안전사고 피해자의 교육수준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

안전사고 피해자가 고학력자일 경우, 가정에서 끼치는 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건축안전사고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농민공(農民工)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정규대학 교육을 받거나 심지어 대학원을 마친 고급 인력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심각한 편이다.²⁸⁹⁾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회나 가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 중 연령과 건강 그리고 교육수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2. 형사책임

(1) <형법>의 ‘공사 중대안전사고죄’ 개요

중국 <형법> 제137조는 ‘공사 중대안전사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부실공사 등과 같이 공사의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가운데,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법조문에 근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건설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 공사감리업체

288) 참조, 罗贞莉, 张镇森, 建筑工程安全事故遇难者家属精神损失赔偿模型, 湖南理工学院学报, 2013년12월, 77쪽.

289) 참조, 罗贞莉, 张镇森, 建筑工程安全事故遇难者家属精神损失赔偿模型, 湖南理工学院学报, 2013년12월, 77쪽.

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안전사고를 초래하면 그 행위에 대해 형벌적 제재(制裁)를 받을 수 있다. ‘공사 중대안전사고죄’를 좀 더 분석해보고자 한다.

(2) <형법> 제137조에 대한 해석

중국 <형법> 제137조는 “건설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 공사감리업체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품질표준을 낮춤으로써 중대한 안전사고를 초래하였을 경우,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단기징역형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형에 처한다. 결과가 특별히 엄중할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37조는 ‘공사 중대안전사고죄’의 구성요건과 이와 관련된 처벌을 규정한 조문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경제가 빠른 속도로 지속 발전함에 따라 건축공사는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법과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건축주체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자재를 기준보다 적게 사용하여 공사품질 기준을 낮추거나 혹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건축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건물붕괴, 교량붕괴, 철로사고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들의 생명안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야기되고, 또한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범죄로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3) 구성요건

1) 객체요건

‘공사 중대안전사고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이다. 중국의 건축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다양한 건축안전 문제점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예컨대, 일부 업체

는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의 품질기준을 임의로 낮추기도 하였고, 어떤 건설업체는 공사발주 할 때의 가격을 고의로 낮춤으로써 중간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²⁹⁰⁾ 또한, 도급업체 및 중개업체는 허위로 원가를 올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또 일부 시공업체에서는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거나 뇌물수수를 통하여 사익을 꾀하는 등의 불법행위들을 저질러서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1990년대 중국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발생을 역시 높아졌다. 1994년의 통계자료를 보면, 중국의 중대형 도시 주택공사 합격률이 불과 81%에 머물러 있어 약1/5의 주택이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²⁹¹⁾ 1997년 3월25일 푸지엔성(福建省) 푸톈시(莆田市) 장커우진(江口镇)의 공장 기숙사 건물이 붕괴되어 여성근로자 3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²⁹²⁾ 등은 안전사고의 한 사례이다. 중국이 <형법>을 개정하면서 건축공사 안전사고와 관련된 범죄의 내용을 추가한 것은 안전사고의 직접책임자들에게 안전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건축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객관적 요건

‘공사 중대안전사고죄’의 객관적 요소를 보면,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의 품질기준을 낮춤으로써 중대한 안전사고를 초래한 행위이다.²⁹³⁾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

290) 王斌, 论“工程重大安全事故罪”及其立法完善, 四川大学, 2002년, 8쪽이하 참조.

291) 梁春程, 重大责任事故罪与工程重大安全事故罪比较研究:从一起因擅自增加楼层导致的坍塌事故说起, 法治与社会, 2012년 9월, 78쪽 참조.

292) 梁春程, 重大责任事故罪与工程重大安全事故罪比较研究:从一起因擅自增加楼层导致的坍塌事故说起, 法治与社会, 2012년9월, 77쪽 참조.

293) 要鸿志, 第137条工程重大安全事故罪, <http://www.66law.cn/laws/85219.aspx>(2015.8.4접속)

본 범죄행위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국가의 건축공사 품질 관리감독과 관련된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건설업체의 위반행위는 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상황으로 실행된다.²⁹⁴⁾ 첫째, 건축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에게 압력을 가하여 공사가 격을 낮추거나 건물의 층수를 높임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낮추는 경우. 둘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자재와 부품 또는 설비 등을 시공업체에게 강제적으로 제공하여 공사의 품질을 낮추는 경우 등이다.

건축설계업체가 범하는 위법행위는 주로 품질기준을 따르지 않고 설계하는 것이다. 건축시공업체의 위규행위는 주로 세 가지가 태양(態樣)으로 전개되는데,²⁹⁵⁾ 첫째 시공과정 중에 자재 등을 규정보다 적게 사용하거나 고의적으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자재와 부품 및 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는 경우. 셋째 시공기술표준에 따라 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과 심각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 바로 심각한 결과는 국가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와 심각한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공사 중대안전사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된다. 이와 같이 중대안전사고란 안전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공사 중 붕괴사고가 터져서 중상, 사망 또는 중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심각한 결과’는 중상 또는 사망 뿐만 아니라 중대한

294) 要鴻志, 第137条工程重大安全事故罪, <http://www.66law.cn/laws/85219.aspx>(2015.8.4접속)

295) 张静, 工程重大安全事故罪研究, 湖南师范大学, 2014년, 15쪽 이하 참조.

경제적 손실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액수가 5만 위안(元) 이상 이었을 경우 중대한 경제적 손실로 간주한다.²⁹⁶⁾ 만약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5만 위안(元)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상황이 심각하여 생산과 작업 등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직접적인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²⁹⁷⁾

3) 주체요건

‘공사 중대안전사고죄’의 주체는 단위범죄라는 특수성을 띄고 있다. 주체는 건설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 및 공사감리업체 등의 단위(單位)여야만 한다. 여기서 건설업체란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개발과 경영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 또는 국가 유관부처의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자격을 갖추고 있고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을 갖춘 단위이다.²⁹⁸⁾

설계업체란 조사 및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설계업체나 조사 및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기타업체를 가리킨다. 시공업체란 토목건설, 도관(導管), 설비의 설치와 건축인테리어 등 증축, 리모델링 등의 일을 담당하는 건축업기업을 가리킨다. 시공업체는 공사의 원도급업체, 시공도급기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 공사감리업체란 건축공사에 대하여 전문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업체를 가리킨다.²⁹⁹⁾

4) 주관적 요건

‘공사 중대안전사고죄’의 주관적 요건은 과실이다. 부주의로 인한 과실과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한 과실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가리키

296) 张静, 工程重大安全事故罪研究, 湖南师范大学, 2014년, 15쪽 이하 참조.

297) 要鸿志, 第137条工程重大安全事故罪, <http://www.66law.cn/laws/85219.aspx>(2015.8.4 접속)

298) 要鸿志, 第137条工程重大安全事故罪, <http://www.66law.cn/laws/85219.aspx>(2015.8.4 접속)

299) 王斌, 论“工程重大安全事故罪”及其立法完善, 四川大学, 2002년, 17쪽 참조.

는 과실은 추후에 발생한 피해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가 국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고의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³⁰⁰⁾ 행위자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고, 심각한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부주의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심각한 결과가 초래할 것을 예측하였지만 과도한 자신감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4) ‘공사 중대안전사고죄’의 판정

1) ‘공사중대안전사고죄’와 일반안전사고의 차이

‘공사 중대안전사고죄’와 일반안전사고는 모두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의 품질기준을 낮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결과가 있는 경우인데, 양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건은 중대한 안전사고가 초래되었는지의 여부이다.³⁰¹⁾ 설계업체, 시공업체, 공사감리업체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의 품질표준을 낮춤으로써 중대한 안전사고를 초래하였을 경우 ‘공사 중대안전사고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의 품질표준을 낮추었으나 중대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비록 범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행정처벌 조치를 취하거나 건축계약에 따라 상황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중대책임사고죄’와의 구분

‘공사 중대안전사고죄’와 ‘중대책임사고죄’ 모두 과실범죄이면서 동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가 범죄가 성립하지만, 두 범죄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명확한 구분이 있다.³⁰²⁾

300) 참조, 王斌, 论“工程重大安全事故罪”及其立法完善, 四川大学, 2002년, 27쪽.

301) 王斌, 论“工程重大安全事故罪”及其立法完善, 四川大学, 2002년, 29쪽 참조.

302) 王斌, 论“工程重大安全事故罪”及其立法完善, 四川大学, 2002년, 32쪽 참조.

첫째, 범죄주체가 다르다. ‘공사 중대안전사고죄’의 범죄주체는 건설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 공사감리업체이며 단위(單位)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대책임사고죄’의 주체는 공장, 광산, 임장(林場), 건축기업 혹은 기타기업, 사업단위의 근로자 등 자연인 범죄에 해당한다.

둘째, 객관적 요건이 다르다. ‘공사 중대안전사고죄’의 객관적 요건을 보면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의 품질표준을 낮춤으로써 중대 안전사고를 초래한 행위이다. 그러나 ‘중대책임사고죄’는 관리에 따르지 않고, 규장제도를 위반하거나 강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규장을 위반하여 위험한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중대한 사상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행위를 가리킨다.

(5) 입건기준과 처벌

건설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 공사감리업체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품질표준을 낮추어 다음과 같은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건할 수 있다. 첫째,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둘째,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100만 위안(元)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셋째,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등이다.³⁰³⁾

중국 <형법> 제137조의 ‘공사 중대안전사고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단기징역형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형에도 처한다. 결과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 즉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경제적 손실이 심각할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형에도 처한다.³⁰⁴⁾

303) 要鸿志, 第137条工程重大安全事故罪, <http://www.66law.cn/laws/85219.aspx>(2015.8.4 접속)

304) 要鸿志, 第137条工程重大安全事故罪, <http://www.66law.cn/laws/85219.aspx>(2015.8.4 접속)

(6) 주요판례³⁰⁵⁾

1) 사건개요

2004년 5월 5일 허난성(河南省) 정저우시(鄭州市) 근교의 천짜이촌(陳砦村)에 위치한 정저우(鄭州) 천짜이(陳砦) 냉장무역유한회사의 30호 냉장창고에서 화물 수납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냉장창고 내에서 작업 중이던 34명의 근로자가 화물 수납장 밑에 깔렸고, 그 중 일부만 구조되어 15명이 사망하였다.

2) 사고경위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 3월6일 천짜이촌(陳砦村) 촌위원회 주임, 정저우시(鄭州市) 베이환(北環)실업 총회사 이사장 천짜건(陳扎根)의 결정에 의해 천짜이(陳砦) 냉장무역유한회사는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수성(江蘇省) 창수시(常熟市) 쩌타(金塔)금속제품유한회사와 화물 수납장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쩌타(金塔)회사의 대표자 마리장(馬利江)은 해당 기업이 창고의 화물 수납장을 생산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업계규정을 위반하고 수퍼마켓 화물 수납장 표준을 적용하여 설계자격이 없는 생산 기술공장 대표 양귀중(楊國忠)에게 설계와 생산을 의뢰하였다.

2003년 4월초 마리장(馬利江)은 직원인 저우요우카이(周友凱)와 품질 검수자격이 없는 품질검수 직원 천웨이신(陳月新)을 대동하여 천짜이(陳砦) 냉장창고에서 화물 수납장에 대한 설치와 품질검수작업을 하였다. 저우요우카이(周友凱)와 천웨이신(陳月新)은 현장에서 설치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설계도안을 수정하고, 정저우(鄭州)

305) 呂曉偉，企業標準化工作任重道遠：鄭州陳砦“5·5”特大冷庫貨架倒塌事故的警示，中國標準導報，2004년제12호，29쪽 이하 참조.

시내에서 시급 노동자를 고용하여 화물 수납장을 설치하였다. 설치가 완료된 이후, 저우요우카이(周友凯)와 천웨이신(陈月新)은 규정에 따라 검수작업을 하지 않았고, 천짜이(陈砦)냉장무역유한회사 역시 사용자로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검수작업을 하지 않았다. 화물 수납장이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3) 조사결과

관련부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저우시(鄭州市) 천짜이(陈砦)냉장창고에서 발생한 ‘5·5’ 특대형 화물수납장 붕괴사고는 특대 책임사고로 규명되었다. 당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창쭈시(常熟市) 쩐타(金塔)금속제품유한회사가 창고형 특대 화물수납장을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규정을 위반하였고, 생산된 이후 설치된 화물 수납장은 안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납능력이 부족하여 심각한 품질문제가 있었다. 천짜이촌(陈砦村) 공산당지부와 촌위원회, 그리고 천짜이(陈砦) 냉장무역유한회사는 창쭈시(常熟市) 쩐타(金塔)금속제품유한회사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 수납장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제품 공급사에 대한 품질검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저우시(鄭州市) 천짜이촌(陈砦村) 촌위원회 주임, 정저우(鄭州) 베이환(北環)실업총회사 이사장 천짜건(陈扎根)은 2004년 11월18일 지병으로 사망하여 정저우시(鄭州市) 쩐수이구(金水区) 인민검찰원은 천짜이(陈砦) 냉장무역유한회사의 냉장창고 책임자 류용구이(刘永贵), 장쑤성(江蘇省) 창쭈시(常熟市) 쩐타(金塔)금속제품유한회사 대표자 마리장(马利江), 생산기술공장장 양궈중(杨国忠), 직원 저우요우카이(周友凯), 품질검수직원 천웨이신(陈月新) 등 5명의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였다.

4) 법원판결

2008년 7월 18일 허난성(河南省) 정저우시(鄭州市) 쩐수이구(金水区) 인민법원은 정저우시(鄭州市) 천짜이(陈砦)냉동창고에서 발생한 ‘5·5’ 특대형 화물 수납장 붕괴사고의 주요 책임자 5명에 대하여 1심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저우요우카이(周友凯), 천웨이신(陈月新)에게는 공사중 대안전사고죄로 유기징역 4년과 벌금 5만 위안(元)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양궈중(杨国忠)은 공사중대안전사고죄로 유기징역 3년과 벌금 4천 위안(元)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마리장(马利江) 역시 공사중대안전 사고죄로 유기징역 1년과 벌금 10만 위안(元)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 류용구이(刘永贵)도 공사중대안전사고죄로 유기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5) 법원심리의견

법원은 창쭈시(常熟市) 쩐타(金塔)금속제품유한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과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등 국가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품질 표준을 낮춤으로써 15명이 사망하고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196만 위안(元)에 달하는 중대안전사고를 초래하였다. 피고인 류용구이(刘永贵), 마리장(马利江), 양궈중(楊國忠), 저우요우카이(周友凯), 천웨이신(陈月新)은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들로서 공사중대안전사고죄가 인정되어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와 같이 중국 <형법>제137조에 규정된 ‘공사 중대안전사고죄’는 국가의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야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품질표준을 낮추었다는 사실적 요건 또한 갖추어야 한다.³⁰⁶⁾ 그리고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된 결과가 있어야 한다.

306) 吕晓伟, 企业标准化工作任重道远: 郑州陈砦“5·5”特大冷库货架倒塌事故的警示, 中国标准导报, 2004년제12호, 29쪽 참조.

주관적으로는 초래된 사고결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과실행위 이어야 하나 공사품질표준을 낮추고 규정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고의행위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의 발생을 고의의 작위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간접적 고의요건도 갖추고 있다.

범죄주체는 건설업체, 건축설계업체, 시공업체 그리고 공사감리업체 등과 같은 단위(單位)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자는 책임자로서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공사중대안전사고죄’의 객체는 건축공사로 인한 생산, 경영, 업무 및 생활의 공공안전이다. ‘공사중대안전사고죄’에서 가리키는 심각한 결과란 공적인 재산이나 사적인 재산 모두 심각한 손실이 있었고 사상자가 심각한 정도로 발생하였거나 생산, 작업과 생활에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를 가리킨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다른 국가와의 비교법 분석

지구상의 각 지역과 국가마다 자연환경과 문화, 역사, 사회 그리고 생활양식 등에 서로 차이가 있고, 사회변천과 지정학적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회구조와 법제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다. 건축안전 법제 또한 나름대로 특색을 지니며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부단히 진화해 가고 있다. 세계 주요 나라의 건축안전 법제와 중국의 그것을 비교해 봄으로써,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의 현주소를 보다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국가의 건축안전 법제와 비교했을 때, 우선 중국은 그 법제 형성시기가 늦다. 오늘 날의 중국 법제는 1979년 개혁개방 정책을 천명한 후부터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법제경설이 곧 경제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경제 발전에 필요한 법령부터 쏟아내었다. 건축안전 법제는 1990년대 말부터 갖춰지기 시작하였다. 즉, 1997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건축법>을 필두로, 2000년 국무원이 발표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2002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된 <안전생산법>, 그리고 2003년 국무원이 마련한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 등이 차례로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건축안전 법체계를 이루어 가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변혁기에 형성된 건축안전 법제는 끊임없이 변하는 중국적 사회상황과 실정에 맞는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하여 가고 있고, 각 분야별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건축 안전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세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³⁰⁷⁾

첫째, 영국과 비교해 보면 안전감독 기구가 방대한 편이고 각 부처간의 협조체제는 좀 뒤떨어지는 편이다.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감독은 도시건설, 공안, 주택관리, 건축 품질감독, 도시관리 등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되어 있지만 각 부처간에 합리적으로 협조하질 못하고, 긴밀한 공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부처의 책임과 역할이 분산되어 있고, 또 각 부처마다 다시 세분화되어 있어서 행정자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둘째, 미국 혹은 일본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건축안전 감독에 관한 사회참여가 낮은 편이고,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³⁰⁸⁾ 중국은 한 때 ‘국가감찰, 행정관리, 군중감독’의 안전관리를 추진해보고, ‘기업이 책임지고(企業負責), 행정적 관리를 하고(行政管理), 국가는 감찰하며(國家監察), 군중이 감독(群衆監督)’하는 안전관리를 새롭게 추동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형식주의·관료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근로자 군중의 안전의식이 높지 못하고 군중이 안전감독에 참여할 때에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회참여도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셋째, 독일과 비교해 보면 중국은 안전생산 시장(市場)주체의 참여가 부족하다. 독일은 건축안전과 관련해서 국가의 행정역량, 사회와 기업의 감독역량, 산재보험연합회 등의 역량이 결집되어 근로자의 안

307) 참조, 温道云, 国内外建设工程安全监管模式对比分析, 中华建设, 3호, 2015년, 67쪽 이하.

308) 건축관련 업체의 노동조합은 건축업무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여러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적극적인 성향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중국 일반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전에 관한 의식이 높지 않고 각종 안전조치에 참여하는 것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보호를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역시 만능형(萬能型) 정부에서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협조’하는 모델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각급 정부는 건축시장에서 시장주체들이 건축안전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시사점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를 살펴보면서 주목되는 점과 문제점이 발견된다. 먼저, 주목되는 점 세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건축 활동과 관련된 정부부처 즉 국무원, 각급 인민정부, 안전관리감독부처, 건설행정주관부처 등과 건축업계, 시공업체, 조사 및 설계업체, 감리업체, 건설협회, 기타조직, 정부공무원,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 근로자 등의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시공업체의 안전책임과 관련해서는 시공업체의 주요 책임자는 법적으로 당해 업체의 안전작업을 모두 책임지도록 규정하여³⁰⁹⁾ 시공단계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였다.

둘째, 중국은 건축안전 종신책임제도를 실시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공사 중에 공사품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사·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사용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은 관련 사업책임자는 종신책임을 져야 한다. 건축공사의 각 단계별 사업책임자에 대한 품질 종신책임제를 확립함으로써 단계별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건설업체·설계업체·시공업체·공사감리업체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품질표준을 낮춤으로써 중대한 안전사고를 초래하였을 경우,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중국 <형법> 제137조에 ‘공사 중대안전사고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309)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제21조.

이처럼 건축사업 주체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든가, 중심책임제도를 시행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점이라든가, 형법에 ‘공사 중대안전사고죄’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은 모두 건축안전에 있어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현행 중국 건축안전 법제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안전생산법>과 <건축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는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직책과 권한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법집행에 있어서는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안전하게 도급업자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도급업자의 안전실적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건축시장에서 안전한 도급업자를 조회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우수 도급업자를 찾기 어렵다.

셋째, 안전관련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건축안전에 대한 전문가와 기술관리자가 부족하여 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여러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안전감독기구의 인력이 적어 해당지역의 시공현장에 투입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민간조직 관리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통지> 및 <업계협회 규범관리와 발전작업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통지> 등 규범이 있지만 여전히 건축안전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건축안전에 관한 역할이 미흡한 편이라는 점이다.

이밖에 우리나라 법령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³¹⁰⁾는 문제가 있

310) 참조, 이세정, 건축법제 선진화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

는것처럼, 중국의 건축법제 역시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거나 관련법들 사이의 중첩현상³¹¹⁾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목되는 점 및 문제점들은 나름대로 우리나라 건축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의 안전 관련 법률과 법규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보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축안전 법체계가 완전(完整)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중국적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나가면서, 중국적 특색이 있는 건축 안전법제를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원, 2014년 10월, 17쪽.

311) 2000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이 제정되어 중첩과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법체계 속의 내부분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문헌자료

- 나채준, 일본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종심의자료, 2015년 10월.
- 김영진, 미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종심의자료, 2015년 10월.
- 김용훈, 영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종심의자료, 2015년 10월.
- 이세정, 건축법제 선진화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년 10월.
- 최문식, 건축물 구조안전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국토일보 2009년 3월16일자.
-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발표”, 소방방재신문, 2014년 12월19일자.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29408§ion=sc72(2015.7.29접속)
- 徐蕾·斯晓慰, 对《建筑法》关于建筑工程质量管理办法的评析, 西安建筑科学大学学报, 제34권 제2호, 2015년 4월.
- 温道云, 国内外建设工程安全监管模式对比分析, 中华建设, 제3호, 2015년.
- 刘蒙林, 论建筑安全监督执法弱点, 建筑安全, 제12호, 2014년.
- 卢永琴, 建筑企业的安全法律责任分析, 建筑安全, 제9호, 2014년.
- 张静, 工程重大安全事故罪研究, 湖南师范大学, 2014년.

참 고 문 헌

- 罗贞莉·张镇森, 建筑工程安全事故遇难者家属精神损失赔偿模型, 湖南理工学院学报, 제26권 제4호, 2013년 12월.
- 张荆, 公共安全问题突显的原因与对策研究, 河南警察学院学报, 제21권 제5호, 2012년 10월.
- 梁春程, 重大责任事故罪与工程重大安全事故罪比较研究:从一起因擅自增加楼层导致的坍塌事故说起, 法治与社会, 2012년 9월.
- 孙景仙, 建筑安全犯罪:以犯罪学为视角, 黑龙江省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제1호, 2012년.
- 鞠传静·张仕廉·宁延, 中国建筑安全法律制度现状及发展框架构想, 建筑经济, 제3호, 2010년.
- 尚春明·方东平, 中国建筑职业安全健康理论与实践, 中国建筑工业出版社, 2007년.
- 张强, 四论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一)我国建筑安全生产法规体系的基本情况和沿革, 建筑安全, 제8호, 2006년.
- 吕晓伟, 企业标准化工作任重道远:郑州陈砦“5·5”特大冷库货架倒塌事故的警示, 中国标准导报, 제12호, 2004년.
- 张仕廉·潘承仕, 安全管理对建筑工程项目管理的意义, 建筑经济, 2003년 12월.
- 王斌, 论“工程重大安全事故罪”及其立法完善, 四川大学, 2002년.
- 罗云, 安全经济导论, 经济科学出版社, 1993년.
- 鞠传静, 中国建筑安全管理法律体系研究, 重庆大学(硕士学位论文), 2015년 5월.

법률·법규·규장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華人民共和國建築法)>
- <국가표준관리관법(國家標準管理辦法)>
- <업계표준관리관법(行業標準管理辦法)>
-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
- <긴급사고 대응법(突拔事件應對法)>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中華人民共和國行政訴訟法)>
-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中華人民共和國安全生產法)>
-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방지법(中華人民共和國職業病防治法)>
-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建設工程安全生產管理條例)>
-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生產安全事故報告和調查處理條例)>
-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建設工程質量管理條例)>
- <안전생산 허가증조례(安全生產許可證條例)>
- <도시 주택 철거 관리조례(城市房屋拆遷管理條例)>
- <건축시공기업 안전생산 허가증관리규정(建築施工企業安全生產許可證管理規定)>
- <공사실시의 강제성표준 감독규정(實施工程強制性標準監督規定)>
- <건설공사 시공품질 검수통일표준(建築工程施工質量驗收統一標準)>
- <건축시공 중대 품질 안전사고 응급구조 예안(建築工程重大質量安全事故應急救援預案)>

참 고 문 헌

<주택건설과 기초시설공사 시공안전 관리감독규정(房屋建築和市政基礎設施工程施工安全監督規定)>

<건축시공기업 주요책임자, 사업책임자, 정규직 안전생산관리자 안전생산심사 잠행규정(建築施工企業主要負責人、項目負責人和專職安全生產管理人員安全生產考核暫行規定)>

국무원, <특별히 큰 안전사고 행정책임 추궁에 관한 규정(關於特大安全事故行政責任追究的規定)>

국무원, <안전생산작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관한 규정(關於進一步加強安全生產工作的決定)>, 2004년 1월9일

http://www.gov.cn/xxgk/pub/govpublic/mrlm/200803/t20080328_32676.html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민사침권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보상 책임과 관련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關於確定民事侵權精神損害賠償責任若干問題的解釋)>

건설부, <‘건축공사 다섯 책임주체 사업책임자의 품질 종신책임추궁 잠행판법’에 관한 통지(關於印發<建築工程五方責任主體項目負責人質量終身責任追究暫行辦法>的通知)>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09/t20140904_218907.html(2015.8.4접속)

건설부, <주택건설과 기초시설 공사 시공안전 관리감독규정(房屋建築和市政基礎設施工程施工安全監督規定)>

<특수작업인원 안전기술 심사 관리규칙(特種作業人員安全技術考核管理規則)>

건설부, <건축시공 사업경리 품질안전 책임에 관한 10가지 규정(시행)
(建築施工項目經理質量安全責任十項規定(試行))>

건설부 판공청, <공사품질중심책임제도 실시현황 월간 보고에 관한
통지(住房城鄉建設部辦公廳關於請按月報送工程質量終身責任
制落實情況的通知)>

건설부, <공사품질중심책임제도 실시현황 월간보고에 관한 통지(住
房城鄉建設部辦公廳關於請按月報送工程質量終身責任制落實情
況的通知)>

<건설부 공사품질 안전감독 관리자(管理司) 2015년 업무중점(住房和
城鄉建設部工程質量安全監管司2015年工作要點)>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판공실, <2011년 12월 건축시공 안전사
고현황 통보>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國家安全生產監督管理總局), <특수작업원
안전기술심사관리규칙(特種作業人員安全技術考核管理規則)>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內蒙古自治區建設
工程質量管理條例)>

<베이징(北京) 건설공사시공현장관리관법(北京市建設工程施工現場管
理辦法)>

인터넷 자료

要鸿志, 第137条工程重大安全事故罪, 2013년 1월.

<http://www.66law.cn/laws/85219.aspx>

法制網 <http://legaldaily.com.cn/index/content/2011-12/31/conteng-32573302.html>.

(2015.7.30접속)

중국 건설부 웹사이트 <http://www.mohurd.gov.cn/index.html>.

(2015.7.30접속)

‘通车仅6年竟大动'手术', 郑州刘江立交桥被指豆腐渣’, 인민망(人民網),
2011년 11월25일 기사.

<http://society.people.com.cn/GB/136657/16382642.html>(2015.8.3접속)

‘19层住宅楼交房10个月就倾斜框架柱被压碎’, 축룡건축시공망(築龍建築
施工網), 2011년 11월3일 기사.

<http://news.zhulong.com/read143848.htm>(2015.8.3접속)

武汉, ‘保障房头顶多个光环曝质量问题成楼脆脆’, 왕이망(網易網),
2011년 11월9일 기사.

<http://money.163.com/11/1209/23/7KSD6HJV00253B0H.html>(2015.
8.3접속)

‘328省道跨通榆河大桥垮塌滨海段通榆河昨恢复通航’, 중국강소망(中國
江蘇網), 2011년 7월20일 기사.

<http://jsnews.jschina.com.cn/system/2011/07/20/011262121.shtml>(20
15.8.3접속)

‘武夷山大桥垮塌的拷问：超载不绝'体检'缺位’, 복건신랑망(福建新浪網),
2011년 7월18일 기사.

<http://fj.sina.com.cn/news/s/2011-07-18/0834104688.html>(2015.8.3
접속)

‘杭州钱塘江三桥桥面塌落货车卡在桥面塌落处’, 중신망(中新網), 2011년 7월 15일 기사.

<http://www.chinanews.com/sh/2011/07-15/3184097.shtml>(2015.8.3 접속)

‘新疆库尔勒孔雀河大桥部分垮塌桥龄13年’, 왕이망(網易網), 2011년 4월 12일 기사.

<http://news.163.com/photoview/00AN0001/14026.html>(2015.8.3 접속)

‘广东清远市现“楼歪歪”’, 수호망(搜狐网), 2011년 1월28일 기사.

<http://roll.sohu.com/20110128/n302683813.shtml>(2015.8.3 접속)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판공실, <2011년 12월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통보>, 2012년 1월5일.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201/t20120110_208373.html(2015.7.30 접속)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판공실, <2012년 12월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통보>, 2013년 1월6일.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301/t20130111_212534.html(2015.7.30 접속)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판공실, <2013년 12월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통보>, 2014년 1월13일.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01/t20140117_216900.html(2015.7.30 접속)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판공실, <2014년 12월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통보>, 2015년 1월12일.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501/t20150116_220142.html(2015.7.30 접속)

참 고 문 헌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관공실, <2015년 5월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통보>, 2015년 6월8일.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506/t20150615_221386.html(2015.7.30접속)

건설부 안전생산관리위원회 관공실, <2015년 1분기 건축시공 안전 사고 현황 통보>, 2015년 4월27일.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505/t20150504_220774.html(2015.7.30접속)

건설부, <베이징(北京) ‘12.29’ 등 5건 붕괴사고에 관한 통보(關於對北京 ‘12·29’ 等五起坍塌事故的通報)>(建質[2014]192호), 2014년 12월31일.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12/t20141231_219963.html(2015.7.30접속)

건설부, <허난성(河南省)광산현(光山縣)‘12·19’붕괴사고에 대한 통보(河南省光山縣‘12·19’模板支架坍塌事故的通報)>, 2014년 12월 25일.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12/t20141226_219898.html(2015.8.5접속)

건설부 관공청, <공사품질중심책임제도 실시현황 월간 보고에 관한 통지(住房城鄉建設部辦公廳關於請按月報送工程質量終身責任制落實情況的通知)> 2015년 5월7일 참조.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505/t20150506_220791.html(2015.8.4접속)

건설부, <주택건설과 기초시설 공사 시공안전 관리감독규정(房屋建築和市政基礎設施工程施工安全監督規定)>, 2014년 10월24일.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gczl/201411/t20141115_219532.html(2015.8.3접속)